



제 **3** 부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시정권고 전체 목록

| 제2018-1호 | 주식회사 문화뉴스   |
|----------|---|
| 대상보도     | 문화뉴스 2018년 1월 4일자 연예가화제면<br>「고○○ 양 아빠, 과거 개인 SNS에 올린 셀카 “살찐거보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호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8년 1월 4일자 문화면<br>「고○○ 양 아빠, 셀카와 건담 조립사진이 가득한 SNS」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세계닷컴 2017년 12월 25일자 사회면<br>「7세 소녀에게 다양한 체위, 자위기구 사용법 알려줘야 할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외국의 아동 성교육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그림을 게재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호 | 온라인 중앙일보 | 10월 26일 | 국제     | 체위와 테크닉 가르치는 벨기에 성교육 사이트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18-5호 | 위키트리     | 10월 30일 | 라이프스타일 | “섹스 체위까지” 너무 자세해서 논란이라는 성교육 사이트 (후방 주의)    | 인터넷신문 |
| 제2018-6호 | 인사이트     | 11월 11일 | 국제     | 7살 어린이에게 성교육으로 ‘체위’와 ‘테크닉’까지 가르치는 유럽의 한 나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7호 | 인터넷 국민일보 | 11월 12일 | 시사     | 7살 아동에게 체위·테크닉 알려주는 보건소… 유럽 ‘발각’           | 인터넷신문 |

| 제2018-8호 | 주식회사 바른생활  |
|----------|--|
| 대상보도     | 직설 2017년 12월 7일자 사회면<br>「탐블러에서 ‘실시간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강간 모의에 관한 SNS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호 |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
|----------|--|
| 대상보도     | 투스타뉴스 2017년 12월 5일자 사회면<br>「텀블러, 무분별한 일반인 모욕부터 강간 모의까지 ‘충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강간 모의에 관한 SNS 게시글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호 | 주식회사 뉴시스   |
|-----------|--|
| 대상보도      | 뉴시스 2017년 12월 19일자 연예면<br>「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난 도망치고 싶었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개하고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거나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호 | 뉴스웨이브   | 12월 19일 | 사회      | 종현 유서 공개, “왜 죽으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호 | 미디어 라이징 | 12월 19일 | Music.R | 샤이니 종현 사망 ...<br>“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3호 | 썬뉴스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목숨 끊어...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4호 | 인터넷<br>조은뉴스  | 12월 19일 | 연예타임즈  | 어둠의현장⑨ 사이니 종현, 우울증으로<br>자살-유서 전문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5호 | 일요서울         | 12월 19일 | 연예/스포츠 | 사이니 종현 자살 추정 극단적 선택,<br>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6호 | 코리아뉴스<br>타임즈 | 12월 19일 | 사회     | 사이니 종현 유서 공개 “왜 죽느냐고 물으면…”              | 인터넷신문 |

| 제2018-17호 | 주식회사 뉴스1   |  |  |  |  |
|-----------|--|--|--|--|--|
| 대상보도      | 뉴스1코리아 2017년 12월 19일자 연예면<br>「故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 수 없었다”[전문 포함]」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을 공개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1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1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8호 | 뉴데일리        | 12월 19일 | 연예    | 사이니 종현 유서 공개…“우울이 날 집어삼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9호 | 동아닷컴        | 12월 19일 | 연예    | [전문]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br>“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봐”   | 인터넷신문 |
| 제2018-20호 | 부산닷컴        | 12월 19일 | 연예종합  | 디어클라우드 멤버 나인이 전한 故 사이니 종현<br>유서 공개 “왜냐고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21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공개<br>“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6호 | NSP통신       | 12월 19일 | 방송/연예 | ‘사이니’ 종현 유서, 절친 ‘디어클라우드’ 나인이<br>공개…“왜 죽으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 뉴스통신  |
| 제2018-47호 | 뉴스웍스        | 12월 19일 | 연예    | 故 사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은 날 집어<br>삼켰고 이길 수 없었다”             | 뉴스통신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8호 | 아시아<br>뉴스통신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故 종현 유서 공개…“난<br>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전문]         | 뉴스통신  |
| 제2018-49호 | 노컷뉴스        | 12월 19일 | 연예가 화제      | “난 속에서부터 고장” … 故 종현 유서 공개<br>[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50호 | 뉴스엔         | 12월 19일 | 연예가화제       |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 이길 수<br>없다..고생했다 해줘”(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51호 | 뉴스인사이드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공개한 故 샤이니 종현<br>유서…조권·예은·이하이 등 이어지는 ‘애도’ | 인터넷신문 |
| 제2018-52호 | 뉴스천지        | 12월 19일 | 연예가 화제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br>“우울 이길 수 없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53호 | 뉴스핍         | 12월 19일 | 사회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br>공개…“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54호 | 더팩트         | 12월 19일 | 연예가화제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그냥<br>수고했다고 해 줘”(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55호 | 데일리안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집어<br>삼켜”                  | 인터넷신문 |
| 제2018-56호 | 디스패치뉴스      | 12월 19일 | ISSUE       | 故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br>수 없었다”[전문 포함]         | 인터넷신문 |
| 제2018-57호 | 디오데오        | 12월 19일 | 연예          | 故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나… 우울 이길<br>수 없었다”[전문 포함]         | 인터넷신문 |
| 제2018-58호 | 마니아리포트      | 12월 19일 | 연예          | “난 속에서부터 고장” …故 종현 유서 공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59호 | 마이데일리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난<br>속에서부터 고장 나”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60호 | 매경닷컴        | 12월 19일 | 스타투데이<br>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은<br>날 집어삼켰다”(유서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61호 | 메트로신문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한 디어클라우드 나인,<br>둘의 관계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62호 | 문화뉴스        | 12월 19일 | 연예·스포츠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난 잘못된<br>게 없어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63호 | 봉황망<br>코리아  | 12월 19일 | 문화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이만하면<br>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64호 | 브레이크<br>뉴스  | 12월 19일 | 연예          | 故 샤이니 종현 유서 전문 공개…“그냥 수고했다<br>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65호 | 비즈엔터        | 12월 19일 | 어라운드        | 디어클라우드 나인, 가수 종현 유서 공개 “날<br>위하고 싶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6호 | 세계닷컴            | 12월 19일 | 연예          | “멈추는게 나아, 수고했어, 정말 고생했어”<br>샤이니 종현 유서 전문(全文)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67호 | 스타뉴스            | 12월 19일 | 엔터테인먼트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br>공개(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68호 | 스타<br>데일리뉴스     | 12월 19일 | 피플          |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통해 세상<br>밖으로...[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69호 | 스포츠<br>조선닷컴     | 12월 19일 | 연예          | [SC이슈] 故종현의 유서, 디어클라우드 나인이<br>전한 사연                        | 인터넷신문 |
| 제2018-70호 | 스포츠한국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종현 유서 공개 “우울 이길<br>수 없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1호 | 스포티비<br>뉴스      | 12월 19일 | 가요          | 디어클라우드 나인, 고 샤이니 종현 유서<br>공개...“난 속에서부터 고장 났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2호 | 시크뉴스            | 12월 19일 | 가요          | 디어클라우드 “나에게 맡긴 이유가 있을 거라고<br>생각”... 종현 유서 공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3호 | 아시아투데이<br>닷컴    | 12월 19일 | 연예·<br>스포츠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가족과 상의<br>끝에 유언에 따라 유서 올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4호 | 엑스포츠뉴스          | 12월 19일 | 가요          | [전문]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날<br>집어삼켜...도망치고 싶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5호 | 연예투데이<br>뉴스     | 12월 19일 | 연예<br>hot뉴스 | 故 샤이니 종현, 공개된 유서 “이만하면 잘했다,<br>고생했고 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76호 | 오에스이엔(<br>OSEN) | 12월 19일 | 연예          | [전문포함]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속부터<br>고장나, 우울 이길 수 없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7호 | 온라인<br>중앙일보     | 12월 19일 | 문화          | 종현 유서 공개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br>해줘”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8호 | 온라인<br>환경미디어    | 12월 19일 | 핫이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과 함께<br>사진...전문 유서도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79호 | 울산<br>종합일보      | 12월 19일 | 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친구야, 널 어떻게<br>보내~’...가슴 먹먹하게 만드는 글             | 인터넷신문 |
| 제2018-80호 | 위키트리            | 12월 19일 | 방송-연예       |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디어클라우드 나인이<br>공개한 종현 유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81호 | 이코노미톡<br>뉴스     | 12월 19일 | 라이프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아직도 믿기<br>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를 보내는 심경<br>토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82호 | 이타임즈            | 12월 19일 | 연예          |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속부터 고장 나...<br>우울 이길 수 없었다” [전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3호 | 이투데이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누구?<br>중성 매력 갖춘 여보컬        | 인터넷신문 |
| 제2018-84호 | 인터넷<br>인사이트<br>코리아 | 12월 19일 | ENTERTAINMENT | 디어클라우드 나인, 비난 감수하고 종현 유서<br>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85호 | 인터넷<br>강원일보        | 12월 19일 | 연예            | 故종현, 스스로에게 한 마지막 말 "고생했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86호 | 인터넷<br>경상일보        | 12월 19일 | 연예/시사         | '故종현' 절친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br>공개...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게 용하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87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12월 19일 | 시사            | "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디어클라우드 나인이<br>공개한 故 종현의 유서           | 인터넷신문 |
| 제2018-88호 | 인터넷<br>국제신문        | 12월 19일 | 뉴스            | [전문]종현 유서에 남기지 못한 말... 마지막 방송<br>"이젠 행복해져야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89호 | 인터넷<br>뉴스웨이        | 12월 19일 | 사회            | 故샤이니 종현 유서, 디어클라우드 나인 SNS에<br>공개...우울함 토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90호 | 인터넷<br>디지털<br>타임스  | 12월 19일 | 사회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세상 떠나면<br>올려달라 부탁받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91호 | 인터넷<br>매일신문        | 12월 19일 | 스타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마지막 못 막지 못해..."<br>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92호 | 인터넷<br>비주얼다이브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br>공개[전문포함]                 | 인터넷신문 |
| 제2018-93호 | 인터넷<br>서울경제        | 12월 19일 | 사회            |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은 날 집어<br>삼켰고, 난 오롯이 혼자였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94호 | 인터넷<br>스페셜경제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고 샤이니 종현 사망 전 남긴<br>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95호 | 인터넷<br>스포츠경향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나인, 故종현 유서 공개...<br>"난 왜 내 마음대로 끝도 못 맺게해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96호 | 인터넷<br>스포츠동아       | 12월 19일 | 연예            | [전문]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종현의 마지막 글<br>공개 "나는 날 미워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7호 | 인터넷<br>스포츠서울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오롯이<br>혼자였다"(전문포함)                   | 인터넷신문 |
| 제2018-98호 | 인터넷<br>스포츠투데이<br>M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br>누구? 중성매력 여보컬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9호  | 인터넷<br>아주경제        | 12월 19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에게 보낸 마지막 유언(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호 | 인터넷<br>에너지경제       | 12월 19일 | 사회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왜 죽으나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호 | 인터넷<br>이뉴스투데이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종현 유서 공개…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102호 | 인터넷<br>이데일리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날 집어 삼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호 | 인터넷<br>일간스포츠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故 종현 유서 공개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호 | 전자신문<br>인터넷        | 12월 19일 | Enter On<br>News | 종현 유서, 1160자에 담긴 그의 고통.. ‘정말 고생했어 안녕’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호 | 인터넷<br>제주일보        | 12월 19일 | 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그를 보내는 심경 토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도 믿기 힘들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호 | 인터넷<br>중도일보        | 12월 19일 | 핫클릭              | “난 속에서부터 고장” …故 종현 유서 공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호 | 인터넷<br>충부일보        | 12월 19일 | 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날 잡아먹던 우울 이길 수 없었다”(전문포함)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호 | 인터넷<br>코리아<br>데일리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이 꺼내놓은 종현의 유서, “이겨낼 수 있는건 흥터로 남지 않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호 | 인터넷<br>크리스천<br>투데이 | 12월 19일 | 전체기사             | 샤이니 종현, 디어클라우드 나인 유서 전문, 내용 보니 자살 이유 자학과 우울증? 베르테르효과 우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호 | 인터넷<br>파이낸셜뉴스      | 12월 19일 | 연예               | “고생했어요” 샤이니 종현 사망…오늘부터 팬 조문 가능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호 | 인터넷<br>한겨레         | 12월 19일 | 문화               | 유서 남긴 종현 “우울이 날 집어삼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2호 | 인터넷<br>한국스포츠<br>경제 | 12월 19일 | 연예               | 종현 유서 공개 ‘디어클라우드 나인 “겁나지만 유언 따르겠다”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호 | 인터넷<br>한국정경<br>신문  | 12월 19일 | 문화               | 디어클라우드, 고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12월 19일 | 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꼭 올려달라고 부탁”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5호 | 인터뷰365      | 12월 19일 | 생활의발견  |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가족과 상의 끝에, 그의 유언에 따라 글을 올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호 | 일요신문        | 12월 19일 | 사회     | 디어 클라우드 나인, 샤이니 종현 유서 '전문' 공개 “나는 오롯이 혼자였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호 |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 12월 19일 | 연예     | 종현 유서, 1160자에 담긴 종현의 아픔 “버티고 있던게 용하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118호 | 조선닷컴        | 12월 19일 | 연예     |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켜...난 오롯이 혼자” 故 종현 유서 전문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호 | 조세일보        | 12월 19일 | 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호 | 조이뉴스24      | 12월 19일 | 연예가화제  |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날 집어삼켜, 수고했다고 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121호 | 쿠키뉴스        | 12월 19일 | 뉴스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종현 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호 | 텐아시아        | 12월 19일 | 핫이슈    |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123호 | 포커스 데일리     | 12월 19일 | 사회     | [전문]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난 도망치고 싶었어..정말 고생했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24호 | 폴리뉴스        | 12월 20일 | 사회     | 종현 유서!..디어클라우드 나인, 비난 감수하고 뒤늦게 종현 유서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5호 | 한경닷컴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6호 |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 12월 19일 | 엔터테인먼트 | 디어클라우드의 나인이 종현의 유서를 공개했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호 | 헤럴드POP      | 12월 19일 | 방송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수고했다 해줘”(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8호 | enews24     | 12월 19일 | 연예가 화제 | 故 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 “우울이 집어삼켜...고생했다 해줘”(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9호 | e글로벌 이코노믹   | 12월 19일 | 종합     | [종현 유서 전문]디어클라우드 나인 “아름다운 종현아 사랑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130호 | e머니에스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종현 유서 공개...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31호 | e머니 투데이     | 12월 19일 | 연예     | 디어클라우드 나인, 故샤이니 종현 유서 공개...“속부터 고장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32호 | lstyle 24스텝 | 12월 19일 | 연예가 슷  | 나인, 샤이니 故 종현 유서 공개 '나에게 말긴 이유 있을 것'            | 인터넷신문 |

| 제2018-22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
| 대상보도      | 동아일보 2017년 12월 19일자 14면<br>「'샤이니' 멤버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위 기사는 ○○을 사용한 자살 방법 및 도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이유        |  |

※ 2018-2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3호  | 경남일보               | 12월 19일 | 14면     | 샤이니 메인보컬 종현 숨진채 발견                           | 지역일간지 |
| 제2018-24호  | 연합뉴스TV             | 12월 18일 | NEWS 19 | 샤이니 종현, 서울 청담동서 숨진채 발견                       | 방송    |
| 제2018-25호  | 뉴스1<br>코리아         | 12월 18일 | 연예      | '사망' 샤이니 종현, 친누나에 극단적 문자 남겨... 자살추정 [종합]     | 뉴스통신  |
| 제2018-26호  | 브레이크<br>뉴스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충격.. "이제까지 힘들었다" 메시지 남겨 | 인터넷신문 |
| 제2018-133호 | 매일경제               | 12월 19일 | 31면     | 유명 아이돌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                      | 중앙일간지 |
| 제2018-134호 | 매경닷컴               | 12월 19일 | 뉴스      | '밤도깨비' 측 "샤이니 종현 방송여부 미정"... 예고편 삭제          | 인터넷신문 |
| 제2018-135호 | 머니투데이              | 12월 19일 | 23면     | 샤이니 종현, 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                         | 중앙일간지 |
| 제2018-136호 | e머니<br>투데이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사망 당일 낮 즐겨찾던 숙박업소 입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37호 | 브릿지<br>경제신문        | 12월 22일 | 11면     | Lonely 종현, don't be lonely!                  | 중앙일간지 |
| 제2018-138호 | 인터넷<br>브릿지경제<br>신문 | 12월 18일 | 문화      | 샤이니 종현, 청담동 오피스텔서 숨진 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139호 | 세계일보               | 12월 19일 | 11면     |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인사'                | 중앙일간지 |
| 제2018-140호 | 세계닷컴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 당시 ○○○○ 위 ○○ 발견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41호 | 스포츠통아             | 12월 19일 | 13면    | 샤이니 종현, 솔로콘서트까지<br>대성황이었는데...왜?                   | 중앙일간지 |
| 제2018-142호 | 인터넷<br>스포츠통아      | 12월 18일 | 연예     | [DA:이슈] “샤이니 종현, 그곳에선 좋은<br>일만”...슬픔에 빠진 연예계      | 인터넷신문 |
| 제2018-143호 | 스포츠포조선            | 12월 19일 | 1면     | “나 보내달라...” 마지막 인사                                | 중앙일간지 |
| 제2018-144호 | 스포츠포조선<br>닷컴      | 12월 18일 | 연예     | [속보] 경찰 “샤이니 종현 사망<br>확인...자살추정” 공식입장 (공식)        | 인터넷신문 |
| 제2018-145호 | 이데일리              | 12월 19일 | 27면    |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                                   | 지역일간지 |
| 제2018-146호 | 인터넷<br>이데일리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18일 사망...메신저로 유서<br>남겨(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147호 | 천지일보              | 12월 20일 | 17면    | 故 종현 빈소 서울아산병원에 마련 21일 오전<br>9시발인                 | 중앙일간지 |
| 제2018-148호 | 뉴스천지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사망, ‘○○ 피워놓고’... 누나에<br>마지막 문자 “이제까지 힘들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49호 | 한국일보              | 12월 19일 | 10면    |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 누나에<br>“힘들었다” 마지막 문자            | 중앙일간지 |
| 제2018-150호 | 인터넷<br>한국일보       | 12월 18일 | 엔터테인먼트 | 샤이니 종현, ○○ 피워 자살시도... 병원이송<br>후 사망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151호 | 강원도민<br>일보        | 12월 19일 | 21면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이송 후<br>사망 확인                  | 지역일간지 |
| 제2018-152호 | 인터넷<br>강원도민<br>일보 | 12월 19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이송 후<br>사망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153호 | 광주매일<br>신문        | 12월 19일 | 6면     | 샤이니 종현, 병원이송 후 사망                                 | 지역일간지 |
| 제2018-154호 | 인터넷<br>광주매일<br>신문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병원이송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155호 | 대구일보              | 12월 19일 | 5면     | 아이돌 샤이니 종현 ‘사망’ 오피스텔서<br>○○○ 발견                   | 지역일간지 |
| 제2018-156호 | 대전일보              | 12월 19일 | 6면     |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자살 추정”                         | 지역일간지 |
| 제2018-157호 | 영남일보              | 12월 19일 | 12면    | 아이돌그룹 샤이니 종현 사망                                   | 지역일간지 |
| 제2018-158호 | 전북타임스             | 12월 20일 | 12면    | 샤이니 3인,故종현 마지막 함께... 슬픔 속<br>조문객 맞아               | 지역일간지 |
| 제2018-159호 | 제주일보              | 12월 19일 | 9면     | 유명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 ‘종현’ 숨져                          | 지역일간지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60호 | 인터넷<br>제주일보  | 12월 18일 | 뉴스           | 샤이니 종현, 얼마전 솔로 콘서트도 끝났는데<br>극단적 선택... 유서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161호 | 충청타임즈        | 12월 19일 | 14면          | 샤이니 종현 사망... ○○ 발견  | 지역일간지 |
| 제2018-162호 | 인터넷<br>충청타임즈 | 12월 19일 | TV가이드<br>&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 ... ○○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163호 | JTBC         | 12월 18일 | JTBC 뉴스룸     |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힘들었다, 마지막<br>인사” 문자                         | 방송    |
| 제2018-164호 | 국제뉴스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서 숨진 채<br>발견...자살 추정                              | 뉴스통신  |
| 제2018-165호 | 연합뉴스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갑작스러운 사망에 누리꾼<br>'충격'...“오보이길”                         | 뉴스통신  |
| 제2018-166호 | 이슈타임<br>통신사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사인 조사 중”                                   | 뉴스통신  |
| 제2018-167호 | NSP통신        | 12월 18일 | 연예/문화        | 샤이니 종현, 사망 직전 누나에게 문자<br>“힘들었다..나 보내줘”                        | 뉴스통신  |
| 제2018-168호 | 넥스트<br>데일리   | 12월 18일 | 스포츠/연예       | 종현, 레지던스서 ‘○○’ 피워놓고<br>사망...샤이니 팬카페 ‘충격’ SM엔터테인먼트<br>‘공식입장 無’ | 인터넷신문 |
| 제2018-169호 | 노컷뉴스         | 12월 18일 | 사건/사고        | 샤이니 김종현 ‘힘들었다’ 문자 남긴 채<br>스스로 목숨 끊어(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170호 | 뉴데일리         | 12월 19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에 ○○ 피우고<br>스스로 목숨 끊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71호 | 뉴스엔          | 12월 18일 | 전체기사         | 샤이니 종현 사망, 찬란히 빛나 안타까운<br>10년 활동史 [이슈와치]                      | 인터넷신문 |
| 제2018-172호 | 뉴스프리존        | 12월 18일 | 방송/연예        | 샤이니 종현, 유서는? 누나에게 보낸 문자...<br>얼마전 솔로 콘서트도 끝났는데 극단적 선택         | 인터넷신문 |
| 제2018-173호 | 뉴스핌          | 12월 19일 | 사회           | SM 측 “샤이니 종현 사망, 슬픔 속 고인<br>애도”...빈소 서울아산병원 정오부터 팬 조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74호 | 더팩트          | 12월 18일 | 연예           | 〈속보〉 샤이니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br>쓰러진 채 발견...끝내 숨져                    | 인터넷신문 |
| 제2018-175호 | 데일리안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에 누리꾼 충격...“믿지<br>못하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76호 | 동아닷컴         | 12월 18일 | 사회           | [속보]샤이니 종현, 병원 이송→심폐소생술 중<br>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177호 | 디오테오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종현’<br>사망공식확인...경찰‘자살추정’(종합2보)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78호 | 디트news24 | 12월 19일 | TV/연예      | 이하이 '한숨' 고인 기리며 추도 "선배님과 함께 부르고 싶었는데..." 애통                          | 인터넷신문 |
| 제2018-179호 | 마이데일리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했으나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180호 | 메트로신문    | 12월 19일 | 뉴스         | 샤이니 종현·김주혁·최서인 등...유독 이별 많은 2017년 연예계                                | 인터넷신문 |
| 제2018-181호 | 문화뉴스     | 12월 18일 | 대중문화 (트렌드) | [문화파일] 종현, 그는 누구였나 "헤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너 없는 날 어찌하나 가지 말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182호 | 미디어펜     | 12월 18일 | 연예·스포츠     | [2보]샤이니 종현, 친누나 신고로 경찰 출동해 병원 이송했으나 숨져                               | 인터넷신문 |
| 제2018-183호 | 베타뉴스     | 12월 19일 | 종합         | 샤이니 종현 빈소 언제쯤? 건대 병원 "장례식장 만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84호 | 보황망코리아   | 12월 18일 | 문화·연예      | 샤이니 팬카페-SM엔터테인먼트 반응은? ...종현, 레지던스서 '○○' 피워놓고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185호 | 부산닷컴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쓰러진 채 발견돼...친누나가 신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186호 | 비즈엔터     | 12월 19일 | 어라운드       | 샤이니 4인, 故 종현 마지막 배웅...상주 올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187호 | 스타뉴스     | 12월 26일 | 엔터테인먼트     | 태민, '2017 KBS 가요대축제' 불참.. "안정 필요"(공식)                                | 인터넷신문 |
| 제2018-188호 | 스타데일리 뉴스 | 12월 19일 | 인기뉴스       | [S영상] 샤이니 종현 사망 소식에 현장 찾은 취재진과 팬들                                    | 인터넷신문 |
| 제2018-189호 | 스포츠Q     | 12월 18일 | 컬처Q        | 샤이니 종현 사망, 경찰 "병원 후송 당시 심정지 상태 ○○ 같은거 피워져...정확한 경위 몰라 자살 추정 추측자체 당부" | 인터넷신문 |
| 제2018-190호 | 스포츠한국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27세 나이로 별이 지다...가수·DJ 넘나들던 만능 뮤지션                            | 인터넷신문 |
| 제2018-191호 | 시크뉴스     | 12월 18일 | 가요         | "종현이 자살하는 것 같다" 샤이니 종현 친누나 신고로 경찰 위치 파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192호 | 아시아투데이닷컴 | 12월 18일 | 연예·스포츠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됐으나 숨져(2보)                                   | 인터넷신문 |
| 제2018-193호 | 업다운뉴스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먹먹한 죽음,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인사뿐'이었던가                     | 인터넷신문 |
| 제2018-194호 | 엠케이스포츠   | 12월 18일 | 사회         | 강타, '별밤' 생방 불참.. 'SM 후배' 샤이니 종현 비보에..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95호 | 오에스이엔 (OSEN)  | 12월 18일 | 음악  | [속보 종합]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 2박 예약·친누나에 마지막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196호 | 온라인 중앙일보      | 12월 18일 | 문화  | 샤이니 종현 비보에 SNS엔 댓글 이어져...마지막 게시물은 "네가 아파하지 않길"     | 인터넷신문 |
| 제2018-197호 | 울산종합일보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198호 | 월드투데이         | 12월 19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무엇이 그를 짓눌렀나?" 애도 물결                       | 인터넷신문 |
| 제2018-199호 | 이비엔(EBN) 뉴스센터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200호 | 이코노미톡 뉴스      | 12월 18일 | 라이프 | 샤이니 종현, 유서는?얼마전 솔로 콘서트도 끝났는데 극단적 선택 ... 누나에게 보낸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201호 | 이타임즈          | 12월 18일 | 뉴스  | SM엔터테인먼트 "샤이니 종현 사망에 큰 충격, 슬픔 속 애도" [공식입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202호 | 인사이트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이 친누나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203호 | 인터넷 강원일보      | 12월 18일 | 연예  | 종현, 레지던스 2박 예약·유서담긴 문자 등 자살 정황                     | 인터넷신문 |
| 제2018-204호 | 인터넷 경인일보      | 12월 18일 | 사회  | 그룹 샤이니 종현 숨져...쓰러진 채 발견 뒤 병원 이송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205호 | 인터넷 국민일보      | 12월 18일 | 시사  | "샤이니 종현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 경찰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206호 | 인터넷 국제신문      | 12월 19일 | 문화  | 샤이니 종현 사망에 네티즌.팬들 충격..."차라리 중태라고 해달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207호 | 인터넷 금강일보      | 12월 18일 | 문화  | 샤이니 종현,숨진 채 발견... 네티즌"믿을 수 없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208호 | 인터넷 남도일보      | 12월 18일 | 사회  | (종합)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209호 | 인터넷 뉴스웨이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서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210호 | 인터넷 뉴스토마토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211호 | 인터넷 데일리한국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 피운 흔적’ 자살 추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212호 | 인터넷 문화일보      | 12월 18일 | 연예  | [속보]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확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13호 |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 12월 18일 | 연예     | 경찰 “샤이니 종현 사망… 자살 추정” [공식입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214호 | 인터넷 서울경제     | 12월 18일 | TV·방송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이송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215호 | 인터넷 서울시정일보   | 12월 19일 | 연예     | [현장] 故샤이니 종현 장례 진행...소속사 “가슴 아파”                    | 인터넷신문 |
| 제2018-216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 전 누나에게 ‘극단적선택’ 암시                        | 인터넷신문 |
| 제2018-217호 | 인터넷 스포츠서울    | 12월 18일 | 최신뉴스   | [SS이슈]경찰 “샤이니 종현 ‘자살하는것 같다’ 친누나가 신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218호 | 인터넷 시사저널     | 12월 18일 | 사회     | “고생했다고 말해줘”… 종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219호 | 인터넷 신아일보     | 12월 18일 | 방송·연예  | 샤이니 종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이제까지 힘들었다”(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220호 | 인터넷 아주경제     | 12월 20일 | 국내일반   |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서 ○○ 자살.. “침대와 테이블 사이 방바닥..구토 흔적도”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221호 | 인터넷 울산매일     | 12월 18일 | 연예가    | 샤이니 종현 자살… “나 보내달라” 유언 남겨                           | 인터넷신문 |
| 제2018-222호 |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 12월 19일 | 연예     | 베르테르 효과 우려… 네티즌 “주변에서 더욱 관심 가져야”                    | 인터넷신문 |
| 제2018-223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12월 19일 | 연예     | [이슈IS] “수고했다, 고생했다”…이 말을 듣고 싶었던 뮤지션 종현              | 인터넷신문 |
| 제2018-224호 | 인터넷 전라매일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강남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225호 | 인터넷 중부일보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 한달 전 SNS에 의미심장 글 “네가 아파하지 않길 기도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226호 |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글, ‘아파하지 않길 기도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227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12월 18일 | 연예·스포츠 | 샤이니 종현, 청담동서 숨진 채 발견(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228호 | 인터넷 한겨레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누나 “자살한 것 같다” 신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229호 | 인터넷 한국스포츠 경제 | 12월 19일 | 엔터테인먼트 | 샤이니 종현, 직접 쓴 ‘놓아줘’ 가사 살펴보니… “제발 날 도와줘”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30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12월 18일 | 문화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돼 병원<br>이송...끝내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231호 | 인터뷰365                | 12월 18일 | 시사의발견       | 샤이니 종현,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232호 | 일간제주                  | 12월 18일 | 인터넷 이슈      | 샤이니 종현, 사망소식에 누리꾼들<br>'충격'...일부 누리꾼들 SM 강력 비판  | 인터넷신문 |
| 제2018-233호 | 전북포스트                 | 12월 19일 | 뉴스          | 그룹 샤이니 '종현' 심정지 상태로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234호 | 조선닷컴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질식사 원인' 추정 '○○'<br>위험성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235호 | 조이뉴스24                | 12월 18일 | 연예가화제       | [포토]샤이니 종현 사망, 폴리스라인으로<br>통제된 현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236호 | 창업일보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자살...○○○○에 ○○피운채<br>숨져                  | 인터넷신문 |
| 제2018-237호 | 컨슈머타임스                | 12월 18일 | 연예·문화       | 샤이니종현사망확인"발견당시심정지,누나에<br>게유서형태메시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238호 | 쿠키뉴스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쓰러진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239호 | 키즈맘                   | 12월 19일 | 전체뉴스        | 그룹 샤이니 故 종현 빈소 조문 행렬 이어져...                    | 인터넷신문 |
| 제2018-240호 | 텐아시아                  | 12월 18일 | 핫이슈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 병원 이송 후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241호 | 툽데일리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의 생전 건장했던 운동모습<br>"이렇게 건강했는데..." 팬들 오열   | 인터넷신문 |
| 제2018-242호 | 툽스타뉴스                 | 12월 18일 | 가요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병원 이송 후 결국<br>숨져 (1보)            | 인터넷신문 |
| 제2018-243호 | 티비리포트                 | 12월 18일 | 사회          | "날 보내줘" 샤이니 종현의 마지막 [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244호 | 포커스데일리                | 12월 18일 | 사회/문화       | 샤이니 종현, 청담동 레지던스서 숨진 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245호 | 폴리뉴스                  | 12월 19일 | 사회          | 달라진 눈빛 샤이니 종현, 레지던스<br>○○○○에 ○○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246호 | 프라이مج경제               | 12월 18일 | 사회          | 샤이니 종현 "오보이길 바라" 패닉                            | 인터넷신문 |
| 제2018-247호 | 프레시안                  | 12월 18일 | 사회          | 아이돌 가수 샤이니 종현, 숨진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248호 | 한경닷컴                  | 12월 18일 | 연예          | 샤이니 종현 사망...○○ 피우고 친누나에게<br>"이제 나 보내달라" 마지막 인사 | 인터넷신문 |
| 제2018-249호 | 한국시민<br>기자협회<br>뉴스포털1 | 12월 18일 | 종합          | 샤이니 멤버 종현, 숨진 채 발견 '자살로 추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250호 | 한인협                   | 12월 19일 | 연예가<br>사건사고 | 샤이니 종현 팬들 밤새 병원 지키며 "영영영!"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51호 | 헤럴드POP    | 12월 18일 | 가요   | 샤이니 종현, 쓰러진 채 발견...병원 이송 후 사망 확인(2보)            | 인터넷신문 |
| 제2018-252호 | (주)뉴스 투데이 | 12월 19일 | 사람들  | 샤이니 종현을 삼킨 우울증의 실체와 치료법                         | 인터넷신문 |
| 제2018-253호 | enews24   | 12월 18일 | News | 샤이니 종현 자살 추정 사망, 마지막날 6시간의 행적                   | 인터넷신문 |
| 제2018-254호 | e글로벌 이코노믹 | 12월 18일 | 전체기사 | 샤이니 종현 자살...친누나가 실종신고, 경찰 자살 경위 수사...네티즌들 자살 왜? | 인터넷신문 |
| 제2018-255호 | e머니에스     | 12월 21일 | 뉴스   | 종현 발인, 샤이니 동료·유족 눈물 속 마지막 작별... "잊지 못할 거야"      | 인터넷신문 |
| 제2018-256호 | TV Daily  | 12월 18일 | 가요   | 샤이니 종현 누구? K-POP 실력파 아이돌 산증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27호      | 이데일리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이데일리 2018년 1월 4일자 사회면 「서울교육청 직원 숨진 채 발견...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두 번째」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직위, 담당 업무,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호      | 주식회사 헤럴드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1월 4일자 뉴스면 「서울시교육청 간부 숨진채 발견...혁신행보 교육감 책임론 번지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직업, 담당 업무,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29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b>대상보도</b>    | 세계닷컴 2017년 12월 13일자 국제면<br>「“휴대전화 안 가져왔다” 불길 속으로 다시 뛰어든 남성」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화상을 입은 남성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30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b>대상보도</b>    | 위키텐트리 2017년 12월 18일자 사건사고면<br>「투신하는 여성 맨손으로 받으려다 사망한 경비원 (영상 주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투신하는 여성을 맨손으로 받으려던 경비원이 사망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31호 | 주식회사 중앙일보   |
|-----------|---|
| 대상 보도     | 중앙일보 2017년 11월 30일자 U01면<br>「수려한 자연 속 24시간 전문 간호와 체계적 재활·치매 치료 진행」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2호 | 주식회사 중앙일보   |
|-----------|---|
| 대상 보도     | 온라인 중앙일보 2017년 12월 1일자 사회면<br>「[health&] 수려한 자연 속 24시간 전문 간호와 체계적 재활·치매 치료 진행」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3호 |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경남매일 2017년 12월 11일 16면<br>「퇴행성 관절염,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해결한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4호 | 경남매일신문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경남매일 2017년 12월 10일자 생활/건강면<br>「퇴행성 관절염,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로 해결한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5호 |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
|-----------|---|
| 대상 보도     | 내외뉴스통신 2017년 12월 18일자 경제면<br>「손 통증 손목터널증후군과 탄발지가 도대체 뭐길래...‘혹시 나도?’」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6호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2월 18일자 헬스면<br>「손 통증 손목터널증후군과 탄발지, ‘도침요법’으로 치료 가능」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호 | 주식회사 뉴스토마토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뉴스토마토 2017년 11월 10일자 사회면<br>「난치성 피부질환 ‘○○한의원 광주점’ 11월 20일 오픈」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호 | 베이비뉴스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베이비뉴스 2017년 11월 21일자 생활/건강면<br>「‘아토피, 사마귀 등 난치성 피부질환 치료’ ○○한의원 광주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9호 | 주식회사 일간금융   |
|-----------|---|
| 대상 보도     | 대한금융신문 2018년 1월 3일자 Hot Issue면<br>「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시기와 방법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0호 | 봉황망코리아미디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봉황망코리아 2017년 12월 12일 라이프면<br>「연말에 급증하는 교통사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1호 | 봉황망코리아미디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봉황망코리아 2017년 12월 15일자 라이프면<br>「청주 ○○○○치과병원, ○○동 확장이전 감사제 실시」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2호 | 주식회사 뉴스미디어그룹  |
|-----------|---|
| 대상 보도     | 스타데일리뉴스 2017년 12월 6일자 문화·생활면<br>「○○○○○치과, 2018년 1월 확장 '진료과 세분화」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3호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2월 6일자 헬스면<br>「대중화된 보톡스 필러 시술,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4호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7년 12월 7일자 헬스면<br>「드림렌즈, 근시 진행 억제에 효과적」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5호 |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
| 대상보도      |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1월 2일자 사회면<br>「인천 ○○○병원 환자를 위한 신년 건강기원 이벤트 진행」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57호 | 주식회사 연합뉴스  |
|------------|--|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18년 1월 22일자 포토면<br>「이상득, '압수수색에 눈 꼭감고」 제하의 보도<br>연합뉴스 2018년 1월 24일자 최신기사면<br>「이상득, 검찰소환 앞두고 한때 의식 잃어...서울대병원 입원(종합2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前) 국회의원이 자택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공개하였다.<br>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에 연루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 공간인 자택 내의 생활 모습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25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61호 | KBS-1TV | 1월 26일 | KBS 뉴스광장        | 'MB 친형' 이상득 前 의원, 오늘 피의자 신분<br>검찰 출석  | 방송   |
| 제2018-323호 | JTBC    | 1월 24일 | JTBC 뉴스룸        | 출석 미룬 이상득, 오늘 갑자기<br>쓰러져...26일도 불투명   | 방송   |
| 제2018-324호 | MBC-TV  | 1월 24일 | 뉴스데스크           | 이상득, 검찰 소환 앞두고 쓰러져 병원 이송              | 방송   |
| 제2018-325호 | MBN     | 1월 24일 | MBN 뉴스8         | 'MB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의식 잃고<br>응급실행       | 방송   |
| 제2018-326호 | OBS경인TV | 1월 24일 | OBS뉴스M경<br>기-인천 | 이상득, 검찰 조사 앞두고 쓰러져 응급실행               | 방송   |
| 제2018-327호 | SBS-TV  | 1월 24일 | SBS 8 뉴스        | MB 형 이상득, 쓰러져 입원...“26일 출석은<br>예정대로”  | 방송   |
| 제2018-328호 | TV조선    | 1월 24일 | TV조선 뉴스9        | 'MB 형' 이상득 응급실...‘MB 조카’ 이동형<br>검찰 출석 | 방송   |
| 제2018-329호 | YTN     | 1월 24일 | 뉴스 통            | [속보] 이상득 前 의원, 검찰 출석 앞두고<br>쓰러져       | 방송   |
| 제2018-330호 | 채널A     | 1월 24일 | 뉴스A             | [단독] 'MB 형' 이상득, 의식 잃고 중환자실 입원        | 방송   |

| 제2018-258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일보 2018년 1월 23일자 12면<br>「친형 이상득 압수수색... MB가족 덮친 특활비 수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br>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前) 국회의원이 자택에서 머물고<br>있는 모습을 공개하였다.<br>비록 그가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에 연루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br>공간인 자택 내의 생활 모습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br>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br>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25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59호 | 경북일보          | 1월 23일 | 2면    |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 MB<br>조여가는 검찰               | 지역일간지 |
| 제2018-260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1월 24일 | 전체기사면 | 이상득, 검찰소환 앞두고 자택서<br>쓰러져..서울대병원 응급실 후송            | 인터넷신문 |
| 제2018-294호 | 경향신문          | 1월 23일 | 12면   | '특활비 의혹' 이상득 집 압수수색                               | 중앙일간지 |
| 제2018-295호 | 인터넷<br>경향신문   | 1월 22일 | 사회    | '특활비 의혹' 이상득 집 압수수색                               | 인터넷신문 |
| 제2018-296호 | 서울신문          | 1월 23일 | 9면    | '만사형통' 댁까지 수사 檢... MB 전방위 압박                      | 중앙일간지 |
| 제2018-297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1월 23일 | 법원·검찰 | MB 형 이상득 검찰에 "24일 말고 26일<br>나가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298호 | 아주경제          | 1월 23일 | 2면    | 이상득에게 향한 檢  | 중앙일간지 |
| 제2018-299호 | 인터넷<br>아주경제   | 1월 23일 | 사회    | [23일 조간신문 관심 뉴스] 이상득<br>압수수색·김윤옥 측근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300호 | 에너지경제         | 1월 23일 | 1면    | 이상득 압수수색  | 중앙일간지 |
| 제2018-301호 | 인터넷<br>에너지경제  | 1월 24일 | 정치·사회 | 이상득, 점심식사 하다가 돌연 졸도 "연세 닷<br>가끔씩 졸도해" 다행히 호흡·맥박 有 | 인터넷신문 |
| 제2018-302호 | 한겨레           | 1월 23일 | 2면    | 이상득 의원 시절 '원세훈 구명 로비' 돈 직접<br>받았나                 | 중앙일간지 |
| 제2018-303호 | 한국일보          | 1월 23일 | 13면   | 이상득 세번째 檢 수사 역대 특활비 수수 의혹                         | 중앙일간지 |
| 제2018-304호 | 인터넷<br>한국일보   | 1월 24일 | 정치    | MB 친형 이상득, 검찰 소환 이틀 앞두고<br>병원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305호 | 강원도민일보        | 1월 23일 | 21면   | 검, 'MB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                             | 지역일간지 |
| 제2018-306호 | 인터넷<br>강원도민일보 | 1월 23일 | 정치    | 검, 'MB형' 이상득 사무실 압수수색                             | 인터넷신문 |
| 제2018-307호 | 경인일보          | 1월 23일 | 23면   | 압수수색에 착잡한 이상득 前의원                                 | 지역일간지 |
| 제2018-308호 | 인터넷<br>경인일보   | 1월 24일 | 뉴스    | 이상득 전 의원, 서울대병원 응급실 후송...<br>검찰소환 앞두고 의식 잃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309호 | 광주일보          | 1월 23일 | 2면    | '국정원 특활비' 이상득도 수사 ... 이명박측<br>압박                  | 지역일간지 |
| 제2018-310호 | 인터넷<br>광주일보   | 1월 23일 | 정치    | '국정원 특활비' 이상득도 수사 ... 이명박측<br>압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311호 | 동양일보          | 1월 23일 | 5면    | MB, 친형 압수수색에 무대응 '정중동'                            | 지역일간지 |
| 제2018-312호 | 시민일보          | 1월 23일 | 11면   | MB 수사망 좁히는 檢 이상득 자택 압수수색                          | 지역일간지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313호 | 인터넷<br>시민일보        | 1월 22일 | 사회     | MB 수사망 좁히는 檢... 이상득 자택<br>압수수색                    | 인터넷신문 |
| 제2018-314호 | 이데일리               | 1월 23일 | 27면    | '만사형통' 이상득 압수수색                                   | 지역일간지 |
| 제2018-315호 | 인터넷<br>이데일리        | 1월 24일 | 정치.글로벌 | 'MB 친형' 이상득, 검찰 조사 앞두고 쓰러져<br>응급실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316호 | 일간리더스<br>경제신문      | 1월 23일 | 13면    | 檢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 국정원 자금<br>수수 혐의              | 지역일간지 |
| 제2018-317호 | 일간투데이              | 1월 23일 | 1면     | 檢 'MB 친형' 이상득 압수수색... 역대<br>국정원자금 수수 혐의           | 지역일간지 |
| 제2018-318호 | 중도일보               | 1월 23일 | 01A면   | 이상득 압수수색... MB 조이는 檢                              | 지역일간지 |
| 제2018-319호 | 중부일보               | 1월 23일 | 22면    | 檢, 이상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지역일간지 |
| 제2018-320호 | 인터넷<br>중부일보        | 1월 22일 | 사회     | '만사형통' 이상득까지 수사선상에...MB<br>조여가는 검찰                | 인터넷신문 |
| 제2018-321호 | 충청투데이              | 1월 23일 | 4면     | '특활비 상납 의혹' MB 친형 이상득까지<br>정조준                    | 지역일간지 |
| 제2018-322호 | 인터넷<br>충청투데이       | 1월 24일 | 사회     | 검찰, MB 일가 전방위 압박...이동형 오늘<br>소환·이상득 불응            | 인터넷신문 |
| 제2018-331호 | 매경닷컴               | 1월 22일 | 포토     | 이상득, 압수수색에 '심각한 표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332호 | 베타뉴스               | 1월 24일 | 종합     | 'MB 친형' 이상득, 검찰소환 앞두고 자택서<br>쓰러져...서울대병원 응급실 후송   | 인터넷신문 |
| 제2018-333호 | 부산닷컴               | 1월 25일 | 사회     | 이상득, 검찰 출두 앞두고 입원...속도내던<br>특활비 수사에 제동            | 인터넷신문 |
| 제2018-334호 | 세계닷컴               | 1월 23일 | 사회     | 檢, MB형 이상득과 조카 이동형 24일 소환<br>통보                   | 인터넷신문 |
| 제2018-335호 | 아시아투데이<br>닷컴       | 1월 23일 | 사회     | 검찰,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 의혹 이상득 전<br>의원 24일 소환 통보        | 인터넷신문 |
| 제2018-336호 | 인터넷<br>국제신문        | 1월 22일 | 사회     | 검찰, 이상득 압수수색...특활비 수수 연루<br>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18-337호 | 인터넷<br>금강일보        | 1월 22일 | 정치     | 검찰 MB 형 이상득 압수수색,실제로<br>균림했던 인물...“모든 일이 형님을 통한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338호 | 인터넷<br>브릿지경제신<br>문 | 1월 22일 | 포토     | [포토] '자택 압수수색' 이상득, 수심 가득한<br>표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339호 | 인터넷<br>서울경제        | 1월 24일 | 정치     | MB 친형 이상득, '가택 수색으로 인한<br>충격'으로 檢소환 불응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340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1월 22일 | 라이프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 인터넷신문 |
| 제2018-341호 | 인터넷 신아일보   | 1월 25일 | 사회일반 | '예정대로' 조사받겠다는 이상득... 건강상태 변수되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342호 | 인터넷 한국정경신문 | 1월 24일 | 뉴스   | 이상득, 무슨 일이 있었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343호 | 투스타뉴스      | 1월 24일 | 방송   | 'KBS뉴스' 이상득, 소환 앞두고 '혼절'           | 인터넷신문 |

| 제2018-262호 | 주식회사 스포츠동아  |  |  |  |  |
|------------|---|--|--|--|--|
| 대상보도       | 스포츠동아 2018년 1월 24일자 8면 「○○○○ 김○○ 광서 성폭행 피소」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초상, 성명, 소속 구단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26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1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63호 | 스포츠조선    | 1월 24일 | 6면   | ○○ 공격수 김○○, 광서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 중앙일간지 |
| 제2018-264호 | 뉴스1코리아   | 1월 23일 | 스포츠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         | 뉴스통신  |
| 제2018-265호 | 뉴시스      | 1월 23일 | 사회일반 | ○○○○ 공격수 김○○, 광에서 성폭행 체포...혐의 부인    | 뉴스통신  |
| 제2018-266호 | 인터넷 중부일보 | 1월 23일 | 뉴스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344호 | 노컷뉴스     | 1월 23일 | 스포츠  | ○○ 소속 김○○, 광 전지훈련 도중 성폭행 혐의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345호 | 뉴스엔                 | 1월 23일 | 전체기사  | ○○ 공격수 김○○, 광 전훈서 성폭행 혐의 체포              | 인터넷신문 |
| 제2018-346호 | 동아닷컴                | 1월 23일 | 스포츠   | 광 매체 “○○ ○○ 김○○, 광 전지 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347호 | 메트로신문               | 1월 24일 | 뉴스    | 김○○, 광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피해 여성 진술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348호 | 미디어펜                | 1월 23일 | 연예스포츠 |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349호 | 스타뉴스                | 1월 24일 | 스포츠   |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 기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350호 | 스포츠조선<br>닷컴         | 1월 24일 | 축구    | ○○ 김○○, 광 전훈지서 성폭행혐의 경찰체포                | 인터넷신문 |
| 제2018-351호 | 스포츠한국               | 1월 23일 | 스포츠   | ○○○○ 김○○, 광 전지훈련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352호 | 스포탈코리아              | 1월 23일 | 뉴스    | ○○ 김○○, 광 전훈서 성폭행 혐의 기소…<br>본인은 부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353호 | 스포티비뉴스              | 1월 23일 | 축구    | 성폭행 혐의 김○○, 팀 합류…○○ “진상 파악<br>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354호 | 엠케이스포츠              | 1월 23일 | 축구    | ○○ 공격수 김○○, 광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355호 | 오에스이엔<br>(OSEN)     | 1월 23일 | 국내축구  | ○○ ○○ 김○○, 광 전훈지서 성폭행 혐의로<br>체포          | 인터넷신문 |
| 제2018-356호 | 온라인<br>중앙일보         | 1월 23일 | 스포츠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br>피소…혐의 부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357호 | 이타임즈                | 1월 23일 | 스포츠   | ○○○○ 공격수 김○○, 광에서 성폭행<br>체포…혐의 부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358호 | 인터넷<br>경인일보         | 1월 24일 | 스포츠   | ○○ ○○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 중<br>성폭행 혐의로 피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359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1월 24일 | 시사    | K리그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에서 성폭행<br>연루           | 인터넷신문 |
| 제2018-360호 | 인터넷<br>국제신문         | 1월 23일 | 스포츠속보 | ○○ ○○ 소속 김○○ ‘광 전지 훈련 중 성폭행<br>혐의 경찰 입건’ | 인터넷신문 |
| 제2018-361호 | 인터넷<br>데일리<br>스포츠월드 | 1월 23일 | 스포츠   | ○○ 김○○, 광 전훈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br>‘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362호 | 인터넷<br>베스트일레븐       | 1월 23일 | K리그   | ○○ 김○○, 광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br>기소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363호 | 인터넷 스포츠동아   | 1월 24일 | 축구&종합 | '깜 전훈 성추문' 김○○, ○○ ○○의 운명은 어떻게?        | 인터넷신문 |
| 제2018-364호 | 인터넷 스포츠서울   | 1월 23일 | 축구    | ○○ ○○ 김○○, 깜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기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365호 |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 1월 23일 | 스포츠   | ○○ ○○ 김○○ 피해 여성 "소리치자 입을 막고 시도" 진술     | 인터넷신문 |
| 제2018-366호 | 인터넷풋볼       | 1월 24일 | 일반기사  | [클래식 ISSUE] '성폭행 혐의' 김○○, 군경팀 해외전훈 막히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367호 | 창업일보        | 1월 24일 | 사회    | 김○○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국방부, 체포 조사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368호 | 톱스타뉴스       | 1월 23일 | 사회    | K리그 공격수 김○○, 해외 전지훈련 중 성폭행 혐의로 체포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369호 | e글로벌 이코노믹   | 1월 23일 | 전체기사  | 김○○, 깜서 여성 성폭행 혐의 기소... 과거 선수 이력 살펴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370호 | STN SPORTS  | 1월 23일 | 축구    | ○○ 공격수 김○○, 깜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 인터넷신문 |

| 제2018-267호 |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
|------------|--|
| 대상보도       | 민중의소리 2018년 1월 23일자 사회면 「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성명 및 소속 구단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26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68호 | 오마이뉴스        | 1월 24일 | 스포츠    | K리그 축구선수, 해외 전지훈련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 인터넷신문 |
| 제2018-269호 | 인터넷 스포츠투데이 M | 1월 23일 | 스포츠    | ○○ 김○○, 광 전지훈련 도중 성폭행 혐의 기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270호 | 인터넷 시사저널     | 1월 26일 | 사회     | '성폭행' 기소된 김○○측 "진실 외면한 채 현지 언론만 인용"             | 인터넷신문 |
| 제2018-271호 |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 1월 23일 | 연예·스포츠 | K리그 ○○ ○○ 공격수, 광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 혐의 부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272호 | 인터넷 이데일리     | 1월 23일 | 사회     | ○○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서 성폭행 혐의로 조사 받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273호 | 조선닷컴         | 1월 23일 | 스포츠    | 국방부 "성폭행 혐의 김○○, 귀환시켜 조사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274호 | 한강타임즈        | 1월 24일 | 사회     | ○○ 공격수 김○○, 광 전지훈련 도중 성폭행 체포...국방부 "귀환시켜 조사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275호 | 주식회사 비즈니스트리분  |
|------------|---|
| 대상보도       | 비즈니스트리분 2018년 2월 2일자 사회면 「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 당해...가해자 실형」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인 유명 연예인의 결혼 연도, 데뷔 연도,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전직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 의결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76호 | 주식회사 에너지경제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8년 2월 2일자 Visual면<br>「'필리핀 성폭행' 피해, 리포터 출신 유명배우 아내 누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배우자인 유명 연예인의 결혼 연도, 데뷔 연도,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전직 등을 상세히 공개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77호 | 주식회사 와이티엔   |
|------------|---|
| 대상보도       | YTN 2018년 1월 14일 00:00 <자정뉴스>프로그램<br>「日 흥기로 돌변한 전자담배...몰래 넣은 것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방송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은을 전자담배에 주입하는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27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78호 | 온라인 중앙일보 | 1월 15일 | 국제 | '살인미수 혐의 적용' 흥기로 돌변한 전자담배 | 인터넷신문 |
| 제2018-279호 | 인터넷 국민일보 | 1월 14일 | 시사 | 전자담배로 살인 시도를 했다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280호 | 조선닷컴     | 1월 14일 | 국제 | 日서 '엽기적 살인흥기'로 둔갑한 전자담배   | 인터넷신문 |

| 제2018-281호 | 주식회사 연합뉴스   |
|------------|---|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18년 1월 23일자 최신기사면<br>「홀몸 60대, 따뜻하게 대해준 집주인에게 돈 남기고 숨겨」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유서 내용과 함께 자살을 묘사한 삽화를 게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2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18년 1월 23일자 사회면<br>「“밥 좀 챙겨먹어” 집주인에게 남긴 670만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을 영웅시 혹은 미화하거나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시신이 ‘고통의 흔적이 없이 홀가분해 보였다’고 묘사하였다. 이는 자살을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3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1월 28일자 국제면<br>「‘길고양이’ 먹이로 유인해 잔인하게 때려 죽인 중국인 (영상)」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위 기사는 한 남성이 고양이를 학대하여 죽이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284호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
|-----------------|---|
| <b>대상 보도</b>    | 중도일보 2018년 1월 17일자 8면<br>「지방흡입 선진 의료기술, 대전서 전수」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지역일간지   |
| <b>법익 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5호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
|-----------------|--|
| <b>대상 보도</b>    |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1월 16일자 문화면<br>「대전 ○○○○○○○○○병원, 선진 지방흡입 의료기술 전수」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 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

|  |  |
|--|--|
|  |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286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
| 대상 보도      | 주간동아 2018년 1월 31일자 66면<br>「통증 잡아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87호 | 주식회사 동아닷컴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주간동아 2018년 1월 31일자 경제면<br>「통증 잡아 삶의 질을 높여준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

|  |  |
|--|--|
|  |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288호 | 주식회사 국제뉴스   |
|------------|---|
| 대상 보도      | 국제뉴스 2018년 1월 29일자 전국면 「600병상 호텔식 '○재활요양병원' 22일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28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289호 | 메디파나뉴스   | 1월 30일 | 전체기사  | 600병상 호텔식 '○재활요양병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290호 | 인터넷 중도일보 | 1월 29일 | 부산/영남 | ○재활요양병원, 본격 개원...600병상 호텔식의 재활치료 전문 요양병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291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부산닷컴 2018년 2월 2일자 사회면<br>「창원 ○○동 ○○한방병원 개원… ‘양·한방 통합’ 진료」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92호 | 프레시안협동조합  |
|------------|---|
| 대상 보도      | 프레시안 2018년 1월 13일자 전국면<br>「○○요양병원 개원 10년 ‘나눔과 자유의 쉼터’ 로 지역민과 호흡」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293호 | 주식회사 오산시민신문사  |
|------------|---|
| 대상 보도      | e오산시민신문 2018년 1월 25일자 생활면<br>「○○○○병원, 피부비뇨기과와 유방갑상선내분비외과 개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1호 | 뉴데일리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뉴데일리 2018년 2월 6일자 경제면<br>「[단독] 이훈 조정 중인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딸과 주말 영화 관람」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 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동거인의 성명, 나이 및 확인되지 않은 학력, 혼인이력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동거인의 성명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2호 | 주식회사 경상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경상일보 2018년 2월 2일자 연예/시사면<br>「‘도도맘 불륜 손배패소’ 강용석, ‘일부일처제 지키기 모임’ 등장 왜?... “현수막엔<br>부부·가정 소중함 호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br>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대기업 회장의 동거인의 성명을 공개하였다.<br>비록 SK그룹 최대원 회장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동거인의<br>성명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br>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br>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3호 | 주식회사 중부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부일보 2018년 2월 21일자 연예면<br>「조민기 성추행 정황 폭로한 송○○은 누구?...올해 ○○대 연극학과 졸업→ 대학로<br>데뷔」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br>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br>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 나이, 학력,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br>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4호 | 주식회사 헤럴드   |
|------------|--|
| 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2월 22일자 최신기사면<br>「송○○은 누구」 갑론을박…진실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출생연도, 나이, 학력 등을 추측하여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5호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
|------------|--|
| 대상보도       | 스포츠한국 2018년 2월 21일자 연예면<br>「송○○, 미투 동참… 조민기 성추행 논란에 “그는 캠퍼스의 왕”[전문]」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SNS 게시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13호 | 브레이크뉴스 | 2월 21일 | 연예 | [전문] 송○○, “조민기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공공연한 사실” 폭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14호 | 비주얼다이브       | 2월 21일 | 사회     | 연극배우 송○○, “조민기는 왕이었다” [전문 포함]  | 인터넷신문 |
| 제2018-415호 | 스포츠조선닷컴      | 2월 21일 | 엔터테인먼트 | [입장전문] 송○○ “조민기에 성추행 당했다, 꽃뱀 취급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416호 | 오에스이엔(OSEN)  | 2월 21일 | 방송     | [전문] 송○○ “조민기, 학생들 오피스텔 부르기도..명백한 성추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417호 | 온라인중앙일보      | 2월 21일 | 사회     | 배우 송○○ “조민기, 여성들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418호 | 이투데이         | 2월 21일 | 연예스포츠  | 연극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오피스텔에 불러 자고 가라고 해...가슴 접촉 다반사”                   | 인터넷신문 |
| 제2018-419호 | 인터넷경북신문      | 2월 21일 | 뉴스종합   |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당시 무슨 일이 있었나?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공개...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420호 | 인터넷대전투데이     | 2월 21일 | 방송/연예  | 송○○ ‘조민기 성추행’ 관련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진술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 인터넷신문 |
| 제2018-421호 | 인터넷서울경제      | 2월 21일 | TV·방송  | [전문]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피해 주장 “신체접촉·음담패설, 저항할 수 없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22호 | 인터넷스포츠동아     | 2월 21일 | 연예     | [종합] ‘성추행 의혹’ 조민기 “조사받겠다”...○○대 “면직 확정”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423호 | 인터넷울산매일      | 2월 21일 | 방송/연예  | 조민기 성추행 폭로, 설마 했는데 이런 일까지 있었네 송○○, “전날 밤의 성추행범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24호 | 인터넷울산종합일보    | 2월 21일 | 뉴스     | ‘조민기 성추행’ 송○○ 폭로, 당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425호 | 인터넷이데일리      | 2월 21일 | 연예     | “조민기 절대적 권력, 누구도 고발 못해”(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426호 | 인터넷일간리더스경제신문 | 2월 21일 | 뉴스     | ‘조민기 성추행’ 송○○, “힘으로 버텨도 소용없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혀   | 인터넷신문 |
| 제2018-427호 | 인터넷일간스포츠     | 2월 21일 | 연예     | [이슈IS] 송○○ “조민기 캠퍼스 왕, 고발도 두려웠다” 성추행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428호 | 인터넷한국일보      | 2월 21일 | 사회     |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은 공공연한 사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29호 | 조이뉴스24     | 2월 21일 | 연예가화제 | 피해자 나섰다, 송○○ #미투고백...조민기 입장 바뀔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430호 | 쿠키뉴스       | 2월 21일 | 뉴스    | 송○○, 조민기 부인 정면 반박 "나도 피해자... 특하면 오피스텔 불러 음담패설"            | 인터넷신문 |
| 제2018-431호 | 텐아시아       | 2월 21일 | 핫이슈   | 신인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오피스텔에 수시로 여학생 불러"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432호 | 톱스타뉴스      | 2월 21일 | 사회    |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가슴 만지고 '생각보다 작다' 발언...수치스러워 심장 터질뻔"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433호 | 티비리포트      | 2월 21일 | 엔터    |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오피스텔로 불러 신체접촉·음담패설"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434호 | 한경닷컴       | 2월 21일 | 연예    | 송○○, 조민기 성추행 장문의 글로 폭로.. "오피스텔에 수시로 여학생 불러"               | 인터넷신문 |
| 제2018-435호 | lstyle24스냅 | 2월 21일 | STAR  | 연극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충격' (전문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376호     | 주식회사 경인일보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경인일보 2018년 2월 14일자 문화면 「김○○ 대표, 연출가 이윤택 "10년 전 여관방서 안마시켰다" 성추행 폭로... 연극계도 '미투'」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SNS 게시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36호 | 국제뉴스        | 2월 14일 | 사회      | 김○○, 이윤택 성추행 의혹 폭로?...SNS 통해 '미투' 운동 확산          | 뉴스통신  |
| 제2018-437호 | 뉴스1코리아      | 2월 14일 | 문화      | 이윤택 고발 '미투' 김○○ "성추행 직접 해명·사과하라"                 | 뉴스통신  |
| 제2018-438호 | 뉴스웍스        | 2월 14일 | 사회      | 이윤택 "활동 중단"... 김○○ 대표 "여관방으로 불러 은밀한 부위 안마시켰다" 폭로 | 뉴스통신  |
| 제2018-439호 | 아시아<br>뉴스통신 | 2월 14일 | 사회      | 김○○, 이윤택 '성추행' 폭로 "무섭고 끔찍했다"                     | 뉴스통신  |
| 제2018-440호 | 글로벌<br>경제신문 | 2월 15일 | 사회      | 이윤택 성추행, 뜨거운 감자 설 연휴 시작부터...김○○ 용기 낸 전문 글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441호 | 뉴데일리        | 2월 14일 | 연예      | 연출가 이윤택, 여관방으로 김○○ 불러 "XX주변 주무리라" 지시             | 인터넷신문 |
| 제2018-442호 | 뉴스인사이드      | 2월 14일 | 사회      | 이윤택 성추행 논란, 김○○의 폭로글보니? "중요부위 마사지 시켜...끔찍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43호 | 뉴스컬처        | 2월 14일 | CULTURE | 이윤택 연출, 김○○ 대표 '여관방 성추행' 폭로에 "반성하며 근신...활동 중단"   | 인터넷신문 |
| 제2018-444호 | 로이슈         | 2월 15일 | 사회      | 설 연휴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이윤택 성추행, 김○○ 용기 낸 전문 글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445호 | 베타뉴스        | 2월 14일 | 뉴스      | 김○○ 대표, 용감한 미투 고백 실천한 인물..그의 작품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446호 | 부산닷컴        | 2월 14일 | 스포츠연예   | '미투' 연극계로 확산...김○○ 대표, 이윤택 연출 성추행 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447호 | 비스트리분       | 2월 14일 | 사회      | 김○○ '이윤택 성추행 증언' 폭로 관심↑...'표창원 의원 미투 운동 동참'      | 인터넷신문 |
| 제2018-448호 | 스포츠투데이<br>M | 2월 14일 | 연예      | 김○○, '오구' 이윤택 연출가 성추행 폭로..."구역질 난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49호 | 스포츠한국       | 2월 14일 | 연예      | 이윤택, '미투' 캠페인으로 밝혀진 성추행..."인터폰으로 방 호수 불러"        | 인터넷신문 |
| 제2018-450호 | 아시아<br>경제닷컴 | 2월 14일 | 뉴스      | '#미투' 동참한 김○○ "이윤택 연출가, 직접 해명·사과하라"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51호 | 엑스포츠뉴스           | 2월 14일 | 연예     | 연극 연출가 이윤택, 성추행 의혹 “안마 시켰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52호 | 웹데일리             | 2월 15일 | 사회     | 이윤택 성추행, 설 연휴 시작부터 뜨거운 감자...김○○ 용기 낸 전문 글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453호 | 인터넷 경향신문         | 2월 14일 | 문화     | 이윤택, 여관방 성추행...김○○ 증언 뒤 이윤택 사과                   | 인터넷신문 |
| 제2018-454호 | 인터넷 국민일보         | 2월 15일 | 시사     | “응원합니다” 이윤택 연출 성추행 폭로한 김○○ 폐북 상황                 | 인터넷신문 |
| 제2018-455호 | 인터넷 남도일보         | 2월 14일 | 뉴스     | 김○○ 이윤택 성추행 증언, 표창원 의원도 ‘미투’ 동참 선언?              | 인터넷신문 |
| 제2018-456호 | 인터넷 시사포커스        | 2월 14일 | 사회     | 연극계에도 불거진 ‘미투’ 운동...10년 전 연출가가방으로 불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457호 | 인터넷 아주경제         | 2월 14일 | 국내일반   | 이번엔 유명 연극 연출가 성추행 의혹...연극계 미투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18-458호 | 인터넷 영남일보         | 2월 14일 | 뉴스     | ‘미투’ 김○○ “이윤택 여배우 성추행 사건 정리에 분노 치밀어 증언하기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459호 |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 2월 14일 | 더리더POP | 김○○ 이윤택 성추행 증언, 표창원도 ‘미투’ 동참..정치계도 번질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460호 | 인터넷 한국스포츠키경제     | 2월 14일 | 연예     | 김○○ 대표, ‘#미투’ 동참... “유명 연출, 여관서 마사지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461호 | 인터넷 한국일보         | 2월 14일 | 스타     | 김○○ 대표, 이윤택 성추행 폭로 “바지내리고 안마하라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462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2월 14일 | 문화     | 김○○ 대표, 용감한 미투 고백 실천한 인물..그의 작품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463호 | 톱스타뉴스            | 2월 17일 | 사회     | 극단대표 추 모씨도 이윤택 성추행 폭로...“성기를 만지게 했다. 입으로 하라고 강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464호 | 한경닷컴             | 2월 14일 | 연예     | 이윤택, 10년전 여관방 성추행..김○○ 폭로에 “활동중단, 반성하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65호 | enews24          | 2월 14일 | 연예가 화제 | 김○○ 대표, 유명 연출가 성추행 폭로...“여관방에 불려 성기 안마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466호 | e머니에스            | 2월 14일 | 사회     | ‘이윤택 성추행’ 폭로한 김○○ 대표는 누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467호 | e머니투데이           | 2월 14일 | 뉴스     | “유명 연출가, 갑자기 바지내려”...연극계도 ‘#미투’                  | 인터넷신문 |

| 제2018-377호 |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
|------------|--|
| 대상보도       | 톱스타뉴스 2018년 2월 21일자 사회면<br>「18세 고등학생, K씨에 이어 두번째로 김해 극단 번작이 조중훈 대표 성폭행 폭로」<br>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SNS 게시물 전문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8호 | 주식회사 에스에스미디어판   |
|------------|---|
| 대상보도       | 뉴스인사이드 2018년 3월 5일자 사회면<br>「박○○, 고은 성추행 폭로 “바지 지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다가…” 충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79호 | 주식회사 동아닷컴   |
|------------|---|
| 대상보도       | 동아닷컴 2018년 3월 7일자 연예면<br>「“몸부림 한번 치자, 거기 맞은 어떡냐?” 김기덕, 여배우에 이런 말을 수시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0호 | 국민일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2월 22일자 시사면<br>「[영상] “성기에 나무젓가락 꽂아…” 손석희도 놀란 흥선주의 폭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1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2월 28일자 TV 방송면<br>「배우 조민기 카톡, 본인 성기 사진까지 보내? “그 긴 혀로 어찌해줘” 경악스러운 ‘성 집착’」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 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 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2호 | 주식회사 한라일보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한라일보 2018년 3월 3일자 이슈키워드면<br>「남궁○ 성추행 사실무근, 남자친구와 관계 상태까지 체크 “가슴 5초…3초만…싫어?”」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 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 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3호 |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
|------------|---|
| 대상보도       | 스포츠조선닷컴 2018년 2월 27일자 연예면<br>「[단독] “조민기 음란 카톡에 당했다” 또다른 피해자, 대화내용 폭로(인터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4호 | 주식회사 여원뉴스   |
|------------|---|
| 대상보도       | 여원뉴스 2018년 2월 28일자 #Me Too면<br>「성추행 조민기 ‘19禁 음란카톡’도 … SNS “개역겁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385호</b> | <b>주식회사 뉴스1</b>   |
| <b>대상 보도</b>      | 뉴스1코리아 2018년 2월 20일자 문화면<br>「천안 펫숍에서 79마리 강아지 사체 발견...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다수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줄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8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386호 | 온라인 중앙일보 | 2월 20일 | 사회    | 백골 사체까지...강아지 판매하는 펫샵서 개 79마리 떼죽음      | 인터넷신문 |
| 제2018-387호 | 인터넷 한겨레  | 2월 20일 | 애니멀피플 | 천안 펫샵서 강아지 떼죽음...“방치된 개 79마리 죽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389호 | e머니투데이   | 2월 24일 | 사회    | 경찰, 반려견 79마리 떼죽음 펫숍 업주에 구속영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390호 | 노트펫      | 2월 20일 | 사회    | 개 79마리 떼죽음..‘새주인 찾아준다더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391호 | 대전일보닷컴   | 2월 20일 | 사회    | 개 79마리 사체 발견...천안 펫숍서 떼죽음              | 인터넷신문 |
| 제2018-392호 | 데일리벳     | 2월 20일 | 뉴스    | 펫샵 2층에 숨겨진 강아지 사체 78구...반려동물 유통관리 유명무실 | 인터넷신문 |
| 제2018-393호 | 세계닷컴     | 2월 20일 | 사회    | 천안 펫숍서 개 79마리 사체로 발견...일부는 뼈까지 드러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394호 | 오마이뉴스    | 2월 20일 | 사회    | 인간의 탐욕에 79마리 개들 ‘떼죽음’                  | 인터넷신문 |
| 제2018-395호 | 인사이트     | 2월 20일 | 정치·사회 | “새주인 찾아준다더니”...천안 펫샵서 강아지 79마리 떼죽음     | 인터넷신문 |
| 제2018-396호 | 인터넷 국민일보 | 2월 20일 | 시사    |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강아지 79마리 떼죽음’ 참사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398호 | 인터넷<br>입법국정전문지<br>더 리더 | 2월 20일 | 사회   | 충남 펫숍 개 79마리 떼죽음…“참혹하다 못해<br>두 발로 서서 볼 수 없을 지경” | 인터넷신문 |
| 제2018-399호 | 위키트리                   | 2월 20일 | 사건사고 | “두 개골만 남은 사체도…” 79마리 강아지<br>끓겨 죽인 펫샵 사장(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388호     | 주식회사 뉴시스   |
|----------------|--|
| <b>대상보도</b>    | 뉴시스 2018년 2월 20일자 사회일반면<br>「펫숍에서 개 79마리 방치 치사…병들거나 끓어 떼죽음」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다수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줄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397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2월 20일자 사회면<br>「펫숍에 갇힌 개 79마리 사체로 발견…일부는 뼈까지 드러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다수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전염병에 걸린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줄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00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부산일보 2018년 2월 6일자 25면<br>「부산○○○○병원, ○○동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01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부산닷컴 2018년 2월 6일자 사회면<br>「부산○○○○병원, ○○동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402호</b> | <b>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b>   |
| <b>대상보도</b>       | 브릿지경제신문 2018년 2월 22일자 14면<br>「노안·백내장 치료 전문 진료 접근·환자편의UP」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0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03호 | 인터넷<br>브릿지<br>경제신문 | 2월 22일 | 비바100 | [비바100] ○○○○안과, 노안·백내장 치료<br>전문... 진료 접근·환자편의 UP | 인터넷신문 |
| 제2018-404호 | 매경닷컴               | 2월 13일 | 전체기사  | ○○○○안과 확장 이전...진료 전문성 높여                         | 인터넷신문 |
| 제2018-405호 | 인터넷<br>한국일보        | 2월 14일 | 라이프   | [헬스 파일] ○○○○안과, 압구정역 2번<br>출구 인근 확장 이전           | 인터넷신문 |

|                   |   |
|-------------------|---|
| <b>제2018-406호</b> | <b>주식회사 올댓닥터스</b>   |
| <b>대상보도</b>       | 라포르시안 2018년 1월 23일자 의료와 사회면<br>「○○○병원, 개원식 가져...“서울 서부지역 대표병원 자리매김”」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407호     | 주식회사 울산종합일보   |
|----------------|---|
| <b>대상 보도</b>   | 울산종합일보 2018년 2월 26일자 인터뷰면<br>「“로봇 재활치료, 환자 회복 및 만족도 최고”」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408호     | 건강다이제스트  |
|----------------|--|
| <b>대상 보도</b>   | 인터넷 건강다이제스트 2018년 3월 5일자 뉴스면<br>「난치성 피부질환 치료 ‘○○한의원 천안○○점’ 3월 22일 오픈」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409호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의협신문 2018년 2월 19일자 의원·병원면 「○○○○○병원 성북구에 문 연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안·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410호     |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한국일보 2018년 2월 8일자 사회면 「대구 수성구 ○○병원 중구 ○○○거리로 확장 이전」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411호     | 주식회사 헤럴드   |
|----------------|--|
| <b>대상 보도</b>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3월 2일자 헬스면<br>「○○마취통증의학과 18번째 지점 ‘○○점’, 오는 5일 개원」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등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412호     | 주간인물   |
|----------------|--|
| <b>대상 보도</b>   | 주간인물 2018년 3월 2일자 메디컬면<br>「성○○ ○○○병원(구.○내과정형외과의원) 원장」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468호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뉴스웍스 2018년 2월 28일자 사회면<br>「최○○ 시인 “고은, 술집서 자위하다 ‘여기 좀 만져 달라’했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469호     | 뉴스퀵   |
|----------------|---|
| <b>대상보도</b>    | 뉴스퀵 2018년 2월 28일자 사회면<br>「최○○ 시인, 고은 성추행 추가 폭로..자위 하면서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70호     | 주식회사 베타뉴스   |
|----------------|---|
| <b>대상보도</b>    | 베타뉴스 2018년 3월 5일자 종합면<br>「박○○ 시인 폭로, 고은 시인 성기 꺼낸 후 흔들고 한 말」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성적 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7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71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3월 5일 | 시사 | “성기를 꺼내 흔들고...” ‘억울하다’던 고은,<br>이번엔 男 시인 증언 나와               | 인터넷신문 |
| 제2018-472호 | 인터넷<br>서울경제  | 3월 5일 | 사회 | 박○○ 시인 폭로 “고은 시인 성기 3분 넘게<br>흔들어” 남자인 나도 엄청난 모욕감 ‘사과’<br>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473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3월 5일 | 문화 | 박○○ 시인 폭로 내용 ‘충격’...고은, 성기<br>꺼내 흔들 후 한 말이...               | 인터넷신문 |

| 제2018-474호 |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뉴스웍스 2018년 3월 6일자 연예면<br>「김기덕 감독·조재현 관련 여배우 증언… “너의 가슴은 복숭아”·“성관계 요구하며 셋이 자자”」 제하의 보도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47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0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75호 | 뉴데일리      | 3월 7일 | 연예     | 김기덕, 여배우에게 “거기 맛은 어떠냐? 몸부림 한번 치자” 성관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476호 | 뉴스타운      | 3월 7일 | 오늘의 이슈 | PD수첩 ‘김기덕, “내 성X에 대해 물어봐… ‘색깔은? 털은? 만져봤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477호 | 데일리그리드    | 3월 5일 | 방송통신   | PD수첩, 여배우들의 김기덕 감독·조재현 폭로전 “가슴·성기 언급…셋이 자자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478호 | 마이데일리     | 3월 6일 | 종합     | ‘PD수첩’ B씨 “김기덕 감독이 ‘네 가슴을 상상’ 충격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479호 | 인터넷 광남일보  | 3월 6일 | Hot 클릭 |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숙소 찾아와 강제 겁탈…“너 XX 핑크색이야? 맛 어떠냐?” 섬뜩 | 인터넷신문 |
| 제2018-480호 | 인터넷 에너지경제 | 3월 6일 | 종합     |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숙소 문 열고 겁탈…“너 XX 핑크색이야? 맛 어떠냐?” 공포   | 인터넷신문 |
| 제2018-481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3월 7일 | 연예     | [김기덕 민낯②] “네 가슴 보고싶어” 여배우B 폭로한 노골적 발언들            | 인터넷신문 |
| 제2018-482호 | 인터넷 제민일보  | 3월 6일 | 연예     | 김기덕·조재현 성폭행 파문, 숙소서 강제 겁탈…“너 XX 핑크색이야? 맛 어떠냐?”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83호 | 조세금융신문      | 3월 7일 | 이슈투데이 | PD수첩' 김기덕, "내 성X 색깔이랑 털에 대해 묻더니 '만져봤냐'더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484호 | M 이코노미 NEWS | 3월 7일 | 연예    | 'PD수첩' 김기덕 감독 성추문...치마 들추면서 "다리 벌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485호 |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
|------------|--|-----------|--|--|--|
| 대상보도       | 뉴스웍스 2018년 2월 28일자 정치·사회면 「조민기 성희롱 피해자 또 등장... '난 만지고 있다. 도와 달라' 카톡 내용 공개」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48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86호 | 뉴스인사이드   | 2월 28일 | 엔터     | 조민기 카톡 "당신도 젓XX 되죠"...부끄러워하던 베드신보니? "과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487호 | 뉴스타운     | 3월 1일  | 오늘의 이슈 | 조민기 카톡, 팬티 벗고 셀카 찍어 능욕 "애무하고 싶다...XX, 당신도 젓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488호 | 더팩트      | 2월 28일 | 연예     | 조민기 카톡 "딱딱해졌다"...성추행 11번째 피해자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489호 | 디트news24 | 3월 1일  | 디트TV   | 조민기 카톡, 팬티 벗은 채 적나라한 능욕 "애무하고 싶다...XX, 당신도 젓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490호 | 부산닷컴     | 2월 28일 | 사회     | "너무 딱딱해졌어요" 조민기, 학생에게 음란 카톡 보냈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93호 | 이코노뉴스         | 2월 28일 | 종합     | 조민기 카톡, “음란과 더러움 그 자체, 키스·애무 다 하고 싶다…너무 많이 흥분됐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494호 | 이투데이          | 2월 28일 | 연예     | ‘조민기 카톡’ 성희롱 메시지 공개… “남자친구와 잠자리는 잘 맞냐”, “혼자 흥분해” 등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497호 | 인터넷 국제신문      | 3월 2일  | 사회     | ‘조민기 카톡’ 익숙해지지 않는 충격 “그 긴 혀로…”, “나 혼자 너무 흥분”          | 인터넷신문 |
| 제2018-499호 | 인터넷 서울신문      | 2월 28일 | 사회최신   | 조민기 새벽 카톡 보니… “난 만지고 있다, 도와 달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501호 | 인터넷 에너지경제     | 3월 4일  | Visual | 조민기 카톡 논란, 만취해 성기 사진 전송 “난 딱딱해졌으니 너도 젖어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503호 | 인터넷 제민일보      | 3월 2일  | 연예     | 조민기 카톡, 낮 뜨거운 대화 내용에 경악 “XX 혀로 어떻게 좀 해달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504호 | 인터넷 한국스포츠키 경제 | 2월 28일 | 연예     | “나 혼자 많은 상상하고 있다” 조민기 음란 카톡… 네티즌 “성도착증 수준”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506호 | 조세금융신문        | 3월 1일  | LIFE   | 조민기 카톡, 팬티 벗어던지고 능욕 표출 “애무하고 싶다…XX, 당신도 젖어줘”          | 인터넷신문 |

| 제2018-491호     | 주식회사 비즈니스트리뷴  |
|----------------|---|
| <b>대상보도</b>    | 비즈트리뷴 2018년 2월 21일자 사회면 「‘조민기 성추행’ 폭로 송○○ “한 여학생 밀어 후배위 자세 취했다?” 충격, 강제 속옷 노출까지」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성적 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49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1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492호 | 시선뉴스       | 3월 4일  | 연예·스포츠 |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배 위에 올라타더니 한 말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495호 | 인사이트       | 2월 22일 | 엔터테인먼트 | 조민기 '성추행' 폭로 또 나왔다...“뒤에서 껴안으며 내 엉덩이에 성기 갖다대”                     | 인터넷신문 |
| 제2018-496호 | 인터넷 광남일보   | 3월 3일  | hot 클릭 | 조민기, “억지로 가슴 만지고 완전히 벗겨” 성희롱한 카툰녀에 이어 카페 알바생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498호 | 인터넷 무등일보   | 2월 25일 | 뉴스센터   | 조민기 성추행 폭로글, 여제자 충격 희롱 “성기를 제 엉덩이 뒤로...소름 끼쳐”                     | 인터넷신문 |
| 제2018-500호 | 인터넷 스페셜 경제 | 2월 21일 | 핫이슈    | 배우 송○○ “조민기, 내 배 위에 올라탔다”...캠퍼스 성추행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502호 | 인터넷 전기신문   | 2월 25일 | 전기문화   | 조민기 성추행 폭로글, 여제자 상대로 도 넘은 희롱 “성기를 제 엉덩이 뒤로...소름 끼쳐”               | 인터넷신문 |
| 제2018-505호 | 전자신문 인터넷   | 2월 21일 | 사회     | 배우 송○○ “조민기, 배 위에 올라타더니 ‘비싼거야’” 충격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507호 | 쿠키뉴스       | 2월 21일 | 사회     | [쿠키영상] 배우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내 배 위에 올라타더니 ‘이거 비싼 거야’”...‘딸도 있는 사람이’ | 인터넷신문 |
| 제2018-508호 | 툭테일리       | 2월 21일 | 문화     | 송○○ 폭로, “조민기, 후배위 자세 취하고”... 유명 배우 A씨도 성추행 정보지 돌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509호 | 한경닷컴       | 2월 21일 | 사회     | 송○○, 조민기 성추행 폭로 “배 위에 올라타더니...”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510호 | 한국정책신문     | 2월 21일 | 핫이슈    | 배우 송○○ “조민기, 내 배 위에 올라타더니 ‘비싼거야’”                                 | 인터넷신문 |

| 제2018-511호     | 주식회사 뉴스타운   |
|----------------|---|
| <b>대상보도</b>    | 뉴스타운 2018년 3월 3일자 사건/사고면 「남궁○ 성추행 사실무근, 남자친구와 사적 관계 추궁 “가슴 5초...3초만...싫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12호     | 주식회사 한국전기신문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전기신문 2018년 3월 3일자 사회면<br>「남궁○ 성추행 사실무근, 남친과 사적 관계 캐물었다 “가슴 5초…3초만…싫어?”」<br>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신체부위와 구체적인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513호     | 주식회사 뉴스1  |
|----------------|---|
| <b>대상보도</b>    | 뉴스1코리아 2018년 3월 25일자 포토면<br>「핑크돌핀호 승객들 ‘무사히 돌아왔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여객선 좌초 사고 구조 활동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p> <p>피구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14호     | 주식회사 한경닷컴   |
|----------------|---|
| <b>대상보도</b>    | 한경닷컴 2018년 3월 27일자 사회면<br>「'부산 데이트 폭력' 가해자, 체포 된 후에도...“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공주야”」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피해자의 일부 모습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노출하였다.</p> <p>피해자의 성명 및 일부 초상을 노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51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16호 | 노컷뉴스        | 3월 27일 | 사회    | [인터뷰] 부산데이트폭력 “체포되면서까지 ‘죽일거야’ 협박...끔찍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517호 | 디스패치뉴스      | 3월 27일 | Issue | “체포 순간까지 ‘죽일거야’ 협박”<br>(부산데이트폭력 피해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519호 | 위키트리        | 3월 27일 | 사건사고  |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흰옷으로<br>갈아입으라며 몸에 피가 덮일 정도로<br>때린다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520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3월 23일 | 사회 최신 | 이별 요구하는 여자친구 기절시키고 질질<br>끌고 간 남성성                     | 인터넷신문 |

| 제2018-515호 | 주식회사 케이엔에스통신  |
|------------|---|
| 대상보도       | KNS뉴스통신 2018년 3월 27일자 사회면<br>「부산 데이트 폭력 10대 검찰송치... 조사 때도 “다른남자 만나지 마” 압박문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하였다.<br>피해자의 성명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51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18호 | 스포츠한국 | 3월 27일 | 연예 |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A씨 “보복 두려워...처벌 강화 대책 필요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521호 | 한강타임즈 | 3월 28일 | 사회 |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경비원에게 살려달라고 했지만 모르는 척 했다”? ‘시선집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522호 | 주식회사 문화방송  |
|------------|--|
| 대상보도       | MBC-TV 2018년 3월 29일자 19:55 <뉴스데스크>프로그램<br>「[새로고침] ‘데이트 폭력’, 사랑 싸움 아닌 ‘범죄’」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방송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남성이 폭행당한 여성을 끌고 가는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게재하여 폭력 장면 및 속옷 차림의 피해여성을 필요이상으로 노출하였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52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23호 | SBS<br>CNBC-TV | 3월 29일 | 경제와이드<br>이슈& | [핫이슈키워드] 김정은 방중·정봉주·A형<br>구제역·부산 데이트폭력                 | 방송    |
| 제2018-524호 | SBS-TV         | 3월 27일 | 오뉴스          | [오!클릭] '부산 데이트 폭력' 영상<br>공개...감금·무차별 폭행                | 방송    |
| 제2018-525호 | 놀이미디어<br>오픈    | 3월 27일 | 정치사회         | "다른 사람들도..." 부산 데이트 폭력 피해자<br>고심 끝에 CCTV 원본 영상 공개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526호 | 인사이트           | 3월 23일 | 사건사고         | [단독] 사권지 3개월된 여친 옷 벗기고<br>엘리베이터에서 질질 끌고 내린 남성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527호 | 인터넷<br>충남일보    | 3월 27일 | 사회           | [영상] 부산 데이트폭력 피해자 폭행모습<br>공개에 누리꾼들 '분노 폭발'             | 인터넷신문 |

| 제2018-528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3월 9일자 경제면<br>「'음란 행위' 한인 신학교 교수 체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br>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br>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초상, 나이, 직업, 이력 등을<br>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br>위배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29호 | 주식회사 뉴시스   |
|------------|--|
| 대상보도       | 뉴시스 2018년 3월 25일자 사회면<br>「[종합] "약으로 날 죽이려 해" 부인 살해한 60대 영장」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   |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의 피의자 및 피해자의 자택 상세주소, 전경사진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를 공개하는 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를 위반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52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30호 | 동아닷컴  | 3월 25일 | 사회 | "날 먼저 죽이려 해" 청주서 부인 살해한 60대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18-531호 | 톱스타뉴스 | 3월 26일 | 사회 | [사건] "날 먼저 죽이려 해" 청주서 부인 살해한 60대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18-532호     | 주식회사 울산종합일보  |
|----------------|--|
| <b>대상보도</b>    | 울산종합일보 2018년 3월 16일자 방송/연예면 「최○, 현재 베트남 거주중...어디서 봤더라? 그녀가 출연했던 작품들 보니...」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나이, 학력, 직업, 배우자의 성명 등을 보도하였다.</p> <p>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53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33호 | 인터넷<br>경북신문          | 3월 16일 | 핫이슈 | 최○, 어디서 봤나 했더니...그가 출연했던<br>작품들 뭐길래?...현재 베트남 거주 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534호 | 인터넷<br>일간리더스<br>경제신문 | 3월 16일 | 라이프 | 최○, 어디서 본 듯 한데...그가 출연했던<br>작품들 보니...현재 베트남에서 거주   | 인터넷신문 |

| 제2018-535호 | 주식회사 매경닷컴  |
|------------|--|
| 대상보도       | 매경닷컴 2018년 3월 30일자 전체면<br>「개그맨 미투 피해자, 추가 폭로 “미성년자 사실 몰랐을 리 없어”(전문)」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36호 | 주식회사 엑스포츠미디어  |
|------------|---|
| 대상보도       | 엑스포츠뉴스 2018년 3월 30일자 국내연예면<br>「[전문] 개그맨 미투 2차 폭로...“성폭행 당시 미성년자, 몰랐을 리 없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p> <p>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37호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뉴스웍스 2018년 3월 7일자 연예·스포츠면 「'아이돌 미투'에 네티즌 “운동선수랑 사귀 가수?”vs“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p> <p>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53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38호 | 녹색경제신문  | 3월 7일 | 대중문화 | '아이돌 미투' 터졌다...“초등학생 시절 강제 키스, 누드사진 빌미 협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539호 | 뉴데일리    | 3월 9일 | 연예   | '아이돌 미투' 폭로글 파문..“중학교 때 나체사진 보내라” 협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540호 | 뉴스브라이트  | 3월 7일 | 연예문화 | '아이돌 미투' 폭로한 피해자, 두 가지 힌트? “‘출신 학교’까지 밝혔다” 누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541호 | 데일리그рид | 3월 7일 | 정보기술 | 아이돌 미투, 힌트는 두 가지? “피해자 가해자 ‘출신 학교’ 밝혔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42호 | 동아닷컴             | 3월 7일 | 연예      | [전문]'아이돌 미투' 등장... '귀 하고, 나체 사진 보내라 협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543호 | 마이데일리            | 3월 7일 | 연예      | 아이돌 저격한 미투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544호 | 매경닷컴             | 3월 7일 | 전체      | 아이돌 가수 A, 성추행 미투 폭로... '나체 사진 보내라 협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545호 | 포스트쉐어            | 표시없음  | 표시없음    | 하루 만에 삭제된, 현역 '아이돌 미투' 폭로글.TXT                      | 인터넷신문 |
| 제2018-546호 | 봉황망코리아           | 3월 7일 | 한국 인사이드 | [#미투운동] 아이돌 미투...과연 미투 운동 어디까지 번지려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547호 | 비즈트리뷴            | 3월 7일 | 연예      | '미투(Metoo)운동' 현역 아이돌까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돼 충격 '나체사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548호 | 시선뉴스             | 3월 7일 | 뉴스      | '아이돌 미투', 충격적 폭로글...가해자 실명 공개될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549호 | 이투데이             | 3월 7일 | 연예스포츠   | 개그맨 이어 아이돌 미투 등장, "결별설 뗀을 때 운동선수에게도 너의 변태적 성향을..."  | 인터넷신문 |
| 제2018-550호 | 인터넷 국제신문         | 3월 7일 | 문화      | [아이돌 미투 전문] 열애·결별설, "운동선수에게도 네 변태적 성향..." 누리꾼 의견 분분 | 인터넷신문 |
| 제2018-551호 | 인터넷 남도일보         | 3월 7일 | 뉴스      | 아이돌 미투, 신빙성 있나...피해자·가해자 모두 비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552호 | 인터넷 서울경제         | 3월 7일 | 사회      | 아이돌 미투 "연예인 된 모습 보고 오히려 안심됐다. 어찌할 수 없을거라 생각"        | 인터넷신문 |
| 제2018-553호 | 인터넷 스페셜 경제       | 3월 7일 | 연예      | '아이돌 미투'도...충격적인 폭로에 가해자 이름 밝혀질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554호 | 인터넷 스포츠서울        | 3월 7일 | 연예      | '미투 가해자 지목' 아이돌 가수 C 씨, 아직까지 침묵하는 이유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555호 |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 3월 7일 | 연예·스포츠  | 아이돌 미투, 데뷔 전 PC방 화장실서 성추행?... 나체 사진도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556호 | 인터넷 입법국정전문지 더 리더 | 3월 7일 | 더리더 POP | 아이돌 미투, 피해자도 가해자도 비공개...신빙성 있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557호 | 인터넷 한국스포츠경제      | 3월 6일 | 연예      | '아이돌 미투'까지 등장... "아직 나오지 않은 네 이름"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58호 | 톱스타뉴스    | 3월 7일 | 사회   | 아이돌계, '미투 운동' 확산되나...PC방서 성추행 당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559호 | 헤럴드POP   | 3월 7일 | 방송   | [POP이슈]"나체사진 요구·성추행" ..아이돌도 예외 NO, 번져가는 #미투      | 인터넷신문 |
| 제2018-560호 | e글로벌이코노믹 | 3월 7일 | 전체기사 | 아이돌 '미투' 시작되나, '운동선수 사권 가수' 가해자 지목               | 인터넷신문 |
| 제2018-561호 | e머니에스    | 3월 7일 | 연예   | '아이돌 미투' 충격적 폭로, 가해자 실명 공개될까... "운동선수와 결별한 아이돌?" | 인터넷신문 |

| 제2018-562호 | 주식회사 뉴스1  |  |  |  |  |
|------------|---|--|--|--|--|
| 대상보도       | 뉴스1코리아 2018년 3월 29일자 전국면 「"팬티안에 손 넣어"…前태권도협회 이사 성추행의혹 폭로」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성적 행위를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56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63호 | 디트news24  | 3월 29일 | 사회 | [속보] "팬티에 손넣었다"...전 태권도협회 이사 성추행의혹 재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564호 | 온라인 중앙일보  | 3월 29일 | 사회 | "팬티 안에 손 넣고 가슴만저" 前 태권도협회 간부 성추행 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18-565호 | 인터넷 일간스포츠 | 3월 29일 | 사회 | "팬티 안에 손 넣고 가슴만저" 前 태권도협회 간부 성추행 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18-566호 | 주식회사 뉴스타운   |
|------------|---|
| 대상보도       | 뉴스타운 2018년 3월 30일자 사회면<br>「개그맨 미투, 性관계 도중 혈흔 묻었는데도 태연하게 웃으며…“너 생리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특정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67호 | 주식회사 제민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제민일보 2018년 3월 30일자 연예면<br>「개그맨 미투(#METOO), “생리하냐고 묻더라”…性관계 중 혈흔 묻자 태연하게 웃으며 건넌 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68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
| 대상보도       | 동아일보 2018년 3월 29일자 14면<br>「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중 아내 ○○○ 살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묘사)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살해 수법에 대해 치사량 등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56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69호 | 동아닷컴     | 3월 29일 | 사회    |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중 아내 ○○○ 살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570호 | 조선일보     | 4월 7일  | 기획    | 보험 노리고 19세 아내 '○○○ 살해'... 완전범죄였어도 보험금은 0원 | 중앙일간지 |
| 제2018-571호 | 조선닷컴     | 3월 28일 | 사건·사고 | '보험금 노리고' 신혼여행지서 부인 '○○○ 살해' 한 20대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572호 | 대전 인터넷신문 | 3월 29일 | 뉴스종합  | 보험금 노리고 신혼 여행중 ○○○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편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18-573호 | 인터넷 한국일보 | 3월 28일 | 사회    | 또 ○○○ 살인... 이번엔 10대 신부 보험금 노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574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
|----------------|--|
| <b>대상보도</b>    | 조선닷컴 2018년 3월 19일자 사건·사고면 「[일가족투신사건해부]중산층 가족의 비극, 막을 수는 없었을까」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 경위를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묘사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75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
|------------|---|
| 대상보도       | 나우뉴스 2018년 3월 20일자 국제면<br>「스토커 16세 소녀, 짝사랑하던 17세 소년에 염산테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화상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76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3월 20일자 핫이슈면<br>「여사친 고백 거절했다고 ‘염산 테러’당해 피부 녹아내린 10대 소년」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염산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화상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577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3월 25일자 시면<br>「시베리아에서 발견된 54개의 ‘사람 손목’, 대체 무슨 일이? (영상)」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시베리아에서 다수의 절단된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장을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78호     |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대구신문 2018년 3월 9일자 16면 보건/의료<br>「눈 종합병원 ‘○○안과’ ○○동에 새동지」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지역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579호     | 일간대구신문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대구신문 2018년 3월 8일자 사회면<br>「눈 종합병원 ‘○○안과’ ○○동에 새동지」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p> |

|  |  |
|--|--|
|  | <p>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80호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
|------------|---|
| 대상 보도      | 매일신문 2018년 3월 28일자 특집 17면<br>「원예·음악·치유명상 치료...중국과 의료 협력도」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581호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매일신문 2018년 3월 28일자 경제면<br>「원예·음악·치유명상 치료...중국과 의료 협력도」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p> |

|  |  |
|--|--|
|  | <p>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82호 |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
|------------|---|
| 대상 보도      | 디트news24 2018년 3월 6일자 기사면<br>「세종시 ○○동에 세종○○의원 5일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583호 | 엠디 데일리   |
|------------|--|
| 대상 보도      | 엠디 데일리 2018년 3월 29일자 병원&의원면<br>「○○○피부과, '○○○ ○○○피부과'로 병원명 변경 및 이전」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p> |

|  |  |
|--|--|
|  | <p>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584호 | 주식회사 전업농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전업농신문 2018년 3월 28일자 건강면<br>「○○○피부과, '○○○ ○○○피부과'로 병원명 변경 및 이전」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585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3월 23일자 사회면<br>「인천 ○○동 ○○○○○의원 그랜드 오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p> |

|  |  |
|--|--|
|  |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586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
|----------------|--|
| <b>대상보도</b>    | 경향신문 2018년 4월 21일자 4면<br>「김경수 의원 “홍보” 문자… 선פל 부탁이나, 댓글조작 의뢰냐」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58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88호 | 서울신문        | 4월 21일 | 5면    | 매크로 전달 의혹 '서유기' 구속                    | 중앙일간지 |
| 제2018-589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4월 20일 | 법원·검찰 | [민주당원 댓글 조작] 매크로 전달 의혹<br>'서유기'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590호 | 조선일보        | 4월 21일 | 4면    |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 중앙일간지 |
| 제2018-591호 | 조선닷컴        | 4월 21일 | 사회    | 드루킹 공범 '서유기'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592호 | 한겨레         | 4월 21일 | 6면    | 매크로 구입해 준 '서유기'                       | 중앙일간지 |
| 제2018-594호 | 뉴스스         | 4월 20일 | 사회    | 댓글 조작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드루킹에<br>매크로 전달 | 뉴스통신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96호 | 민중의소리        | 4월 21일 | 사회 | '드루킹 여론 조작' 공범 '서유기'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597호 | 세계닷컴         | 4월 20일 | 사회 | [이슈+] 드루킹·서유기, 과거엔 '댓글조작' 고강도 비판         | 인터넷신문 |
| 제2018-599호 | 온라인<br>중앙일보  | 4월 20일 | 사회 | 댓글 조작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드루킹에 매크로 전달       | 인터넷신문 |
| 제2018-600호 | 인터넷<br>경향신문  | 4월 20일 | 사회 | [속보]'드루킹' 공범 '서유기' 박모씨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603호 | 인터넷<br>일간스포츠 | 4월 20일 | 사회 | 댓글 조작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드루킹에 매크로 전달       | 인터넷신문 |
| 제2018-604호 | 일요서울i        | 4월 21일 | 사회 | '드루킹' 핵심 공범 '서유기' 구속...매크로 전달 및 댓글 조작 혐의 | 인터넷신문 |

| 제2018-587호     | 국민일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국민일보 2018년 4월 21일 5면<br>「“○○○ 자금 총괄책은 '서유기' 아닌 '파로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을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58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593호 | 한국일보         | 4월 21일 | 4면 | 모습 드러낸 서유기                           | 중앙일간지 |
| 제2018-595호 | 뉴스천지         | 4월 20일 | 사회 | 드루킹 공범 서유기, 영장심사 출석                  | 인터넷신문 |
| 제2018-598호 | 오마이뉴스        | 4월 20일 | 사회 | “정치인 지시 받았는가?” 목록부담 ‘서유기’            | 인터넷신문 |
| 제2018-601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4월 20일 | 시사 | [포토]영장실질심사 참석하는 ‘서유기’                | 인터넷신문 |
| 제2018-602호 | 인터넷<br>뉴스토마토 | 4월 20일 | 사회 | 드루킹 공범 ‘서유기’ 박모씨 구속...법원<br>“필요성 인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605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
|----------------|---|
| <b>대상보도</b>    | 조선닷컴 2018년 5월 5일 사회면<br>「김경수 “드루킹 7~8회 만났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과 나이 및 이력을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06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일보 2018년 5월 1일 8면<br>「김경수 前보좌관<한○○>,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드루킹, 형량 낮은 댓글조작 혐의는 인정」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과 나이를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07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18년 5월 1일 정치면<br>「김경수 前보좌관, 피의자 신분 경찰 출석... 드루킹, 형량 낮은 댓글조작 혐의는 인정」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고 성명과 나이를 게재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 및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08호 |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
|------------|--|
| 대상보도       | 민중의소리 2018년 4월 30일자 사회면<br>「‘댓글 여론 조작’ 김경수 전 보좌관 경찰 출석[포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09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경향신문 2018년 4월 30일자 사회면<br>「[경향이 짙은 오늘]4월30일 ‘그날도 오고 있겠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0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18년 5월 5일자 사회면<br>「김경수 귀가 “충분히 소명...경남 가겠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및 이력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1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일보 2018년 5월 3일자 12면<br>「경찰, 내일 ‘드루킹 관련 김경수 소환’」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2호 |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18년 5월 3일자 법원·검찰·경찰면 「경찰, 내일 ‘드루킹 관련 김경수 소환’」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신원을 공개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3호 | 주식회사 스포츠동아   |
|------------|--|
| 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8년 5월 5일자 뉴스면 「○○○ 태권도 대표팀 코치 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4호 | 주식회사 국제뉴스   |
|------------|---|
| 대상보도       | 국제뉴스 2018년 5월 8일자 사회면<br>「홍대 누드크로키 경찰 조사, 2차 폭력 “이런 성기 가지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는 조롱성 댓글을 그대로 게재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1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15호 | 교통신문     | 5월 9일  | 전국 | 워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2.9까면서 덜렁덜렁거리냐”..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18-616호 | 인터넷 국제신문 | 5월 10일 | 사회 | ‘워마드’ 홍대 누드크로키 논란 불구… “네 성기가 작아서 그런 것”          | 인터넷신문 |

| 제2018-617호 |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
| 대상보도       |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5월 8일자 사회면<br>「워마드에 ‘홍대 남성 누드모델’ 비하 그림 또 게시…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하는 조롱성 그림을 게재한 게시글 및 그에 달린 댓글을 여과 없이 공개하여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

|  |  |
|--|--|
|  |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618호 | 주식회사 제주일보방송  |
|------------|--|
| 대상보도       | 인터넷 제주일보 2018년 4월 23일자 뉴스면<br>「○○○ 초단, 여기는 어디? 비키니 차림으로 여러 사람과 동시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수영복 차림의 바둑 두는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한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19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4월 26일자 핫이슈면<br>「중1·중3 자매 1년 동안 성희롱한 중학교 음악 강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재구성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0호 | OM뉴스(옴부즈맨뉴스)   |
|------------|--|
| 대상보도       | OM뉴스(옴부즈맨뉴스) 2018년 4월 12일자 뉴스면<br>「수면제 먹여 어린 조카 성폭행·상습추행..징역 7년 선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진을 게재하여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1호 | 주식회사 중앙일보  |
|------------|--|
| 대상보도       | 온라인 중앙일보 2018년 4월 17일자 사회면<br>「검찰, 신혼여행서 아내 ‘○○○ 살해’ 20대 남편 구속기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살해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2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4월 17일자 사회면<br>「검찰, 신혼여행서 아내 ‘○○○ 살해’ 20대 남편 구속기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위 기사는 ○○○을 주사기로 주입하는 살해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623호     | 아시아투데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아시아투데이닷컴 2018년 4월 15일자 사회면<br>「“성적 학대와 조롱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처벌 청원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록 허위로 밝혀지긴 했지만 게시글에 게재된 피해 미성년자로 추정될 수 있는 선정적 사진을 노출하고, 게시글 및 그에 달린 댓글의 성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주소를 공개하는 등 불필요한 정보를 과도하게 제공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4호     | 주식회사 아시아타임즈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2018년 4월 15일자 뉴스면<br>「7살 난 딸아이 성폭행한 아빠에 분노 폭발...경찰은 “경위 파악중”」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처벌 청원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보도하면서 비록 허위로 밝혀지긴 했지만 게시글에 게재된 피해 미성년자로 추정될 수 있는 선정적 사진을 노출하고, 게시글의 성적인 표현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5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 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4월 4일자 Women면<br>「말도 안되는 ‘끔찍한 성인식’을 아직도 치르는 부족 TOP3(사진주의)」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 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외국 부족의 성인식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성인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6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대상 보도      | 위키템리 2018년 4월 18일자 사건사고면<br>「햄스터 학대 영상’에 분노한 시민들...동물학대 방지 청와대 청원 올라가 (영상+사건개요)」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 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햄스터를 학대하는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7호 | 주식회사 중부일보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중부일보 2018년 4월 27일자 사회면<br>「[영상] ‘1명 사망’ 광주 ○○동 무단횡단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 왕복 9차선 도로서…」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교통사고 장면 및 피해자의 피해상태가 포함된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8호     | 주식회사 코리아메디케어   |
|----------------|--|
| <b>대상보도</b>    | 코메디닷컴 2018년 5월 3일자 뉴스면<br>「광주 폭행 피해자 실명 위기, 회복 가능할까?」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세히 묘사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29호     | 주식회사 투데이코리아  |
|----------------|--|
| <b>대상보도</b>    | 투데이코리아뉴스 2018년 5월 3일자 사회면<br>「광주 폭행, 더 이상 솜방이 처벌은 안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상세히 묘사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0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부산일보 2018년 4월 10일자 25면<br>「○○산 맑은 공기… 최첨단 의료기기로 암 재활 치료」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1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부산닷컴 2018년 4월 9일자 사회면<br>「[○○○요양병원] ○○산 맑은 공기… 최첨단 의료기기로 암 재활 치료」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2호 | 엠디포스트  |
|------------|--|
| 대상보도       | 엠디포스트 2018년 4월 10일 인터뷰면<br>「건강한 삶을 위한 안내자,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3호 | 엠디포스트  |
|------------|--|
| 대상보도       | 엠디포스트 2018년 4월 10일 인터뷰면<br>「희망을 주는 자연치유, ‘○○○○한방병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4호 | 주식회사 브릿지경제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브릿지경제신문 2018년 4월 6일 헬스플러스면<br>「○○○○, 분당 ○○에 11번째 지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5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4월 6일 사회면<br>「인천 ○○동 ○○○○○○○○○ 건강검진센터 오픈」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6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4월 6일 라이프면<br>「추나...동작침...척추질환 수술않고 고쳐요」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7호 | 월간암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월간암 2018년 4월 20일 뉴스면<br>「얇으로 암을 치료한다 - 김○○ ○○○병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8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주간동아 2018년 3월 27일 건강&과학면<br>「여성의 상징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연락처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39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5월 2일자 A1면<br>「[단독] “저는 구원받았습니다”…박진영, ‘○○○’ 전도 포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종교 활동에 관해 보도하면서 위법한 취재수단을 사용하여 획득한 사진, 영상 및 녹취 음성을 공개하였다.<br>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에 해당하고 그의 종교 활동을 둘러싼 공적 관심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공간에서 행해진 종교 모임에서 발언하는 모습 및 발언 내용을 몰래 촬영·녹음하여 동의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적 공간 내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40호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5월 30일 뉴스면<br>「○○○, 어린 아들 두고 왜 그런 선택을...○○○·○○○○·○○○ 투약」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성명, 초상을 공개하였다.<br>개인의 성명 및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41호 | 주식회사 에스에스미디어판  |
|------------|--|
| 대상보도       | 뉴스인사이드 2018년 5월 23일 사회면<br>「박○○ 부인, 연예인 뺨치는 미모 보니?...“요리 솜씨가 상당히 좋아서 행복하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프로 야구선수의 성폭력 혐의를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의 아내의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결혼사진, 학부 전공, 교제기간, 결혼연도 등의 이력을 함께 공개하였다.<br>개인의 성명 및 이력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42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부산닷컴 2018년 5월 23일 사회면<br>「박○○, 아내 법학과 범죄학 전공한 재원…지난 2016년 결혼」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프로 야구선수의 성폭력 혐의를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 아내의 학부 전공, 교제기간, 결혼연도 등의 이력을 공개하였다.<br>개인의 이력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43호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5월 23일 스포츠·연예면<br>「박○○ 아내, 법학·범죄학 전공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프로 야구선수의 성폭력 혐의를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의자 아내의 학부 전공, 교제기간, 결혼연도 등의 이력을 공개하였다.<br>개인의 이력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44호 |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 2018년 5월 18일 뉴스면<br>「SNS서 논란된 성관계 요구하고 낙태시킨 교사 직위해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 근무처, 직업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645호</b> | <b>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5월 9일 사회면<br>「텍사스 한인교수 부부 참극…남편이 아내 살해하고 자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또는 제보자,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증인 등에 대해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 당사자의 초상, 성명, 나이, 직업, 근무처, 이력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 미수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646호</b> | <b>국민일보 주식회사</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5월 18일 시사면<br>「미성년 피팅모델도 “음란사진 촬영 강요당했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

|             |  |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초상, 성명,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피해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64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85호 | 뉴스인사이드    | 5월 18일 | 사회      | 유○○,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카톡 메시지보니? “속옷 벗으라고 요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686호 | 뉴스프리존     | 5월 18일 | 방송/연예   | 유○○, 얼마나 불안했을까 입에 담기 힘든 발언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687호 | 데일그리드     | 5월 18일 | 방송통신    | 양예원·이○○ 이어 유○○, “의문의 붉은조명 스튜디오…○○에 이런곳 많아”            | 인터넷신문 |
| 제2018-688호 | 비즈엔터      | 5월 18일 | 어라운드    | 유○○, 양예원-이○○ 이어 성추행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689호 | 세계닷컴      | 5월 18일 | 사회      | 이번엔 미성년자까지…‘양예원’ 이어 유○○도 “○○ 스튜디오에서 성추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691호 | 여원뉴스      | 5월 18일 | #Me Too | 18세 어린모델 유○○..싫다는데 벗겨진체 촬영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692호 | 울산종합일보    | 5월 18일 | 뉴스      | 유○○, 대체 왜 이러나? 글로 적기에도 부적절한 수준…열여덟 살 소녀의 폭로 ‘파문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18-693호 | 이코노미 특뉴스  | 5월 18일 | 라이프     | 유○○, 입에 담기 힘든 발언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얼마나 불안했을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695호 | 인터넷 대전투데이 | 5월 18일 | 방송/연예   | 유○○, 대체 왜들 이러나? 글로 적기에도 부적절한 수위…열여덟 살 소녀의 폭로가 몰고 온 파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696호 | 인터넷 스포츠서울 | 5월 19일 | 연예      | 미성년자 피팅모델 유○○, 스튜디오 실장과 나는 카톡 공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00호 | 인터넷<br>제주일보 | 5월 18일 | 방송/연예        | 유○○.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입에 담기 힘든 발언 얼마나 불안했을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702호 | 푸드경제TV      | 5월 18일 | 핫이슈          | 유○○, 거부하면 달랜 후 다시 붙잡아 얼마나 불안했을까 입에 담기 힘든 발언 '꼼짝'      | 인터넷신문 |
| 제2018-703호 | 환경닷컴        | 5월 18일 | 사회           | "몸이 작아서 남자들이..." 피팅모델 유○○ 성범죄 피해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04호 | e-경상일보      | 5월 22일 | 방송/연예<br>/이슈 | 스튜디오 성추행 유○○, 언더웨어 벗어달라는 요구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 고백 불만에 떨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647호 | 주식회사 오에스이엔  |
|------------|---|
| 대상보도       | 오에스이엔(OSEN) 2018년 5월 26일 연예면<br>「[Oh!센 이슈] "수지x유○○이 무슨 죄?"..양예원 사태, 선의의 피해자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피해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48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세계닷컴 2018년 5월 28일 사회면<br>「배우지망생 이○○ 사진 유출자 2명 체포...사진 판매, 교환 시인」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4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06호 | 연합뉴스          | 5월 20일 | 최신기사  | '유명 유튜버 성추행' 2명<br>출국금지·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 인터넷신문 |
| 제2018-707호 | 법률방송뉴스        | 5월 21일 | 법과 세상 | 양예원·이○○ 성추행 혐의자 2명,<br>피고소인으로 내일 경찰 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708호 | 비즈엔터          | 5월 17일 | 어라운드  | 이○○, 유튜버 양예원과 함께 집단 성추행<br>고발   | 인터넷신문 |
| 제2018-709호 | 이투데이          | 5월 17일 | 연예스포츠 | 양예원·이○○ 사건으로 드러난 '피팅모델<br>피해'... 여중생까지 꼬드겨 누드사진·성폭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710호 | 인터넷<br>금강일보   | 5월 21일 | 문화    | 양예원 이○○ "저는 성범죄<br>피해자"...미성년자 모델 유○○ 주장 뒷받쳐  | 인터넷신문 |
| 제2018-711호 | 인터넷<br>한국농업신문 | 5월 17일 | 핫이슈   | '논란' 성적인 도구로 대상화한 가해자,<br>"소라넷 폐쇄 이후 독버섯처럼 증가해"...충격<br>발언 의미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712호 | 푸드경제TV        | 5월 17일 | 핫이슈   | 양예원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지"<br>"피해자가 단 둘 뿐이겠나 싶다" "왜 그 당시<br>신고 못했는지 충분히 이해간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13호 | BBS NEWS      | 5월 20일 | 사회    | 경찰, 유명 유튜버 성추행 가해자 수사 본격화   | 인터넷신문 |
| 제2018-714호 | e-울산매일<br>신문  | 5월 17일 | 방송/연예 | 양예원 이○○ 경찰 칼 뽑아들었다 "소문만<br>돌았었는데 실제 있었다니" "몇 년전 일이니<br>당한 사람 엄청 많을 듯" "수법이 한두 번<br>해본게 아니네" | 인터넷신문 |

| 제2018-649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텨리 2018년 5월 17일 사건사고면<br>「경찰, 유튜버 '성추행·노출 사진 유포' 관련 인물 수사한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전체 영상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4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15호 | 비주얼다이브       | 5월 17일 | 사회  | 유튜버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모델 알바→성추행 강제 촬영”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16호 | 스타데일리 뉴스     | 5월 17일 | 피플  | [풀영상] 유튜버 양예원, 성추행 피해 사실 고백 “용기 내서 말해보려 한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17호 | 온라인 중앙일보     | 5월 17일 | 문화  | 유튜버 양예원 “실장에 속아 속옷 촬영...사진 아동 사이트에 퍼져” 성범죄 피해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18호 | 인터넷 국민일보     | 5월 17일 | 시사  | ‘페북스타’ 양예원, 성추행 피해 고백 “남성 20여명이...”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719호 |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 5월 17일 | 사회  | 브릿지영상] 유튜버 양예원, 성범죄 피해 사실 눈물 고백 “나 같은 피해자 다시는 없길” | 인터넷신문 |
| 제2018-720호 | 인터넷 서울신문     | 5월 17일 | 라이프 |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유명 유튜버의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21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5월 17일 | 라이프 | [SNS는 지금] 유튜버 양예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눈물 호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722호 | 인터넷 스포츠서울    | 5월 17일 | 연예  | [SS이슈]유튜버 양예원, 추가 피해 막기 위해 고백한 성범죄 피해 사실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23호 | 인터넷<br>아주경제   | 5월 17일 | 사회  | [영상] 양예원 "3년전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해 강제 촬영" 눈물의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24호 | 인터넷<br>한국일보   | 5월 17일 | 사회  | "피팅모델 촬영인줄..." 성추행 당한 피해자들                        | 인터넷신문 |
| 제2018-725호 | 환경닷컴          | 5월 17일 | 사회  | (영상) 양예원 "피팅모델 사진 촬영이라더니" 음란촬영에 성추행 ... 청와대 국민청원도 | 인터넷신문 |
| 제2018-726호 | 허핑턴포스트<br>코리아 | 5월 17일 | 보이스 | 유튜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영상을 올렸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650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  |
|------------|--|--|--|--|--|
| 대상보도       | 세계닷컴 2018년 5월 17일 연예면<br>「"남자 20명이 둘러쌌다" 유명 유튜버의 충격적인 성폭력 피해 고백」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65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51호 | 헤럴드POP      | 5월 17일 | 방송    | [POP이슈]"모델알바→성추행→유출"<br>양예원X이○○, 성범죄 피해고백(입장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652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5월 18일 | 사건·사고 | 18세 모델도 스튜디오 성추행 폭로... "속옷 벗어줄래?"               | 인터넷신문 |
| 제2018-653호 | 뉴스천지        | 5월 17일 | 연예    |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에 이○○도 "같은 피해자"...그는 누구? 배우지망생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29호 | 뉴스엔          | 5월 17일 | 연예    |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30호 | 뉴스프리존        | 5월 17일 | 사회    | 페이스북으로 평범한 배우를 꾸민 온 여성, 3년전 미투 고발                        | 인터넷신문 |
| 제2018-731호 | 브레이크뉴스       | 5월 17일 | 연예    | [전문] 유튜버 양예원, 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732호 | 스타한국         | 5월 17일 | 연예일반  |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유튜버 양예원, 강제 누드 촬영 성폭력 피해 고백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33호 | 엑스포츠뉴스       | 5월 17일 | 국내연예  | [전문] 유튜버 양예원 "20명 남성 앞 성추행 당해, 죽고 싶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34호 | 이투데이         | 5월 17일 | 연예    | 성범죄 피해 고백' 양예원은 누구?...'커플 몰래카메라' ○○○○ 운영 중인 유명 유튜버       | 인터넷신문 |
| 제2018-735호 | 인터넷 국제신문     | 5월 17일 | 사회    | [전문] 양예원의 미투... "성추행 스튜디오 촬영... '성폭행만 피하자' 생각"           | 인터넷신문 |
| 제2018-736호 | 인터넷 서울경제     | 5월 17일 | TV·방송 | [호소문 전문]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737호 | 인터넷 선데이뉴스 신문 | 5월 17일 | 연예스포츠 | '○○○○' 유튜버 양예원 미투...성범죄 피해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38호 | 인터넷 스포츠동아    | 5월 18일 | 연예    | [DA:이슈] 수지가 싸아올린 작은공 희망될까...양예원 호소 지지(종합)                | 인터넷신문 |
| 제2018-739호 | 인터넷 시장경제신문   | 5월 17일 | 라이프   |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죽고 싶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740호 | 컨슈머타임스       | 5월 17일 | 연예·문화 | 양예원 성범죄 피해 고백, 비공개 누드출사 '쉬쉬하던게 수면위로' 충격행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41호 | 톱스타뉴스        | 5월 24일 | 사회    | [고발전문] 양예원 스튜디오 '노출사진' 유출한 '유포자' 20대 긴급체포... "재유포한 것" 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742호 | 브레이크뉴스       | 5월 18일 | 연예    | 유○○, 양예원·이○○ 이어 피팅모델 성추행 폭로.. "그때도 지금도 미성년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743호 | 엑스포츠뉴스       | 5월 18일 | 국내연예  | [전문] "노출 강요"...양예원·이○○ 이어 18세 모델 유○○도 피해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44호 | 인사이트         | 5월 18일 | 핫이슈   | 양예원 이어 '18살' 미성년자 모델 유○○도 "성추행 당했다"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47호 | 뉴스엔          | 5월 17일 | 연예    | 이○○, 양예원 이어 미투 고백 "더이상 혼자 앓을수 없어"(전문)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48호 | 매경닷컴          | 5월 17일 | 스타투데이<br>뉴스 | '양예원 지인' 배우 지망생 이○○도 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 "같은 피해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749호 | 브레이크뉴스        | 5월 17일 | 연예          | 이○○, 양예원 이어 성범죄 피해 고백 "갈수록 노출 수위 심해져"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750호 | 비스트리뷴         | 5월 17일 | 오피니언        | 양예원에 이어 이○○, SNS에 피팅모델 성범죄 실체 알려 충격... '언급된 누드 카페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18-751호 | 스포츠한국         | 5월 17일 | 연예          | 양예원 지인 이○○, 성추행 폭로 "문 쇠사슬로 잠그고 노출 의상 강요"[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52호 | 엑스포츠뉴스        | 5월 17일 | 국내연예        | [전문] 양예원 이어 배우지망생 이○○도... "성범죄 피해자들, 숨지 말길"           | 인터넷신문 |
| 제2018-753호 | 위키트리          | 5월 17일 | 사건사고        | 양예원 이어 같은 성범죄 피해 당했다 고백한 배우 지망생                       | 인터넷신문 |
| 제2018-754호 | 인사이트          | 5월 17일 | 핫이슈         | 양예원 이어 '피팅모델' 이○○도 '집단 성추행'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55호 | 인터넷<br>국제신문   | 5월 18일 | 사회          | [전문]이○○ '양예원과 똑같은 성범죄 피해 고백'... "티팬티 강요...신체 수차례 만져"  | 인터넷신문 |
| 제2018-756호 | 인터넷<br>매일신문   | 5월 17일 | 키워드뉴스       | 이○○이 언급한 누드 카페는 무엇? "닉네임만으로 이름 부리는 비밀스런 카페"           | 인터넷신문 |
| 제2018-757호 | 인터넷<br>서울경제   | 5월 17일 | TV·방송       | 양예원 이어 이○○, 피팅모델 성범죄 고발 "집단 성추행 벌어지지만..올 누드만 각서 가능"   | 인터넷신문 |
| 제2018-758호 | 인터넷<br>스포츠서울  | 5월 17일 | 연예          | 양예원 이어 이○○도 피팅모델 성범죄 피해 사실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759호 | 인터넷<br>이뉴스투데이 | 5월 17일 | 정치·사회       | 이○○ "양예원과 똑같이 당해"... 피팅모델 성범죄 고발                      | 인터넷신문 |
| 제2018-760호 | 제니스글로벌<br>뉴스  | 5월 17일 | #미투         | [#미투] 이○○, 양예원 이어 피팅모델 성범죄 고발(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61호 | 티비리포트         | 5월 18일 | 엔터          | 이○○ "팬티도 입지 말라며...감금 촬영, 협박" 성추행 폭로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762호 | MTN(엠티엔)      | 5월 17일 | 연예          | 양예원 이어 이○○까지, 모델 촬영 성추행 피해 주장 "지우고 싶은 기억"             | 인터넷신문 |

| 제2018-654호 | 주식회사 에너지경제신문사   |
|------------|---|
| 대상보고       |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8년 5월 27일자 사회면<br>「양예원 카톡 파문, 절박한 심경 고백 “가슴 양쪽 모으면서 셔터 눌러…” 치욕」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성적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5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55호 | 인터넷 한라일보   | 5월 27일 | 이슈키워드  | 양예원 카톡 터트린 스튜디오 실장, “성기에 손가락도…” 10전에도 성추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656호 | 인터넷 농업인신문  | 5월 17일 | 라이프핫이슈 | 이○○ 양예원 “감금 후 티팬티 입고 포즈 강요…웃으며 템포 (생리대) 넣어주겠다고도”                   | 인터넷신문 |
| 제2018-657호 | 쿠키뉴스       | 5월 17일 | 영상     | [쿠키영상] 이○○, 양예원과 똑같은 성추행 폭로 “템포(생리대) 직접 해주겠다는 말까지”… ‘비슷한 피해자 많을 듯’ | 인터넷신문 |
| 제2018-764호 | 국제뉴스       | 5월 17일 | 연예     | 양예원, 대중들에 어쩌다 SOS “촬영 중 성기 만지기도”                                   | 뉴스통신  |
| 제2018-765호 | 인터넷 서울경제   | 5월 17일 | TV·방송  | ‘○○○○’ 양예원 성추행 폭로 “성기가 보이는 포르노용 속옷 착용 강요” 가슴 만지고 사진 유출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766호 | 조세금융신문     | 5월 27일 | 종합뉴스   | 양예원 카톡, 힘겨운 심경 고백 “가슴 양쪽 모으면서 셔터 눌러…” 악몽                           | 인터넷신문 |
| 제2018-767호 | 인터넷 서울경제   | 5월 17일 | TV·방송  | 양예원 이어 이○○도 성추행 고백 “템포(생리대) 직접 해주겠다는 말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768호 | 인터넷 울산제일일보 | 5월 17일 | 방송/연예  | 이○○·양예원 “감금 후 티팬티 입혀 누드 촬영, 생리 핑계 대니 ‘템포 넣어주겠다’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658호 | 주식회사 펜그리고자유대표   |
|------------|---|
| 대상보도       | 인터넷 사건의내막 2018년 5월 16일 사회의 진실면<br>「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br>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 권고사항       |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br>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br>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br>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59호 | 자주시보  |
|------------|---|
| 대상보도       | 자주시보 2018년 5월 16일 논평 수필면<br>「박근혜 정권의 특대형 국가범죄 ‘북 해외식당 여성종업원 납치사건’ 진실을 밝혀라」<br>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 권고사항       | 언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br>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북한 이탈 여종업원의 초상과 성명을 공개하여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br>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br>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60호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
|------------|--|
| 대상보도       | 노컷뉴스 2018년 5월 8일 사건/사고면<br>「“유영철보다 더한 사이코” 데이트 폭력 폭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가학적인 폭력 장면 및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고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6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61호 | 뉴스인사이드     | 5월 9일 | 사회   | 광주 데이트폭력, 헤어지자고 하니 살해협박까지...“평생 너는 내 장난감”       | 인터넷신문 |
| 제2018-662호 | 동아닷컴       | 5월 9일 | 사회   | 광주 데이트폭력 “넌 내 장난감, 그냥 죽으면 재미 없어” 보온병으로 머리 가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663호 | 매경닷컴       | 5월 9일 | 사회   | “숨 못 쉴 때까지 때렸다”...광주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전 남자친구 고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664호 | 베리타스       | 5월 8일 | 사회   | 광주 데이트 폭력...피떡 돼 입원했는데 찾아와 폭력 행사                | 인터넷신문 |
| 제2018-665호 | 부산닷컴       | 5월 9일 | 사회   | ‘광주 데이트폭력’ 피해자, 경찰 고소로 조사 착수...“숨 안 쉬어질 때까지 때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666호 | 싱글리스트      | 5월 9일 | 소셜   | ‘광주 데이트폭력’ 경찰 수사 시작...피해자 “1년간 지속적으로 폭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667호 | 여원뉴스       | 5월 8일 | 못참겠다 | 데이트 폭력으로 죽기 일보직전 여성이 폭행 남친 고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668호 | 이투데이       | 5월 8일 | 사회   | 광주 데이트 폭력 피해여성 “그냥 죽으면 재미없지”라며 보온병 집어들고 마구 때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669호 | 인터넷 비주얼다이브 | 5월 9일 | 사회   | “성관계 거절하자 무기로 때려”...광주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 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670호 | 인터넷 영남일보   | 5월 9일 | 사회   | 광주 데이트 폭력 피해자, 자살까지 언급하게 만든 끔찍한 가해자의 횡포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671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5월 9일 | 사회   | 광주서 무자비한 데이트폭력...“입원 중에도 피떡되도록 또 때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672호 | 조선닷컴       | 5월 8일 | 사건사고 | 남친에게 “숨 안 쉬어질 정도로 맞아” 광주 ‘데이트폭력’ 수사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73호 | 조세일보  | 5월 9일 | 정치사회 | 광주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 “이 더러운 괴물을 공유해달라”…뵈고 피명 든 모습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674호 | 한경닷컴  | 5월 9일 | 사건사고 | 광주 데이트폭력…“네가 그냥 죽으면 재미 없다”면서…무차별 폭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675호 | e머니에스 | 5월 8일 | 사회   | 광주 데이트폭력, 경찰 수사 착수… SNS 폭로 내용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676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5월 22일자 ALL면<br>「“초콜릿 맛 난다”… 웃으면서 ‘살아 있는 뱀’ 먹게 한 목사」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목사가 신도에게 살아 있는 뱀을 먹게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관련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677호 | 국민일보 주식회사   |  |  |  |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5월 15일자 시사면<br>「강도에게 저항하다 얼굴에 칼 꽂힌 10대 소녀」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청소년이 강도에 저항하다가 안면에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를 촬영한 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678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 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5월 24일자 ALL면<br>「“악마같은 인간이 새끼 고양이 불태워 죽이려 했어요”」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 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고양이가 불태워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7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79호 | 인터넷 국민일보  | 5월 24일 | 시사  | 새끼말개 탄 채 구조된 새끼 길고양이… “한쪽 귀 청각 상실” 참혹 | 인터넷신문 |
| 제2018-680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5월 23일 | 라이프 | 불에 탄 새끼 고양이 구조…동물 학대 논란               | 인터넷신문 |

| 제2018-681호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
|------------|---|
| 대상 보도      | 전북도민일보 2018년 5월 25일 08면<br>「익산 ○○○○ 치과 심미 안전치료 호평」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82호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면<br>「익산 ○○○○ 치과 심미(心美) 안정치료 호평」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83호 | 스마트마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뉴스워커 2018년 5월 21일 소비자·금융·헬스면<br>「비수술적 치료 중심 ○○통증의학과 송파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84호 | 엠디포스트  |
|------------|--|
| 대상 보도      | 엠디포스트 2018년 5월 2일 병의원면<br>「암 환자를 위한 통합의학의 명가,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690호 | 주식회사 더스포츠투데이  |
|------------|---|
| 대상 보도      | 스포츠투데이M 2018년 5월 18일 연예면<br>「유○○, 피팅모델 미투 “미성년자 였는데 성추행 피해 당했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6조(아동·청소년의 보호)   |
| 권고 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및 피해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69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694호 | 인터넷<br>광남일보  | 5월 19일 | 스포츠연예  | 유○○, 양예원·이○○ 이어 性추행 당해<br>“손을 XX 대보라고…” 男실장 대놓고 터치   | 인터넷신문 |
| 제2018-697호 | 인터넷<br>에너지경제 | 5월 19일 | Visual | 유○○, 양예원·이○○ 이어 性추행 당했다<br>“손을 XX 대보라고…” 男실장 적나라한 터치 | 인터넷신문 |
| 제2018-698호 | 인터넷<br>전기신문  | 5월 26일 | 전기문화   | 유○○, 변태 촬영 부추긴 ‘실장’ 성추행 폭로<br>“단 둘이 촬영할 때…팬티 벗으라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699호 | 인터넷<br>제민일보  | 5월 19일 | 연예     | 유○○, 양예원·이○○ 이은 性추행 희생양<br>“손을 XX 대보라고…” 노골적 터치      | 인터넷신문 |
| 제2018-701호 | 투스타뉴스        | 5월 18일 | 사회     | 미투운동, 이제는 미성년자<br>피팅모델까지?…유○○ 불법촬영 ‘성추문’<br>폭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705호 | e-울산매일<br>신문 | 5월 26일 | 뉴스     | 양예원 카톡, 잘못된인정 유○○과 이렇게 다를<br>수가 있나 어떠하기에?            | 인터넷신문 |

| 제2018-727호 | 주식회사 미디어인그램   |  |  |  |  |
|------------|---|--|--|--|--|
| 대상보도       | 놀이미디어 오픈 2018년 5월 17일자 정치사회면<br>「스튜디오 감금·성추행 고백 이어져.. 이○○, “양예원이 말한 또다른 피해자, 바로 나다」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전체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728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5월 17일자 핫이슈면<br>「“X녀, 걸X, 잘 봤다 네 XX”...양예원 ‘유출 사진’ 보고 조롱한 누리꾼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전체 영상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성적 표현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45호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5월 18일 사회면<br>「[전문]유○○, 양예원·이○○에 이어 성범죄 피해 고백 “로리타 교복...벗으면 안될까 강요”」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46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5월 18일 TV·방송면<br>「[전문] 18세 모델 유○○도 성추행 폭로 “속옷 벗어달라, 노골적인 자세 강요”」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사건에 관하여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물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63호 |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
|------------|---|
| 대상보도       | 톱스타뉴스 2018년 5월 17일 사회면<br>「이○○, 추가 폭로에 여론 분노…“자물쇠와 쇠사슬로 문 잠그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초상, 성명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물 전문을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해당 범죄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69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7월 10일자 ALL면<br>「[단독] 최지우, 남편은 9살 연하남…'생활앱' 서비스 회사 운영」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이 찍힌 결혼사진, 교제기간, 개명 사실, 외모상 특징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76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65호 | 부산닷컴     | 7월 10일 | 사회     | '극비리 결혼' 최지우 남편 TMI 알려준 디스패치…#나이 #O2O생활앱 #외모 | 인터넷신문 |
| 제2018-866호 | 뷰어스      | 7월 10일 | 스타     | 'o2o' 사업하는 키 큰 미남…'최지우', 나이보다-9 '남편'         | 인터넷신문 |
| 제2018-868호 | 싱글리스트    | 7월 10일 | 연예     | 최지우 남편은 9살 연하 생활앱서비스 대표…YG측 "행복한 신혼생활 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869호 | 인터넷 국민일보 | 7월 10일 | 시사     | 정체 드러낸 최지우 남편… #9세연하 #IT기업대표 #훈남             | 인터넷신문 |
| 제2018-872호 | TV조선     | 7월 11일 | 뉴스퍼레이드 | 최지우 남편 신상 보도에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 방송    |

| 제2018-770호 | 주식회사 씨비에스아이  |
|------------|--|
| 대상보도       | 노컷뉴스 2018년 6월 21일 정치 일반면<br>「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국가정보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의 핵심인물인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거취에 대해 보도하면서 미국 내 추정 거주지 주소를 상세히 공개하였다. 개인의 상세 주소를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77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71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6월 21일 | 사회 최신 | '노무현 논두렁 시계' 이인규, 미국서 포착...국내 소환되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772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6월 21일 | 사회    | 안민석, 이인규 미국 주소 공개...“즉각 소환 수사”     | 인터넷신문 |

|                   |   |  |  |  |  |
|-------------------|---|--|--|--|--|
| <b>제2018-773호</b> | <b>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b>   |  |  |  |  |
| <b>대상보도</b>       | 여성조선 2018년 7월호 ISSUE story<br>「이혼 소송 김기덕 감독 부인 S씨 심경」 제하의 보도  |  |  |  |  |
| <b>매체구분</b>       | 월간지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위 기사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감독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을 찍은 사진, 외모상의 특징, 성격, 취미, 블로그 운영 사실, 운영했던 레스토랑 대략적인 위치 및 외관 사진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여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774호 |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
|------------|---|
| 대상보도       | 인터넷 여성조선 2018년 6월 25일 ISSUE면<br>「이혼 소송 김기덕 감독 부인 S씨 심경」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감독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을 찍은 사진, 외모상의 특징, 성격, 취미, 블로그 운영 사실, 운영했던 레스토랑 대략적인 위치 및 외관 사진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이러한 내용을 취재하여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75호 | 국민일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국민일보 2018년 6월 27일 10면<br>「필사의 구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축공사장 화재를 보도하면서 화재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개인의 초상을 공개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7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76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6월 26일 | 시사  | '핑' 소리 후 불기둥·연기 치솟아... 곳곳서<br>"살려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777호 | 중앙일보        | 6월 27일 | 1면  | 세종 아파트 공사장 큰불...3명 사망 37명<br>부상            | 중앙일간지 |
| 제2018-778호 | 온라인<br>중앙일보 | 6월 26일 | 사회  | 세종시 ○○동 아파트 현장서 큰 불...부상자<br>20여명으로 늘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779호 | 뉴스1코리아      | 6월 26일 | 포토  | '살려주세요'...긴박한 구조 요청                        | 뉴스통신  |
| 제2018-780호 | 뉴시스         | 6월 26일 | 사회  | 세종시 화재현장서 근로자 구조                           | 뉴스통신  |
| 제2018-781호 | 디오데오        | 6월 26일 | 사회  | '살려주세요'...긴박한 구조 요청                        | 인터넷신문 |
| 제2018-782호 | 인사이트        | 7월 4일  | 핫이슈 | 아버지 따라 '용돈' 벌러 세종시 건설 현장<br>나섰다가 불길에 숨겨 아들 | 인터넷신문 |
| 제2018-783호 | e머니투데이      | 6월 26일 | 뉴스  | [사진]'살려주세요'...긴박한 구조 요청                    | 인터넷신문 |

| 제2018-784호 | 주식회사 뉴스투데이코퍼레이션  |
|------------|--|
| 대상보도       | 뉴스투데이 2018년 6월 21일 문화예술면<br>「'조재현 미투 폭로' 최○은 누구? '매직키드 마수리·해품달 출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배우자의 실명, 결혼연도, 출연작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85호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   |
|------------|---|
| 대상보도       |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8년 6월 20일 연예면<br>「'공개저격' 최○, 그는 누구?...데뷔작부터 최근작까지 살펴보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신대학 및 전공,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86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세계닷컴 2018년 6월 21일 연예면<br>「조재현 '미투 운동' 최초 실명 거론한 배우 최○은 누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및 초상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87호 | 주식회사 와이케이미디어   |
|------------|--|
| 대상보도       | 스포츠Q 2018년 6월 21일자 걸쳐Q면<br>「[이슈Q] 조재현 ‘미투’ 성폭행 폭로 시작한 최○ 누구? 농구선수 정○○과 결혼…<br>출연작 살펴보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교제기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88호 | 주식회사 더스포츠투데이  |
|------------|---|
| 대상보도       | 스포츠투데이M 2018년 6월 21일자 연예면<br>「최○ 누구? 여배우에서 농구선수와 결혼→조재현 미투에 의미심장 SNS」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나이,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자녀수,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89호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
|------------|---|
| 대상보도       | 아시아경제 2018년 6월 21일자 연예/스포츠면<br>「조재현 비판하며 ‘미투’ 운동 동참한 배우 최○은 누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초상 및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0호 | 주식회사 엠탑  |
|------------|--|
| 대상보도       | 엡다운뉴스 2018년 6월 21일자 핫토픽면<br>「조재현 ‘미투’ 폭로 시작한 최○은 누구? 농구선수 정○○과 결혼·출연 작품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1호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6월 21일자 문화면<br>「조재현 저격, 배우 최○ 누구?... ‘해를 품은 달’서 ○○○ 역」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2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6월 21일자 TV·방송면<br>「[SE★이슈] ‘성폭행 의혹’ 조재현 저격..배우 최○은 누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나이,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자녀수,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3호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6월 20일 핫클릭면<br>「최○, 누구인지 봤더니...익숙한 작품 '해품달' 출연까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직업, 출신대학 및 전공,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4호 | 주식회사 티브이데일리  |
|------------|--|
| 대상보도       | TV Daily 2018년 6월 21일 방송면<br>「최○, 조재현 재일교포 여배우 성폭행 의혹에 SNS 업뎃 “막 소리치고 싶네” 최○ 누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나이, 직업, 출연작, 결혼연도, 배우자의 실명 등을 보도하였다.<br>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5호 | 주식회사 뉴스타운  |
|------------|--|
| 대상보도       | 뉴스타운 2018년 6월 21일자 오늘의 이슈면<br>「'미투 폭로' 최○, 밀실 능욕 정황 “色氣있네”…“변태XX들 다 없어질 때까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 범죄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 피해자의 성명과 그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의 폭로내용을 함께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6호 | 주식회사 디트뉴스이십사   |
|------------|--|
| 대상보도       | 뉴스타운 2018년 6월 21일자 TV/연예면<br>「배우 최○, 미투 운동에 이어 어렵게 밝힌 밀실 능욕 정황 “色氣있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 범죄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한 피해자의 성명과 그와 무관한 다른 피해자의 폭로내용을 함께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797호     | 주식회사 나눔뉴스  |
|----------------|--|
| <b>대상보도</b>    | 나눔뉴스 2018년 7월 3일 사회면<br>「김지은 진단서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원치 않는 관계에 의한 것”」<br>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재판 중인 전 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피해자의 부인과적 진단 내용을 공개하였고 이를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비록 해당 사건이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부인과적 진단 내용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인 내밀영역에 속하는 점, 해당 진단 내용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해당 보도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79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798호 | 데일리중앙      | 7월 3일 | 뉴스 |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원치않는 성관계 출혈” 내용에                | 인터넷신문 |
| 제2018-799호 | 베타뉴스       | 7월 3일 | 종합 |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 산부인과 診療 기록 보니 ‘出血’…중요 증거될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800호 | 스포츠한국      | 7월 3일 | 시사 |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폭로 “원치않은 성관계에 의한 출혈” 기재         | 인터넷신문 |
| 제2018-801호 | 아이뉴스24     | 7월 4일 | 사회 | 안희정 재판 “유명인사와 일하면 잠재적 피해자?” 성관계 후 ‘출혈’        | 인터넷신문 |
| 제2018-802호 |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 7월 3일 | 사회 | 안희정 첫 재판,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원치않는 성관계로 출혈”  | 인터넷신문 |
| 제2018-803호 | 인터넷 국민일보   | 7월 3일 | 시사 |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출혈” 김지은 산부인과 진단서 들여다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804호 |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 7월 3일 | 사회 | 김지은 진단서, “원치않는 성관계로 비정상적인 출혈” 산부인과 진단 내용 뭐길래?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05호 | 인터넷<br>한국스포츠경제 | 7월 3일 | 빅데이터 | 김지은 비서, 안희정과 성관계 뒤 '비정상적<br>출혈'로 산부인과 진료... 첫 재판 증거 | 인터넷신문 |
| 제2018-806호 | 조선닷컴           | 7월 3일 | 사회   | "원치않는 성관계로 출혈"... 산부인과 진단서<br>제출한 김지은씨              | 인터넷신문 |

| 제2018-807호 |  | 주식회사 뉴스타운 |  |  |  |
|------------|--|-----------|--|--|--|
| 대상보도       | 뉴스타운 2018년 6월 15일자 오늘의 이슈면<br>「배○○ 시인, 징역 8년 확정...여고생 성폭행 “네 예쁜 가슴을 만져도 되겠니?”」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성관련 보도)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br>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성적 발언을 자세하게<br>보고하고, 해당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br>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 또한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br>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80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08호 | 디트news24    | 6월 15일 | TV/연예 | 배○○ 시인, 징역 8년 확정 “네 예쁜 가슴을<br>만져도 되겠니?” 여고생 성폭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809호 | 인터넷<br>전기신문 | 6월 15일 | 전기문화  | 배○○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br>성폭행하려... “네 예쁜 가슴을 만져도 되겠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810호 |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6월 19일 사회면<br>「강진 여고생 실종에 이어 ‘강진 갈갈이 사건’ 재조명...잔혹 살인에 강진 사람 곤욕」<br>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  |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1939년에 발생한 살인사건인 '강진 갈갈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범죄사건의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811호</b> | <b>주식회사 한국일보사</b>  |
| <b>대상보도</b>       | 한국일보 2018년 6월 12일 13면<br>「마지막까지 엄마 손에 꼭 쥐 놓인 종잇조각... 완벽한 자살사건을 뒤집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거여동 여고 동창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812호</b> | <b>주식회사 한국일보사</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한국일보 2018년 6월 12일 뉴스면<br>「마지막까지 엄마 손에 꼭 쥐 놓인 종잇조각... 완벽한 자살사건을 뒤집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거여동 여고 동창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13호 | 주식회사 매일경제신문사   |
|------------|--|
| 대상보도       | 매경ECONOMY 2018년 5월 30일 성경원 박사의 '성경(性敬) 시대'면 「요즘 유행하는 '립카페' 알고 보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행위를 현저하게 노골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립카페'라 지칭되는 퇴폐업소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해당 퇴폐업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며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14호 | 주식회사 환경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환경일보 2018년 6월 7일 산업·노동·안전면 「수원 공시생 실종 숨진 채 발견, 누리꾼들…“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성,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15호 | 주식회사 스포츠동아  |
|------------|---|
| 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동아 2018년 6월 7일자 최신뉴스면 「수원 공시생,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경찰 “부검할 예정”」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br>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81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18호 | 한국영농신문 | 6월 7일 | 뉴스 | 실종 공시생 사망, 사인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820호 | 베리타스   | 6월 8일 | 뉴스 | 실종 공시생 사망...공시생 폐공장서 주검으로 발견 | 인터넷신문 |

|                   |   |
|-------------------|---|
| <b>제2018-816호</b> | <b>주식회사 넥스트데일리</b>  |
| <b>대상보도</b>       | 넥스트데일리 2018년 6월 7일 시사정치면<br>「수원 공시생 실종 숨진 채 발견, 누리꾼들...“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성,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br>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17호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
|------------|--|
| 대상보도       | 연합뉴스TV 2018년 6월 7일자 전국면<br>「20대 공시생 행방불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초상,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19호 | 주식회사 크리스천투데이   |
|------------|--|
| 대상보도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2018년 6월 7일자 일반면<br>「실종 공시생 사망, 자살 추정, 이유는??」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21호 | 주식회사 민중의소리  |
|------------|---|
| 대상보도       | 민중의소리 2018년 6월 7일 사회면<br>「공시생, 숨진 그의 곁에 놓여 있던 것은... '이럴 수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초상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보도하였다.<br>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22호 | 주식회사 일간경기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경기 2018년 6월 7일 사회면<br>「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공개하여 모방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82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80호 | 인터넷 문화일보 | 6월 7일 | 사건·사고 | “공부한다며 나갔는데” 20대 공시생 숨진 채 발견         | 인터넷신문 |
| 제2018-881호 | 뉴시스      | 6월 6일 | 전국    | 실종된 수원 공시생, 용인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 뉴스통신  |
| 제2018-882호 | 연합뉴스     | 6월 6일 | 사회    |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자살 가능성” | 뉴스통신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83호 | 디스패치뉴스    | 6월 7일 | ALL |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 인터넷뉴스 |
| 제2018-885호 | 아이뉴스24    | 6월 7일 | 뉴스  | 수원 공시생, 실종 7일 만에 용인 폐공장서 숨진 채 발견                   | 인터넷뉴스 |
| 제2018-886호 | 온라인 중앙일보  | 6월 6일 | 사회  |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 인터넷뉴스 |
| 제2018-888호 | 이코노뉴스     | 6월 7일 | 종합  | 수원 공시생,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특별한 외상 흔적 없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 | 인터넷뉴스 |
| 제2018-889호 | 인터넷 경기신문  | 6월 6일 | 사회  | 수원 실종 20대 공시생 숨진채 발견돼                              | 인터넷뉴스 |
| 제2018-890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6월 7일 | 라이프 | 수원 20대 공시생, 결국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 인터넷뉴스 |
| 제2018-891호 | 인터넷 스포츠조선 | 6월 6일 | 라이프 | 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 인터넷뉴스 |
| 제2018-893호 | 일요신문      | 6월 7일 | 사회  | 20대 공시생, 폐공장서 숨진 채 발견                              | 인터넷뉴스 |
| 제2018-894호 | 조선닷컴      | 6월 6일 | 사회  | 실종된 수원 공시생, 용인 폐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                       | 인터넷뉴스 |

| 제2018-823호     | 주식회사 조선뉴스프레스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여성조선 2018년 5월 31일 ISSUE면 「아내 총격 후 자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 동기를 판단하는 보도를 하거나, 자살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 나이, 직업, 졸업학교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자살 동기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24호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뉴스웍스 2018년 6월 14일 글로벌면 「택시 안에서 아이라인 화장, 연필로 눈 찌르는 사고 발생」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한 여성이 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82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25호 | 동아닷컴   | 6월 14일 | 국제  | 택시서 눈 화장 20대 女, 추동사고로 눈에 아이라이너 박히는 '참변'             | 인터넷신문 |
| 제2018-826호 | 디스패치뉴스 | 6월 14일 | ALL | "택시 안에서 화장하다가 아이라이너가 눈에 박혔어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827호 | 인사이트   | 6월 14일 | 찾이슈 | 달리는 '택시' 안에서 화장 하다가 눈에 '아이라이너' 박힌 여성                | 인터넷신문 |
| 제2018-828호 | 투스타뉴스  | 6월 14일 | 국제  | 택시 안에서 화장하다가 눈에 아이라이너 박힌 승객...소방대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829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  |
|----------------|---|--|--|--|--|
| <b>대상보도</b>    | 위키토리 2018년 6월 17일 사건사고면 「7미터 비단 구렁이가 여성 통째로 삼켜 (영상+사진)」 제하의 보도  |  |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위 기사는 한 여성이 구렁이에게 먹힌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시체를 촬영한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하여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830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6월 17일 핫이슈면<br>「“엄마가 사라진 곳에서 배가 볼록 튀어나온 ‘거대 뱀’이 발견됐어요”」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한 여성이 눈에 상처를 입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31호 | 주식회사 새만금일보  |
|------------|---|
| 대상보도       | 새만금일보 2018년 6월 4일 14면<br>「전주 가정의학과 ○병원 개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83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32호 | 새전북신문 | 6월 4일 | 4면 | 전주 ○병원 개소식 자져 의료서비스 제공<br>돌입 | 지역일간지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33호 | 인터넷<br>새전북신문  | 6월 3일 | 경제  | 전주 ○병원 개소식 자져 의료서비스 제공<br>돌입        | 인터넷신문 |
| 제2018-834호 | 전민일보          | 6월 4일 | 5면  | 전주 ○병원 공식 개원...본격 의료 서비스<br>시작      | 지역일간지 |
| 제2018-835호 | 전북도민일보        | 6월 4일 | 5면  | 가정의학 전문 '전주 ○병원' 본격 의료서비스           | 지역일간지 |
| 제2018-836호 | 인터넷<br>전북도민일보 | 6월 1일 | 경제  | 가정의학과 전문 전주○병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837호 | 전북연합신문        | 6월 4일 | 14면 |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 전주 ○병원 개원           | 지역일간지 |
| 제2018-838호 | 전북일보          | 6월 4일 | 12면 | 전주 ○병원 공식 개원식...가정의학 전문<br>의료서비스    | 지역일간지 |
| 제2018-839호 | 전북일보인터넷<br>신문 | 6월 3일 | 사람들 | 전주 ○병원 공식 개원식...가정의학 전문<br>의료서비스    | 인터넷신문 |
| 제2018-840호 | 전북중앙신문        | 6월 4일 | 6면  | 가정의학과 전○○○○안과 전주○병원<br>개원           | 지역일간지 |
| 제2018-841호 | 인터넷<br>전북중앙신문 | 6월 3일 | 사회  | 가정의학과 전문병원 전주○병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842호 | 전북타임스         | 6월 4일 | 14면 | "환자를 믿고 찾는 병원 되도록 최선 다할 것"          | 지역일간지 |
| 제2018-843호 | 전주일보          | 6월 4일 | 12면 | "생활습관병 등 다양한 현대인 질병 치료<br>최선"       | 지역일간지 |
| 제2018-844호 | 인터넷<br>전주일보   | 6월 3일 | 경제  | 전주 ○병원, 개원식 갖고 본격 의료서비스<br>돌입       | 인터넷신문 |
| 제2018-845호 | 뉴스1코리아        | 6월 1일 | 전국  | 가정의학과 전문 '전주 ○병원' 개원...최첨단<br>장비 갖춰 | 뉴스통신  |
| 제2018-846호 | 프레시안          | 6월 1일 | 전국  | 전주 ○병원 개원식 갖고 본격 의료서비스<br>제공        | 인터넷신문 |

| 제2018-847호 | 광남일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광남일보 2018년 6월 28일 18면<br>「○○○○안과, ○○○안과로 새출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

|  |   |
|--|---|
|  | <p>「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2018-84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48호 | 인터넷<br>광남일보           | 6월 27일 | 뉴스          | ○○○○안과, ○○○안과로 병원명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18-849호 | 광주일보                  | 7월 2일  | 10면         | 10주년 ○○○○안과 '○○○안과'로 새출발           | 지역일간지 |
| 제2018-850호 | 인터넷<br>광주일보           | 7월 2일  | 뉴스          | 10주년 ○○○○안과 '○○○안과'로 새출발           | 인터넷신문 |
| 제2018-851호 | 전남일보                  | 7월 4일  | 8면          | ○○○○안과 '○○○안과'로 이름 바꾼다             | 지역일간지 |
| 제2018-852호 | 인터넷전남일보               | 7월 3일  | 의료건강        | ○○○○안과 '○○○안과'로 이름 바꾼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853호 | 광주매일신문                | 6월 28일 | 11면         | ○○○○안과 개원 10주년 맞아 '○○○안과'로 리브랜딩 선언 | 지역일간지 |
| 제2018-854호 | 인터넷<br>광주매일신문         | 6월 27일 | 의료/웰빙       | ○○○○안과 개원 10주년 맞아 '○○○안과'로 리브랜딩 선언 | 인터넷신문 |
| 제2018-855호 | 한국시민기자<br>협회<br>뉴스포털1 | 7월 1일  | 시민기자의창<br>면 | ○○○○안과, ○○○안과로 병원명 변경              | 인터넷신문 |

| 제2018-856호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
|------------|---|
| 대상보도       | 중도일보 2018년 6월 26일 11면<br>「비만 치료하는 지방흡입,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857호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
|----------------|--|
| <b>대상 보도</b>   |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6월 22일 건강/의료면<br>「[건강] 지방흡입, 제대로 된 시설 갖춘 '안전한 병원에서」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858호     |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
|----------------|---|
| <b>대상 보도</b>   | 아시아뉴스통신 2018년 6월 19일 건강면<br>「신사동 ○○성형외과 확장이전 개원」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859호     | 스마트마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뉴스워커 2018년 6월 5일 소비자.금융.헬스면<br>「○○산부인과 ‘○○○산부인과’, 5월 개원」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860호     | 주식회사 서울경제신문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서울경제 2018년 6월 22일 사회면<br>「대사중후군의 원인인 비만, 위풍선 엔드볼로 요요 없이 해결」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861호     |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
|----------------|--|
| <b>대상 보도</b>   | 인터넷 스포츠서울 2018년 6월 21일 라이프면<br>「비수술 어깨치료, ○○한방병원 ○○역 인천점 오픈」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862호     | 주식회사 의학신문사   |
|----------------|--|
| <b>대상 보도</b>   | 인터넷 의학신문 2018년 6월 25일 병의원면<br>「광주 ○○지구 ○○○○○○병원 본격 환자 진료」 제하의 보도 |
| <b>매체 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 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863호     |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
|----------------|---|
| <b>대상 보도</b>   | 내외뉴스통신 2018년 7월 10일 오늘의 핫뉴스면<br>「최지우 남편, 원치 않았을 관심? 나이부터 성(姓)·직함까지 공개」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p>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뒷모습이 찍힌 결혼사진, 교제기간, 개명 사실 등을 공개하였다.</p> <p>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86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64호 | 동아닷컴     | 7월 10일 | 연예        | 디스패치 “최지우 남편, 9세 연하 사업가”...YG “근거 없는 추측 자제” | 인터넷신문 |
| 제2018-867호 | 서울와이어    | 7월 10일 | 방송/연예/스포츠 | 최지우 남편, 나이부터 성(姓)·직함까지... 원치 않은 신상털이(?)     | 인터넷신문 |
| 제2018-870호 | 인터넷 중부일보 | 7월 10일 | 연예        | 최지우 남편, “1년 아닌 3년 만났다... 최지우 만나 이름도 개명” 화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71호 | 쿠키뉴스      | 7월 10일 | 쿠키영상 | [쿠키영상] 최지우 남편, 9세 연하남+생활업 대표+이름 개명 “최소 3년 이상 만남”...‘그냥 조용히 사랑하게 해주세요’ | 인터넷신문 |
| 제2018-873호 | 뉴스천지      | 7월 10일 | 연예   | 최지우 측 “남편 9살 연하 어플회사 대표... 근거 없는 추측 자제”                               | 인터넷신문 |
| 제2018-874호 | 인터넷 국제신문  | 7월 10일 | 사회   | ‘지우히메’ 최지우, ‘9살 연하남’ 남편은 어떤 사람?                                       | 인터넷신문 |
| 제2018-878호 | 인터넷 일간투데이 | 7월 10일 | 핫이슈  | 최지우 남편, “IT 스타트업 CEO”...신혼집 공동 ‘호스트’ 뒷이야기                             | 인터넷신문 |

| 제2018-875호 | 주식회사 데일리안  |
|------------|--|
| 대상보도       | 데일리안 2018년 7월 10일 연예면<br>「최지우 남편 1984년생 연하남? 디스패치 보도」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교제기간, 개명 사실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87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76호 | 인터넷 시사매거진 | 7월 10일 | 이슈     | 최지우 남편, 9살 연하 생활업 서비스 회사 운영                                      | 인터넷신문 |
| 제2018-877호 | 툭데일리      | 7월 10일 | 연예·스포츠 | 스타들을 향한 도넨은 알 권리에 ‘디스패치’ 폐간 국민청원 관심↑... 최지우 남편 신상공개에 누리꾼도 ‘갑론을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879호 | 주식회사 오토데일리  |
|------------|---|
| 대상보도       | 오토데일리 2018년 7월 10일 뉴스면<br>「YG “최지우 남편 나이는 84년생, 직업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연예인의 배우자의 성, 나이, 직업 등을 공개하였다. 비록 그가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배우자일지라도 개인의 사적 정보를 취재하여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84호 | 주식회사 매경닷컴   |
|------------|---|
| 대상보도       | 매경닷컴 2018년 6월 6일 사회면<br>「수원 20대 공시생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자살 가능성”」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공개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887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 2018년 6월 7일 방송-연예면<br>「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수원 20대 공시생」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그의 실명,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자살에 사용된 약명을 공개하였다.<br>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로 추정되는 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약명을 공개한 것은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892호</b> | <b>주식회사 코리아데일리</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일간경기 2018년 6월 7일 사회면<br>「공시생, 도서관 간다고 나가 실종..결국 시신으로 돌아와 “시신 옆에는 독극물!”」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살로 추정되는 공시생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및 치사량을 공개하여 모방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895호</b> | <b>경상뉴스</b>  |
| <b>대상보도</b>       | 경상뉴스 2018년 7월 14일 사회면<br>「상습 남의 돈 때 먹는『사기꾼』처벌해 주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개인간 채무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채무자의 성명, 초상, 나이 및 상세주소 등을 공개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896호</b> | <b>주식회사 뉴시스</b>  |
| <b>대상보도</b>       | 뉴시스 2018년 7월 6일 사회면<br>「드루킹 특검, 돌리 우 모씨 소환 조사」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포승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포승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89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897호 | 온라인 중앙일보  | 7월 6일 | 사회    | 드루킹 특검, 돌리 우 모씨 소환 조사                   | 인터넷신문 |
| 제2018-898호 | 뉴스핌       | 7월 6일 | 사회    | 특검, 드루킹 일당 조사 계속... '킹크랩' 시연 주장 '돌리' 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899호 | Why times | 7월 6일 | 뉴스/분석 | 특검, 드루킹 측근 '돌리' 소환...김경수 연결고리 추궁        | 인터넷신문 |

| 제2018-900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일보 2018년 7월 6일 10면<br>「네이버·다음·네이트에도 들어간 특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중앙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를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을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를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01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18년 7월 21일 사회면<br>「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주말 소환… 키크랩 등 추궁」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902호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
|----------------|--|
| <b>대상보도</b>    | 동아일보 2018년 7월 6일 14면<br>「드루킹 특검, 킹크랩 서버 구축 ‘트렐로’ 조사」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를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를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90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03호 | 동아닷컴    | 7월 6일 | 사회 | [단독]드루킹 특검, 킹크랩 서버 구축 '트렐로' 조사 | 인터넷신문 |
| 제2018-904호 | 뉴영남매일   | 7월 6일 | 2면 | 특검, 드루킹 공범들 연이어 소환조사           | 지역일간지 |
| 제2018-905호 | The대한일보 | 7월 6일 | 2면 | 특검팀, '드루킹 결심' 다음날 공범들 연이어 소환조사 | 지역일간지 |

| 제2018-906호     | 주식회사 뉴시스   |
|----------------|--|
| <b>대상보도</b>    | 뉴시스 2018년 7월 21일 사회면<br>「특검, 드루킹 공범 '서유기' 주말 소환...킹크랩 등 추궁」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을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0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07호 | 온라인<br>중앙일보 | 7월 17일 | 사회 | 드루킹 공범 '서유기' 특검 출석       | 인터넷신문 |
| 제2018-908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7월 17일 | 시사 | 드루킹에 매크로 전달한 '서유기' 특검 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909호 |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  |  |  |  |
|------------|--|--|--|--|--|
| 대상보도       | e머니투데이 2018년 7월 1일 뉴스면<br>「특검 두번째 소환자 '서유기', 5시간여 조사」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 일부와 함께 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제1항 및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제2018-910호 | 주식회사 뉴시스  |  |  |  |  |
|------------|---|--|--|--|--|
| 대상보도       | 뉴시스 2018년 7월 5일 사회면<br>「드루킹 특검, 필명 '술본아르타' 양모씨 소환」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  |  |

|             |   |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를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를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91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11호 | 인터넷 국민일보 | 7월 5일  | 시사 | 드루킹 특검, 필명 '솔본아르타' 양모씨 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912호 | 톱스타뉴스    | 7월 14일 | 사회 | 허익범 특검, '드루킹' 측근 '솔본아르타' 소환 조사...킹크랩 시연 및 '느릅나무 출판사' 휴대폰 사용자 물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913호     | 주식회사 뉴시스   |
|----------------|--|
| <b>대상보도</b>    | 뉴시스 2018년 7월 30일 사회면 「필명 '초보' 김모씨 소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수의 및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의 및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2018-91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14호 | 온라인 중앙일보 | 7월 30일 | 사회 | 필명 '초보' 김모씨 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915호 | 인터넷 국민일보 | 7월 30일 | 시사 | 특검, 드루킹 '초보' 김모씨 소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916호     | 주식회사 세명일보   |
|----------------|---|
| <b>대상보도</b>    | 세명일보 2018년 7월 30일 5면<br>「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지역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p> |

|  |  |
|--|--|
|  | <p>보기 어려운 점,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917호 | 주식회사 세명일보   |
|------------|---|
| 대상보도       | 인터넷 세명일보 2018년 7월 29일 종합뉴스면 「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이유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일부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초상 일부를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18호 | 주식회사 뉴스1  |
|------------|---|
| 대상보도       | 뉴스1코리아 2018년 7월 28일 사회면 「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

|     |   |
|-----|---|
|     | <p>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이 유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19호 | 주식회사 머니투데이  |
|------------|---|
| 대상보도       | e머니투데이 2018년 7월 28일 뉴스면<br>「특검, ‘드루킹 공범’ 트렐로 구속 뒤 첫 조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이 유        | <p>위 기사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가 천으로 가린 수갑을 착용한 채 초상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이와 더불어 성과 나이를 함께 노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비록 피의자가 공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사적·공적 인물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도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초상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갑을 착용한 피의자의 모습을 공개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피의자의 유죄확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당 보도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20호     | 중앙일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온라인 중앙일보 2018년 7월 11일 사회면<br>「“암전했던 아들, 군 복무 후 난폭해져” 조현병이 가져온 비극」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피의자의 어머니의 직업, 가정형편, 구타행위 등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더욱이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보도는 피의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21호     | 주식회사 대구일보사  |
|----------------|---|
| <b>대상보도</b>    | 대구일보 2018년 7월 9일 5면<br>「조현병 환자 흥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지역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9조(기타 개인적 법익 침해)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정신질환자에 관한 보도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p>이 기사는 조현병 환자의 경찰 살해사건을 보도하면서 정신질환자인 피의자의 상세 주소, 주택 외부전경,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피의자는 조현병 환자로 그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편견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2018-92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22호 | 인터넷 대구일보 | 7월 8일 | 사회 | 조현병 환자 흉기 휘둘러...경찰 1명 사망·1명 중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923호 | 인터넷 경북일보 | 7월 8일 | 영양 | 정신병력 40대 흉기난동...영양경찰관 1명 사망·1명 중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924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7월 21일 국제면<br>「룸메이트 총격 살해 한인 자기 방어 인정 징역 면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p>이 기사는 룸메이트를 총격하여 살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 초상,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25호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뉴스웍스 2018년 7월 5일 사회면<br>「○○산 '여고생 집단폭행' 파문...꿈썩한 '성추행'도 가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의 일부를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26호     | 국민일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7월 13일 시사면<br>「'○○산 폭행' 때문에...형사처벌 가능연령 만 13세로 낮춰질까」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인터넷 게시글의 일부를 게재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27호     | 시사상조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시사상조 2018년 7월 13일 사회면<br>「인터넷 통해 여학생 협박...음란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선정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28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7월 14일 핫이슈<br>「일본 3대 엽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히는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 사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6조(폭력 묘사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가학적·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 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일본 여고생 살인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음란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의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고 가학적인 폭력장면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29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대상보도       | 디스패치뉴스 2018년 7월 23일 세면<br>「“74살 박카스 할매 먹었다”…일베, 여성 조롱 몰카 논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성매매 노인 나체사진 온라인 유포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진 유포 게시글의 자극적인 제목을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30호 | 주식회사 아이뉴스이십사   |
|------------|--|
| 대상보도       | 아이뉴스24 2018년 7월 24일 사회면<br>「‘국민청원’ 일베 박카스남, “시든 인간에게 성관계로 물 쥐” 댓글 충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위 기사는 성매매 노인 나체사진 온라인 유포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진 유포 게시물에 달린 자극적인 댓글을 특히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931호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7월 4일 사회면<br>「현시각 동인천역 상황」 성폭행 가짜뉴스… 만취 노숙인 성관계」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성관련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지하철 역사내 성폭행 소식이 가짜뉴스라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노숙인의 성행위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여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는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32호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
|----------------|---|
| <b>대상보도</b>    | 한국경제 2018년 7월 24일 1면<br>「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장소 및 자살 방법, 자살까지의 자세한 경위 등을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유명 정치인의 자살사건을 보도하면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자살 장소를 공개하여 자살 장소로서 해당 장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방 자살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3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33호 | 한경닷컴 | 7월 23일 | 사회 |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돈 받았지만 청탁 무관” 유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34호 | KNS뉴스<br>통신  | 7월 23일 | 정치   | 노회찬 의원 '유서'... "드루킹 등에게 금전 받았으나 청탁 관련 無"    | 뉴스통신  |
| 제2018-935호 | 대한일보         | 7월 23일 | 정치경제 | [속보]정의당 노회찬의원 아파트 투신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936호 | 더뉴스코리아       | 7월 23일 | 정치   | [속보] '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파트서 투신 ...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937호 | 세이프타임즈       | 7월 23일 | 종합뉴스 | [세이프타임즈 속보] 자살한 노회찬 의원 "드루킹 금전 받았지만" 유서     | 인터넷신문 |
| 제2018-938호 | 아이이코노믹       | 7월 23일 | 정치   | 진보 노동 큰별'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망, 정치권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939호 | 에이티엔뉴스       | 7월 23일 | 정치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아파트 투신 사망...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40호 | 인터넷<br>뉴스웨이  | 7월 23일 | 국회   | 노회찬 원내대표, 아파트 투신 사망...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41호 | 인터넷<br>서울경제  | 7월 23일 | 사회   | 허익범 특검 "노회찬 원내대표 비보에 침통...유가족에 깊은 위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942호 | 인터넷<br>스포츠서울 | 7월 23일 | 최신뉴스 | [3보] 노회찬 의원 유서에 "드루킹, 청탁과 관련 없다...가족에 미안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43호 | 인터넷<br>시민일보  | 7월 23일 | 뉴스   | <속보>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944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7월 23일 | 사회   | [1보]노회찬 투신 사망... "아내 등 가족에게 미안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45호 | 인터넷<br>월요신문  | 7월 23일 | 정치   | '드루킹' 연루 노회찬, 투신 사망...유서 내용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946호 | 제주투데이        | 7월 23일 | 사회   | [속보]노회찬 정의당 의원 투신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947호 | 쿠키뉴스         | 7월 23일 | 뉴스   | 노회찬 "금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은 관련없다"...유서글 남겨       | 인터넷신문 |
| 제2018-948호 | 한국경찰일보       | 7월 23일 | 정치   | 정의당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949호 | 한국농어촌<br>방송  | 7월 23일 | 시사종합 | [전문] 노회찬 의원 "난 여기서 멈추지만" 유서 남기고 아파트서 투신 사망  | 인터넷신문 |
| 제2018-950호 | e글로벌<br>이코노믹 | 7월 23일 | 종합   | 노회찬 의원 변사체 발견...드루킹 특검에 차질 불가피              | 인터넷신문 |

| 제2018-951호 | 녹색경제신문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녹색경제신문 2018년 7월 17일 사회면<br>「워마드, '태아' 사체 회화화...“개 먹이로 줘야겠다” “밥 비벼먹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워마드 태아 훼손 추정 사진 게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게시글의 자극적인 내용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52호 | 주식회사 그린미디어  |
|------------|---|
| 대상보도       | e글로벌이코노믹 2018년 7월 17일 종합면<br>「워마드 태아 난도질 사진에 달린 댓글 “오늘 저녁은 낙태비빔밥이노”」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워마드 태아 훼손 추정 사진 게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게시글에 달린 자극적인 댓글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53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세계닷컴 2018년 7월 12일 사회면<br>「김해공항 사고영상 “끔찍해” 엄벌 요구 청원 쏟아져 (영상)」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김해공항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여과 없이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2018-95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54호 | 아시아투데이<br>닷컴 | 7월 11일 | 사회  | [영상] 김해공항 사고 블랙박스 영상 공개...택시기사 '의식 불명' | 인터넷신문 |
| 제2018-955호 | 인사이트         | 8월 6일  | 한이슈 | "김해공항 'BMW 사고' 피해자, 보름 만에 겨우 의식 회복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56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7월 17일 | 시사  | 국과수 분석 김해공항 BMW 사고 운전자의 최대 속도(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957호 | 인터넷<br>스포츠서울 | 7월 11일 | 라이프 | 김해공항사고블랙박스영상공개...BMW운전자"부주의였다"(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958호 | 쿠키뉴스         | 7월 12일 | 뉴스  | 김해공항, BMW 과속 사고 발생... 국민 청원까지 등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959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부산일보 2018년 7월 24일 23면<br>「두피·헤어라인...맞춤 이식술로 모발·만족도 '쑥쑥」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지역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60호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부산닷컴 2018년 7월 23일 라이프면<br>「○○○○○피부과' 두피·헤어라인... 맞춤 이식술로 모발·만족도 '쑥쑥'」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61호 | 주식회사 경기타임스  |
|------------|---|
| 대상보도       | 경기타임스e 2018년 7월 23일 사회/교육면<br>「특화된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원 ○○○재활의학과...도수, 운동치료로 몸의 균형 되찾아야」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6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62호 | 경인데일리         | 7월 23일 | 뉴스종합  | 수원 ○○○재활의학과, 특화된 재활프로그램 운영       | 인터넷신문 |
| 제2018-963호 | 아시아방송         | 7월 23일 | 건강코너  |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64호 | 인터넷<br>경인종합일보 | 7월 23일 | 지역종합  |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65호 | 인터넷<br>수원화성신문 | 7월 23일 | 오피니언  | [의학정보]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66호 | 인터넷<br>전국매일신문 | 7월 23일 | 화제&피플 |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67호 | 인터넷<br>현대일보   | 7월 23일 | 경제    |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68호 | 중부뉴스닷컴        | 7월 23일 | 일일보도  | “목, 어깨, 허리통증 방지하면 병이 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69호     | 국민일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국민일보 2018년 7월 30일 시사면<br>「‘답답한 이마 시원하게’ 좁은 이마 레이저 제모술로 고민 끝」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70호 | 양산뉴스파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양산뉴스파크 2018년 7월 16일 사회면<br>「양산○○병원, 최고의 시설 갖춘 ‘검진센터’ 조성」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71호 | 주식회사 헤럴드   |
|------------|--|
| 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2018년 7월 19일 헬스면<br>「안과전문병원 ‘부산○○안과병원’, 개원 30주년 맞아」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72호 | 주식회사 더팩트   |
|------------|--|
| 대상보도       | 더팩트 2018년 8월 23일자 연예면<br>「[TF인터뷰] 엘제이 호텔 예약 내역 공개 “류화영과 2년 열애 맞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함께 묶은 것으로 추측되는 호텔예약내역 등을 포함하고 있다.</p> <p>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특히 호텔예약내역은 사생활의 불가침적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내밀영역에 해당할 수도 있어 공개될 경우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73호 | 주식회사 스포츠조선   |
|------------|--|
| 대상보도       | 스포츠조선닷컴 2018년 8월 24일자 엔터테인먼트면<br>「[단독] 엘제이 “데이트폭력이라니...류화영의 거짓말에 지칩니다” (인터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신저 대화내용은 일방 당사자의 침실을 포함한 주택 내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p> <p>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사적 영역인 주택 내부 사진 및 침실을 공개하고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일상적 생활상을 사적 통신의 공개를 통해</p> |

|  |   |
|--|---|
|  | <p>그대로 노출한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974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대상보도       | 조선닷컴 2018년 8월 24일자 연예면<br>「[단독] 엘제이 “데이트폭력이라니...류화영의 거짓말에 지칩니다” (인터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을 게재하였는데, 공개된 메시지 대화내용은 일방 당사자의 침실을 포함한 주택 내부 사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p> <p>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사적 영역인 주택 내부 사진 및 침실을 공개하고 공적 관심사와 무관한 일상적 생활상을 사적 통신의 공개를 통해 그대로 노출한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75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8월 23일자 연예면<br>「[단독] 류화영 “엘제이 2년간 좋아했다” 열애 증거 확인」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p> <p>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76호 | 주식회사 한경닷컴   |
|------------|---|
| 대상보도       | 한경닷컴 2018년 8월 23일자 연예면 「[단독] 엘제이가 직접 공개한 #류화영 #2년열애 #다툼」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양측 당사자간에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p> <p>이는 당사자들이 비록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보도내용에서 공개된 사적 통신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되었으며, 그 내용 대부분이 상세한 사생활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77호 | 주식회사 오에스이엔   |
|------------|--|
| 대상보도       | 오에스이엔(OSEN) 2018년 8월 24일 연예면 「엘제이, 열 올린 류화영과 '연인 인증'..남은 것은 부정과 비난(종합) [Oh!썸 이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추측되는 당사자의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공개하였다.<br>이는 비록 당사자들이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유명인일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공개한 점, 특히 해당 사진 등은 수영복 차림의 당사자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해 일상생활의 상세한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는 점, 비록 호텔이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대중으로부터 벗어나 휴식 및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는 당사자의 은거적 사생활은 보호될 가치가 있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관계 없는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7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26호 | 뉴스웍스   | 8월 23일 | 연예  | 류화영, 엘제이와 열애? 직접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봤더니... "자기가 X잘썼어?" | 뉴스통신  |
| 제2018-1027호 | 뉴스엔    | 8월 23일 | 연예  | 류화영 측 "LJ 사생활 사진 유출? 확인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1028호 | 데일리안   | 8월 23일 | 연예  | 엘제이, 류화영 몰카 논란에도 당당 "욕먹을 각오 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29호 | 디스패치뉴스 | 8월 23일 | AII | 류화영과 찍은 사진 올리며 "제 여자친구"라 밝힌 방송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0호 | 매경닷컴   | 8월 23일 | 연예  | [MK체크] 류화영 언니 류효영, LJ에 항의.. "오해할만한 사진 지워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1호 | 봉황망코리아 | 8월 24일 | 문화  | 류화영 폭로 "엘제이, 데이트 폭력에 자살협박까지.."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32호 | 인터넷<br>아시아타임즈  | 8월 24일 | 연예     | 엘제이와 류화영의 상반된 주장... 배려없는<br>폭로의 결과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3호 | 엠케이스포츠         | 8월 23일 | 연예     | 류화영 사진 유출, 엘제이(LJ) 끝내 SNS<br>비공개로 전환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4호 | 인터넷<br>경남매일    | 8월 23일 | 뉴스     | 류화영 사진들 뿐 엘제이, 네티즌 도촬 의혹<br>품은 문제의 사진도... 설정샷 혹은 몰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5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8월 23일 | 시사     | “여친이랑 여행간 게 잘못인가?” 엘제이가<br>류화영 사생활 사진 방출하며 쓴 글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6호 | 인터넷<br>국제신문    | 8월 25일 | 문화     | 류화영VS엘제이, 계속되는<br>'진실공방'.. '데이트 폭력'의 진실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7호 | 인터넷<br>금강일보    | 8월 23일 | 문화     | 엘제이 SNS에 '류화영 측 경찰 신고' 기사<br>올려, 초강수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8호 | 인터넷<br>이데일리    | 8월 23일 | 연예     | 엘제이, 류화영 사진 유포 비난에 “욕먹을<br>각오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39호 | 인터넷<br>일간투데이   | 8월 23일 | NEWS   | 류화영 사진들 업로드한 엘제이, 설정인가<br>'몰카'인가? 네티즌 도촬 의혹 제기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0호 | 인터넷<br>제민일보    | 8월 23일 | 연예     | 류화영과 열애 폭로한 엘제이, 다른 남자와<br>사진 찍자 분노? “대박”...몰카 의혹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1호 | 조세금융신문         | 8월 24일 | LIFE   | 엘제이 데이트 폭력 주장 류화영, 자택 무단<br>침입 호소...“비키니 몰카도 찍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2호 | 조이뉴스24         | 8월 23일 | 연예가화제  | 류화영 침묵, 엘제이가 올린 '류화영 비키니<br>사진'은 몰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3호 | 인터넷<br>코리아데일리  | 8월 23일 | 연예     | 류화영, “사생활 사진 대량 유포에 ‘화들짝’”<br>엘제이(LJ)와 무슨 관계? 류화영측 입장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4호 | 톱스타뉴스          | 9월 3일  | 엔터테인먼트 | 섹션TV 연예통신' 엘제이-류화영,<br>“연인이었다” vs “호감 가지고 만난 건<br>일주일이었다, 데이트 폭력도 당했다” 엇갈린<br>주장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5호 | enews24        | 8월 23일 | News   | LJ(엘제이), 류화영과 다정한 사진 대거 공개<br>'연인 의심?' 사생활 논란 확산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6호 | e머니에스          | 8월 23일 | -      | “2년간 교제” vs “친한 오빠”...<br>엘제이·류화영, 누가 거짓말하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047호 | iSTYLE<br>24스냅 | 8월 23일 | STAR   | 엘제이, SNS에 류화영 사생활 사진 대량<br>업로드 '파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978호 | 주식회사 국제신문   |
|------------|---|
| 대상보도       | 인터넷 국제신문 2018년 9월 17일 문화면<br>「구○○에 상처입은 남자친구… 과거 ‘○○동 ○○○’ 모습과 대비」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고 동의 없이 초상, 직업, 별칭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적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79호 | 주식회사 소셜미디어네트웍스  |
|------------|---|
| 대상보도       | 톱스타뉴스 2018년 9월 16일자 엔터면<br>「‘구○○ 남자친구’ 헤어디자이너 누구? ‘○○동 ○○○’ 화제…‘마이 매드 뷰티 다이어리’ 동반 출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기사 제목 등을 통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고 동의 없이 초상, 직업, 별칭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사적 정보를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80호 | 마이데일리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마이데일리 2018년 9월 17일 포토&영상면<br>「[MD포토] 경찰서 출두하는 ‘구○○ 전남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실명, 별칭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실명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81호 | 주식회사 비즈트리뷴  |
|------------|---|
| 대상보도       | 비즈트리뷴 2018년 9월 19일자 연예면<br>「구○○ 남친 ‘엘리베이터에서 흡연’ 영상 공개!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예쁜 연애했던 커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실명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82호 | 쿠키미디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쿠키뉴스 2018년 9월 18일자 뉴스면<br>「구○○, 강남경찰서 출두... 요란한 5일의 치정싸움 결말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수의 전 남자친구인 폭행 신고자의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하였다.<br>비록 해당 사건의 중심인물이더라도 언론 등을 포함한 대중 앞에 스스로 등장하기 이전에 일반인인 당사자의 실명 등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83호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엔엠   |
|------------|--|
| 대상보도       | SBS아이엔엠 2018년 9월 19일 연예면<br>「[단독 입수] 구○○-남자친구 폭행 사건 직후 영상 공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 가수의 폭행혐의를 보도하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하였다.<br>이러한 보도내용은 비록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명인의 폭행사건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의 공개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CCTV 장면 공개를 통해 개인의 상세한 사생활 부분을 그대로 노출하였다는 점, 이슈가 된 사건이라도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공적 이익과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8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84호 | 디스패치뉴스 | 9월 20일 | All    | 구○○&남자친구 폭행 논란 직후 엘베 CCTV                     | 인터넷신문 |
| 제2018-985호 | 위키트리   | 9월 19일 | 사회     | “담배 피우고, 거울 살피고” 구○○-남자친구 폭행 직후 함께 탄 엘리베이터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986호 | 인사이트   | 9월 19일 | 엔터테인먼트 | “담배 피우고 거울 살피고”...구○○-남자친구 폭행 사건 직후 CCTV 영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987호     | 주식회사 한국경제신문  |
|----------------|--|
| <b>대상보도</b>    | 한국경제 2018년 8월 21일자 02면<br>「장하성 실장이 사는 아파트에도 ‘경비원 감원’ 바람 불어닥쳤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비원 감축을 추진 중임을 보도하면서 거주지 주소 및 아파트 구입연도, 소유관계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보도 당사자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보도대상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관련 정책의 비판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파트 위치나 주소, 현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88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b>대상보도</b>    | 세계닷컴 2018년 8월 21일 정치면<br>「최저임금 인상 이끈 장하성 실장의 아파트...인건비 부담에 경비원 45% 줄일 계획」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경비원 감축을 추진 중임을 보도하면서 거주지 주소 및 아파트 구입연도, 소유관계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비록 보도 당사자가 고위 공무원으로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보도대상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관련 정책의 비판과 같은 공익적 목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아파트 위치나 주소, 현 소유관계 등 개인정보를 공개한 해당보도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89호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웍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데일리한국 2018년 9월 9일 문화·스포츠면<br>「박○○ 아들 공개에 ○○○ 향한 자연스런 관심..‘마약 불구속 기소’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연예인의 마약 투약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8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7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48호 | 국제뉴스     | 9월 9일  | 연예 | 박○○, 아들은 ○○○가? ‘양육과 우울증에 대한 솔직 고백’                 | 뉴스통신  |
| 제2018-1049호 | e글로벌이코노믹 | 9월 10일 | -  | 박○○ ‘나이 28세’ 싱글맘 라이프 공개, 전 남편이 ○○○? 팬들 ‘두 번 깜짝’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0호 | 뉴스엔      | 9월 9일  | -  | 박○○, 7세 아들 공개하며 “내 삶의 이유, 사랑해” 전남편은 ○○○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1호 | 인터넷 천지일보 | 9월 9일  | 연예 | 박○○ 누구?... 래퍼 ○○○ 전 부인·쇼핑몰 모델 출신·‘태양의 후예’ 미모 간호사 역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52호 | 데일리연합        | 9월 10일 | SSTV연예 | “아들, 내 삶의 이유”... 악플→응원으로 바꾼 박○○의 진심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3호 | 매경닷컴         | 9월 10일 | 전체     | 박○○ 아들공개에 응원 쏟아지는 이유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4호 | 부산닷컴         | 9월 9일  | 스포츠연예  | 박○○, 아들은 “내 삶의 이유” 전남편은 ○○○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5호 | 스타뉴스         | 9월 9일  | 이슈/연재  | ○○○ 이혼' 박○○, 7살 아들 공개 “내삶의 이유”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6호 | 스타데일리뉴스      | 9월 10일 | 뉴스     | 박○○, 아들 공개에 누리꾼 시골 “응원합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7호 | 스포츠조선닷컴      | 9월 9일  | 엔터테인먼트 | “사랑해. 내 삶의 이유”...박○○, 7살 아들 첫 공개 ‘행복한 일상’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8호 | 스포츠투데이 M     | 9월 8일  | 연예     | 박○○, 아들 사진 공개 “네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어” [스타옛보기]                    | 인터넷신문 |
| 제2018-1059호 | 시크뉴스         | 9월 10일 | 방송     | 박○○, 일곱살 아들 사진 공개 “내 삶의 이유”→전 남편 ○○○까지 관심↑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0호 | 아시아뉴스통신      | 9월 10일 | 연예·문화  | 박○○, 아들 공개 관심 집중...전 남편 ○○○는 누구?                          | 뉴스통신  |
| 제2018-1061호 | 오에스이엔(OS EN) | 9월 9일  | 연예     | 싱글맘' 박○○, ○○○와 이혼→7살 아들과 행복 일상 공개(종합)[Oh!쎬 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2호 | 위키트리         | 9월 9일  | 엔터     | ○○○ 전 부인, 박○○가 올린 7살 아들 사진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3호 | 이투데이         | 9월 10일 | 연예스포츠  | 박○○' SNS해킹 피해 호소+7살 아들 공개...‘○○○’가 밝힌 이혼 사유 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4호 | 인터넷국민일보      | 9월 9일  | 시사     | ○○○ 전 부인 박○○...쇼미더머니 경연 '187' 속 아들 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5호 | 인터넷금강일보      | 9월 9일  | 문화     | ○○○ 누구기에? 부성애로 감동 주기도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6호 | 인터넷서울경제      | 9월 10일 | TV·방송  | ○○○, 박○○와 이혼 사유 추측하지 말라.. “부부만 아닐 뿐, 부모로서 잘 지내고 있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7호 | 인터넷스포츠서울     | 9월 9일  | 연예     | 박○○, 7세 아들 공개 “내 삶의 이유”...이어지는 응원[SS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68호 | 인터넷중부일보      | 9월 9일  | 연예     | “너는 내 삶의 이유”...‘태양의 후예’ 미모 간호사 役 배우 박○○, 7살 아들과 가을 나들이 공개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69호 | 인터넷<br>코리아데일리  | 9월 9일  | 연예   | 박○○ 아들, 공개에 이목집중..누구길래?<br>“23살에 래퍼와 결혼 후 이혼..사연은?”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0호 | 전자신문엔터<br>테인먼트 | 9월 9일  | 연예   | 박○○, 아들 ○○○가 양육하고 있었는데..<br>‘우울증 호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1호 | 쿠키뉴스           | 9월 10일 | 뉴스   | [친절한 쿠키지] ‘엄마 박○○’의 용감한 고백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2호 | 키즈맘            | 9월 10일 | 전체뉴스 | ‘싱글맘’ 박○○, 7살 아들공개… “사랑해, 내<br>삶의 이유”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3호 | 티비리포트          | 9월 9일  | 리포트@ | 배우 박○○, 왜 7살 아들까지 공개 했을까<br>[리포트@이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4호 | 한경닷컴           | 9월 10일 | 연예   | 前 남편 ○○○·아들 언급 없었던 박○○,<br>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990호     | 팝콘미디어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팝콘뉴스 2018년 8월 2일 정책프리즘면<br>「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 정부는 한 달여 동안 뭐했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br>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리비아 한국인 납치 사건을 보도하면서 납치 당사자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br>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br>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991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b>대상보도</b>    | 조선일보 2018년 8월 24일자 12면<br>「몸살 짓 해놓고도... 80대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중앙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br>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거주 지역 등을 공개하였다.</p> <p>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992호     |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
|----------------|---|
| <b>대상보도</b>    | 조선닷컴 2018년 8월 24일 사회면<br>「몸살 짓 해놓고도... 80代 노인 “손녀 같아 그랬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나이, 가정환경, 거주 지역 등을 공개하였다.</p> <p>이는 성폭력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993호     | 주식회사 아이뉴스이십사   |
|----------------|--|
| <b>대상보도</b>    | 아이뉴스24 2018년 9월 12일 사회일반면<br>「'양예원' 근황, 데이트 장소가? “스튜디오 실장 재가 돼 부러진 곳 근처”」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 유</b>     | <p>위 기사는 현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즐겼다는 내용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p> <p>이는 해당 성폭력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일상적 생활상을 공개하였다는 점, 더구나 일반인인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을 여과 없이 노출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p> |

|  |  |
|--|--|
|  | <p>남자친구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br/>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2018-99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9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77호 | 매경닷컴          | 9월 12일 | 스타투데이<br>뉴스 | '양예원 사건' 실장 여동생 분노? "오빠 유골<br>부러진 곳에서 낚시라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0호 | 봉황망코리아        | 9월 11일 | 한국 인사이트     | 양예원 근황, 법정과 180도 다른 남자친구와<br>여행 중 '함박미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1호 | 빅데이터뉴스        | 9월 12일 | 정치사회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양예원 낚시 사진에<br>"오빠는 억울해 미칠 것 같다고 했는데.." 분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2호 | 세계닷컴          | 9월 12일 | 연예          | '양예원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 "오빠 유골<br>바다에 부렸는데, 바다낚시 기사 접하고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3호 | 스포츠투데이<br>M   | 9월 12일 | 연예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양예원 근황에 분노<br>"오빠는 모든 것 잃어"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5호 | 엠케이스포츠        | 9월 11일 | 연예          | 양예원, 실장 49제도 안됐는데...<br>남자친구와 배 낚시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6호 | 이투데이          | 9월 12일 | 사회          | 실장 동생 주장 인물... "양예원, 억울하게 죽은<br>오빠 부러진 곳에서..."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7호 | 인터넷<br>대전투데이  | 9월 12일 | 종합뉴스        | 양예원, 음식 권하며 카메라 향해 미소지어...<br>뜻밖의 장소에서 조우했네... 달린 설명 들어보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9호 | 인터넷<br>무등일보   | 9월 12일 | 뉴스센터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오빠는 죽기 전까지<br>억울 호소, 뼈 부러진 바다서 낚시라니" 분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0호 | 인터넷<br>서울경제   | 9월 12일 | 사회          | 양예원, 남친 배낚시 여행 근황 공개 後 SNS<br>게시글 삭제...무슨 일?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1호 | 인터넷<br>스페셜 경제 | 9월 12일 | 핫이슈         | 양예원, 알고보니 배낚시 여행 때문 "그녀의<br>피부가 닳던 이유는?"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2호 | 인터넷<br>일간투데이  | 9월 12일 | 핫이슈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의 의혹 제기, "버티고<br>버텼다" 눈물→바다 위 회 한 점에 '방긋'...<br>코스프레?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3호 | 인터넷<br>일요시사   | 9월 20일 | 오늘의 이슈      | 바다낚시 논란' 비난에 양예원 변호사 분노<br>"피해자가 어떤 삶 살길 원하나"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94호 | 인터넷<br>충청매일  | 9월 13일 | 라이프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고인 능욕' 당한 '설움'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6호 | 톱스타뉴스        | 9월 13일 | 사회       | [이슈] 양예원, 최근 남자친구와 배낚시 여행?...양예원 측 '낚시사진 논란? 대응할 가치 못 느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7호 | e-경상일보       | 9월 11일 | 방송/연예/이슈 | 양예원, 카메라 향해 음식 권하는 듯한 포즈...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 여기는 어디?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8호 | e-울산매일<br>신문 | 9월 12일 | 찾이슈      | 양예원, 뜻밖의 장소에서 조우했네... 달린 설명 들어보니... 음식 권하며 카메라 향해 미소지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9호 | KNS뉴스통신      | 9월 17일 | 찾이슈      | 양예원, '바다낚시 논란' 반박... "본질 흐리는 논란, 응대 안할 것"                 | 뉴스통신  |
| 제2018-1100호 | TV Daily     | 9월 11일 | 방송       | 양예원 근황, 남자친구와 함께 환한 미소 '양예원 남자친구 누구?'                     | 인터넷신문 |

| 제2018-994호     | 주식회사 중부일보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중부일보 2018년 9월 12일 사회면<br>「양예원 바다낚시 데이트 장소 논란... "스튜디오 실장 재 부러진 곳, 경악"」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현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즐겼다는 내용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br>이는 해당 성폭력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하였고, 더구나 일반인인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 일부를 노출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보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 공개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초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br>이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9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75호 | 공유경제신문              | 9월 12일 | 사회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사망한 오빠의 억울함 호소... "양예원 배낚시 기사에 분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6호 | 디트news24            | 9월 20일 | TV/연예 | '바다낚시 논란' 양예원, 비난 여론에 휩싸이자 변호사 "피해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분통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8호 | 미디어펜                | 9월 12일 | 연예스포츠 | "양예원, 오빠 유골 뿌려진 곳서 바다낚시...경악" 스튜디오 실장 여동생 분노                  | 인터넷신문 |
| 제2018-1079호 | 법률방송뉴스              | 9월 12일 | 법과 세상 | 양예원 사건 후 인천 바다낚시 사진에 스튜디오실장 정씨 동생 "오빠 유해 뿌려진 곳, 화나서 말도 안 나온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4호 | 아시아투데이<br>닷컴        | 9월 11일 | 연예스포츠 | 양예원, 남자친구와 여름 휴가? 회 접시 들고 미소                                  | 인터넷신문 |
| 제2018-1088호 | 인터넷<br>데일리스포츠<br>월드 | 9월 11일 | 연예    | 양예원, 남친과 배낚시 여행 근황에...누리꾼들의 댓글은 '갑론을박'                        | 인터넷신문 |
| 제2018-1095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9월 12일 | 최신기사  | "양예원 인천바다 낚시 기사 보고 경악"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1호 | UPI 뉴스              | 9월 12일 | 사회    |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 "오빠의 억울함 풀어달라"                            | 인터넷신문 |

| 제2018-995호     |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
| <b>대상보도</b>    | 메트로신문 2018년 9월 11일 사회면<br>「양예원 근황, 남친과 낚시여행...회 담긴 접시 들고 환한 미소」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현재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주장되었던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근황을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바다낚시를 즐겼다는 내용과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였다.<br>이는 해당 성폭력 사건과 전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99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0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02호 | 데일리그리드       | 9월 13일 | 방송통신        | 양예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실장 동생 분노에 결국 해명 “사망 이후 사진 아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3호 | 데일리안         | 9월 13일 | 사회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주장 선긋기, 머리스타일 때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4호 | 동아닷컴         | 9월 12일 | 사회          | 스튜디오 실장 동생 추정 A “양예원 낚시 사진 경악, 우린 지옥인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5호 | 디스패치뉴스       | 9월 12일 | All         | “양예원 바다낚시 기사 보고 경악했다” (스튜디오 실장 동생)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6호 | 부산닷컴         | 9월 13일 | -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바다낚시 분노 글에 양예원 측 “사망 이후 사진 아냐”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7호 | 아시아뉴스통신      | 9월 13일 | 사회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분노글 올려...“바다낚시에 경악”                        | 뉴스통신  |
| 제2018-1108호 | 인터넷국제신문      | 9월 13일 | 뉴스          | 양예원, 숨진 스튜디오 실장이 부러진 바다 위에서 낚시했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109호 | 인터넷에너지경제     | 9월 13일 | -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죽은 뒤에도 시달려” 웃음과 눈물 둘 다 보인 유튜브버의 속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0호 | 인터넷이코노믹리뷰    | 9월 13일 | LIFE&PEOPLE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주장 선긋기...머리스타일이 다르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1호 | 인사이트         | 9월 12일 | 정치사회        | “오빠 재 부러진 곳이다”...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동생이 남긴 글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2호 | 인터넷금강일보      | 9월 12일 | 사회          | 양예원 근황 사진에 스튜디오 실장 유족 “정말 화가 난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3호 | 인터넷스포츠경향     | 9월 13일 | 연예          | “오빠 유골 부러진 곳에서 바다낚시 경악” 실장 동생 분노...양예원 측 “대응할 가치 없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4호 | 스포츠한국        | 9월 12일 | 시사          | 양예원 사진 유출 혐의 실장 동생 “낚시? 오빠 죽은 후 지옥서 사는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5호 | 인터넷아주경제      | 9월 13일 | -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분노케한 낚시 사진, 양예원 측 “거기서 장례 치러졌는지 알았겠느냐”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6호 | 인터넷제민일보      | 9월 13일 | 연예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웃음과 눈물 모두 작정한 유튜브버에...“죽은 뒤에도 시달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7호 | 인터넷일간리더스경제신문 | 9월 13일 | 뉴스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글 논란 확산 ...변호인 “피해자들이 두문불출 할 이유가 있다. 그냥 일상”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18호 | 인터넷<br>전기신문 | 9월 13일 | 전기문화  |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 격노 "배낚시...유족<br>능욕행위" 카톡메시지 진위 강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19호 | 조선닷컴        | 9월 13일 | 사회 일반 | "오빠 뿌린 바다에서 낚시라니"... 양예원 측<br>"응대 않겠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20호 | 쿠키뉴스        | 9월 13일 | 영상    | [쿠키영상] 양예원 측 "양예원 사건 실장 동생<br>낚시사진 논쟁, 대응할 가치 못 느껴"... "성범죄<br>피해자가 왜 괴로워해야 하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121호 | 한경닷컴        | 9월 13일 | 사회    | "죽은 오빠 유골 버려진 곳에서 낚시"...<br>양예원사건 실장동생 주장 사실?                                   | 인터넷신문 |

| 제2018-996호 | 주식회사 에스에스미디어판   |  |  |  |  |
|------------|---|--|--|--|--|
| 대상보도       | 뉴스인사이드 2018년 8월 22일<br>「○○여고 미투, 폭로보니? "난 네 속이 궁금해...XX냄새 난다" 충격」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피해상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보도하거나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범행을 폭로한 발언내용, 대자보 등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여 가해자의 범행수법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특정 발언을 특히 제목으로 사용하는 등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99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997호 | 아이뉴스24      | 8월 22일 | 사회일반 | '졸업생 미투' ○○여고 "다리 오므려라 냄새<br>나" "너는 젖 없냐" 성희롱         | 인터넷신문 |
| 제2018-998호 | 이코노뉴스       | 8월 22일 | 종합   | 졸업생 미투 ○○여고... "나는 네 속이<br>궁금해", 영영이 만지며 '찰진데?'       | 인터넷신문 |
| 제2018-999호 | 인터넷<br>전기신문 | 8월 22일 | 전기문화 | '졸업생 미투' ○○여고, 교무실서 여자<br>블라우스 탈의 명령... "아주 터지겠다?" 농락 | 인터넷신문 |

|                    |  |
|--------------------|--|
| <b>제2018-1000호</b> | <b>주식회사 뉴시스</b>  |
| <b>대상보도</b>        | 뉴시스 2018년 8월 9일 사회면<br>「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 있는 수법 및 사용된 장비의 명칭을 상세히 보도하여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00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7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01호 | 매경닷컴      | 8월 10일 | 뉴스 | [최기성의 허브車]귀신도 곡할 '주행거리 조작', 속지 않으려면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2호 | 온라인 중앙일보  | 8월 9일  | 사회 |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3호 | 인터넷 한겨레   | 8월 9일  | 사회 | 16만km→12만km로…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적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4호 | 인터넷 한국일보  | 8월 9일  | 사회 | 국과수도 모르는 해외 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5호 | e머니투데이    | 8월 9일  | 뉴스 | "흔적 없이 5분만에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딜러 등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6호 | 인터넷 충청타임즈 | 8월 9일  | 뉴스 | 5분 내, 흔적없이'…특수장비로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일당    | 인터넷신문 |
| 제2018-1007호 | 한경닷컴      | 8월 9일  | 뉴스 |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5분 만에 4만km 줄여          | 인터넷신문 |

|                    |   |
|--------------------|---|
| <b>제2018-1008호</b> | <b>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b>   |
| <b>대상보도</b>        | 인사이트 2018년 8월 24일 핫이슈면<br>「'쪽방촌'에 혼자 사는 90대 할머니 집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폭력 묘사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가학적 피학적인 내용, 폭력 장면 또는 언어폭력을 필요 이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위 기사는 노인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관련 없는 잔인한 사진을 사용하여 폭력 장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제2018-1009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b>대상보도</b>    | 디스패치뉴스 2018년 8월 20일 31면<br>「얼굴에 불 붙은 것도 망각해버린 마약 중독자.jpg」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머리 부분에 불이 붙은 마약 중독자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10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b>대상보도</b>    | 인사이트 2018년 7월 28일 핫이슈면<br>「'분신자살' 시도하는 동료 보자마자 '불길'로 뛰어들어 목숨 구한 군인」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몸에 불이 붙은 군인의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1011호</b> | <b>주식회사 비트허브</b>   |
| <b>대상보도</b>        | 글로벌경제신문 2018년 9월 10일 종합면<br>「청주○○한방병원, 9월 8일 청주 ○○ 개원」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01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012호 | 아시아투데이<br>닷컴       | 9월 10일 | 사회      | 청주○○한방병원, 8일 청주 ○○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3호 | 인터넷<br>국민일보        | 9월 11일 | 시사      | 청주에도 '비수술 척추 치료' ○○한방병원<br>생겼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4호 | 인터넷<br>브릿지<br>경제신문 | 9월 11일 | 뉴스      | 청주○○한방병원, 청주 ○○에<br>개원...한·양방전문의 비수술 척추치료 진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5호 | 인터넷<br>세계타임즈       | 9월 10일 | 건강/생활정보 | 청주○○한방병원, 9월 8일 청주 ○○에<br>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7호 | 인터넷<br>스포츠타일       | 9월 11일 | 라이프     | ○○한방병원 충청북도 청주시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8호 | 인터넷<br>충북일보        | 9월 10일 | 라이프     | 청주○○한방병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1016호 | 주식회사 경향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스포츠경향 2018년 9월 10일 생활면<br>「청주○○한방병원, 8일 청주 ○○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19호 | 주식회사 헬스경향   |
|-------------|---|
| 대상 보도       | 인터넷 헬스경향 2018년 9월 10일 헬스경향면<br>「“이제 청주에서도 ○○한방병원 진료서비스 받는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20호 |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
|-------------|---|
| 대상 보도       | 내외뉴스통신 2018년 8월 11일 의료건강면<br>「교통사고후유증,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혈’ 때문」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21호 | 주식회사 고양신문   |
|-------------|---|
| 대상 보도       | 인터넷 고양신문 2018년 9월 7일 종합면<br>「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요양병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22호 | 주식회사 뉴스메이커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뉴스메이커 2018년 8월 3일자 IT과학·의학면<br>「노인질환의 연구 통해 '노인이 행복한 나라' 꿈꾸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23호 | 주식회사 중도일보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중도일보 2018년 8월 13일 문화면<br>「지역 병원 탐방」 대전○○병원, 이전과 함께 새로운 '도약' 준비」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24호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현대불교 2018년 8월 31일 신행·복지면 「○○○요양병원, 복지법인 인덕원 품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 전경 사진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025호 |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
|-------------|---|
| 대상 보도       | FAM타임스 2018년 8월 9일 「안면마비원인, 스트레스 및 과도한 피로 발병 가능성 높여」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22호 | 주식회사 매일신문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매일신문 2018년 9월 20일자 연예면<br>「유키스 동호 이혼 서류 제출 소식에…“아이돌 최연소 결혼, 최연소 이혼?”」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실명, 나이 및 초상을 공개하였다.<br>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와 아들의 실명, 초상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23호 | 주식회사 금강일보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금강일보 2018년 9월 27일자 문화면<br>「동호, 결혼 3년만에 파경…동호 前 부인 “아들 건드리지 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br>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와 아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24호 | 주식회사 미디어케이디   |
|-------------|---|
| 대상보도        |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2018년 9월 20일자 연예면<br>「동호 이혼, 페이스북에 직접 남긴 글 눈길 “부부 관계 끝났지만..”」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br>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와 아들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25호 | 주식회사 내외뉴스통신  |
|-------------|--|
| 대상보도        | 내외뉴스통신 2018년 9월 20일자 오늘의핫뉴스면<br>「유키스 출신 동호, 별거·이혼? “너무 사랑해서..” 확산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실명 및 초상을 공개하였다.<br>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미성년자 아들의 실명, 초상 등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12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26호 | 뉴스랩      | 9월 20일 | 스포츠 연예 | '이혼' 동호, 아들 향한 부성애 '아이가 컸을 때 생각하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27호 | 메트로신문    | 9월 20일 | 문화     | 유키스 동호, 이혼 소식 전해..."어린 나이에 결혼 결심했는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28호 | 비즈엔터     | 9월 20일 | TV     | 유키스 동호, 결혼 3년만 이혼 '공식입장 無'                                   | 인터넷신문 |
| 제2018-1129호 | 이투데이     | 9월 20일 | 연예/스포츠 | '어린 아빠' 동호, 아들 ○○ 위해 조리사 도전도 했는데 '파경'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0호 | 인터넷 국제신문 | 9월 20일 | -      | '유키스 출신 동호 파경 소식에 SNS 아이디 눈길 '○○이 아빠'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1호 | 인터넷 무등일보 | 9월 20일 | -      | 유키스 동호 파경, 이성 문제로 부부싸움 잦았다 "바로 옆에서 남자가 대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2호 | 인터넷 중부일보 | 9월 20일 | 연예     | "동호 이혼 절차 마무리했다" 근황 전한 동호<br>父 신○○ 대표 누구? 아이돌매거진 '포토뮤직' 등 발행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3호 | 툼데일리     | 9월 20일 | 연예·스포츠 | 애처가 면모 보인 동호,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에 관심... "DJ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4호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뉴스웍스 2018년 9월 20일자 연예·스포츠면<br>「유키스 동호 파경 “결혼 공개하고 기사화할 생각 없었는데 카메라 들이대고...”」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뉴스통신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미성년자 아들의 실명과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13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9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35호 | 데일리안       | 9월 20일 | 연예    |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파경? 아들과도 따로 지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6호 | 비즈니스트리뷴    | 9월 20일 | 연예    |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이혼...아들 양육권, 절차 통해 판단 받을 예정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7호 | 스포츠투데이M    | 9월 20일 | 연예    | 동호, 결혼 3년만 이혼 절차...아내·아들과 별거 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8호 | 아시아경제 닷컴   | 9월 20일 | 연예·스타 | 신○○ “아들 동호, 성격 차이로 이혼...연예계 복귀 가능성은 없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39호 | 인터넷 스포츠서울  | 9월 20일 | -     | 유키스 동호, 결혼 3년 만에 파경...이혼 준비중, 아내-아들과 별거 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0호 | 인터넷 영남일보   | 9월 20일 | 문화    | 파경맞은 유키스 동호, 아이돌 최연소 결혼 아들까지 낳았는데... “안타까워”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1호 | 인터넷 이뉴스투데이 | 9월 20일 | 연예스포츠 | 유키스 출신 ‘동호’ 이혼 화제 속 ‘화목한’ 부자 사진 화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2호 | 인터넷 제민일보   | 9월 20일 | 연예    | 유키스 동호 파경, 평소 이성 관계로 부부싸움 多 “바로 옆에서 남자가 대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3호 |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 9월 21일 | 연예    | 동호, 어린 나이에 ‘결혼’ 결심 확고했던 까닭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4호 | 주식회사 한국미디어네트워크  |
|-------------|---|
| 대상보도        | 스포츠한국 2018년 9월 20일자 연예면 「동호, 아내가 남겼던 의미심장한 SNS “스트레스 쌓인게 터졌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이혼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비록 유키스 동호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사인에 불과한 배우자의 초상을 공개한 것은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144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45호 | 인터넷 시사매거진 | 9월 20일 | 키워드 | 동호 결혼 3년 만에 이혼서류 제출 아내와 별거 중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6호 | 인터넷 중도일보  | 9월 20일 | 핫클릭 | 유키스 출신 동호, 인형미모 아내와 이렇게 다정했는데...누리꾼들 “진짜 이혼?” 이미 SNS는 삭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7호 | 투스타뉴스     | 9월 20일 | 엔터  | 이혼 절차' 유키스 동호, 과거 아내와 달달한 모습 눈길...‘매일 발도 씻겨줬는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48호    | 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   |
|----------------|---|
| <b>대상보도</b>    | 디스패치뉴스 2018년 9월 21일자 ALL면<br>「성관계 하려다 트랜스젠더인 것 확인하고 폭행한 한국인 남성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태국에서 벌어진 폭행사건을 동영상 등을 통해 보도하면서 한국인 피의자의 초상을 그대로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49호    | 주식회사 중앙일보  |
|----------------|--|
| <b>대상보도</b>    | 온라인 중앙일보 2018년 9월 27일자 사회면<br>「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1150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9월 27일자 국제면 「한인 부부 보험사기단 적발...아내를 조카로 수혜자 꾸며」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보험사기 혐의자인 부부의 초상, 실명 및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p> <p>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151호    | 주식회사 아주뉴스코퍼레이션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아주경제 2018년 10월 23일자 사회면 「'바둑계 미투' 폭로한 ○○○ ○○○는 누구?」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4조(성폭력피해자 보호)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 유</b>     | <p>위 기사는 기사 제목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을 부각하여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초상, 실명, 생년월일, 국적, 직업, 이력 등을 상세히 보도하였다.</p> <p>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 권고 심의기준」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기사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152호 | 주식회사 여원뉴스  |
|-------------|--|
| 대상보도        | 여원경제뉴스 2018년 10월 16일자 政·經·社면<br>「〇〇여대 알몸남 드디어 검거, 대학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한 남성이 여대 교내에서 찍은 나체 음란 영상물을 SNS에 유포하여 논란이 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남성이 유포한 영상의 사진을 게재하여 음란성이 담긴 범죄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선정적으로 보도하였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15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53호 | 인사이트     | 10월 15일 | 정치·사회 | 경찰, 〇〇여대 강의실서 알몸으로 자위행위 하던 20대 남성 검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54호 | 인터넷 한라일보 | 10월 16일 | 뉴스    | 〇〇여대 알몸남 검거, 음란물 촬영 후 자위 행위 “여대생들 앉았던 자리에서…” 끔찍 | 인터넷신문 |
| 제2018-1155호 | 조세금융신문   | 10월 16일 | 이슈투데이 | 〇〇여대 알몸남 검거, 자위 행위까지…끔찍한 만행 “여대생들 앉았던 자리 위”     | 인터넷신문 |
| 제2018-1156호 | 한경닷컴     | 10월 16일 | 사회    | ‘〇〇여대 알몸남’ 자격증 교육 받기위해 출입…여대 금남구역 뚫까            | 인터넷신문 |

| 제2018-1157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10월 19일자 정치·사회면<br>「“얼굴에만 칼자국 32개”…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사가 밝힌 당시 상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SNS 게시물 전문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비참한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또한 수습되지 않은 범행 장소 사진을 공개하여 포악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158호    | 주식회사 시사저널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시사저널 2018년 10월 26일자 이슈면<br>「악마가 된 청년의 끔찍한 살인극, 그 전모」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SNS 게시물 일부를 공개하여 피해자의 비참한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p> <p>또한 피해자의 몸 주변에 핏자국, 흉기를 그려 넣는 등 범행 장면을 묘사한 삽화를 통해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p> <p>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159호    | 녹색경제신문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녹색경제신문 2018년 10월 20일자 대중문화면<br>「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해자의 담당의로서 남궁○ 교수 페이스북 글 전문」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의 SNS 게시물 전문을 공개하여 피해자의 비참한 피해상태를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15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1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92호 | 더 셸럽         | 10월 19일 | 문화/사회 | '강서구PC방 살인' 담당의 남궁○ "우울증은 칼을 쥐어주지 않는다" 심신미약에 일침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3호 | 디스패치뉴스       | 10월 21일 | ALL   | 강서 PC방 피해자 상태 공개, 의료윤리 위반" (현직 의대 교수)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4호 | 마이데일리        | 10월 19일 | 사회&산업 | 남궁○ 담당의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얼굴에만 칼자국 30개 정도, 엄중처벌해야" [입장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5호 | 부산닷컴         | 10월 19일 | 사회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 페이스북 입장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6호 | 뷰스앤뉴스        | 10월 19일 | 사회    | PC방 피살자 담당의 "얼굴에만 칼자국이 30개였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7호 | 세계닷컴         | 10월 19일 | 사회    | '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 남궁○ "모든 상처는 칼이 빼에 달은 후 멈췄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8호 | 스카이데일리       | 10월 19일 | 사회    | [전문]PC방 살인사건 담당의사 SNS에 "참담·잔혹"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9호 | 스포츠조선닷컴      | 10월 19일 | 연예    |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담당의 남궁○ "얼굴 자상 32개, 모두 뼈까지 찢러 넣었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0호 | 인터넷국제신문      | 10월 19일 | 뉴스    | 남궁○ "나는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의 담당이었다"...참혹했던 진료기록[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1호 |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 10월 19일 | 이슈    | '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 남궁○ "모든 상처는 칼이 빼에 달은 후 멈췄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2호 | 인터넷매일신문      | 10월 19일 | 사회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 심경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냐...악한 본성에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03호 | 인터넷<br>서울신문   | 10월 19일 | 사회최신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 의사가 쓴 분노의 글... "다시 불씨가 되기를..."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4호 | 인터넷<br>스포츠동아  | 10월 19일 | 최신뉴스  | [전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남궁○ 교수 "심신미약? 잠재적 살인마 만드는 꼴"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5호 | 인터넷<br>코리아데일리 | 10월 19일 | 사회    | [강서구 PC방 살인 담당의 "비인간적인 범죄. 우울증은 그에게 칼을 쥐여 주지 않아" (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206호 | 조선닷컴          | 10월 19일 | 연예 포토 | '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담당의 남궁○ "얼굴 자상 32개, 모두 뼈까지 찢러 넣었다"(전문)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0호 | 주식회사 기호일보  |  |  |  |  |
|-------------|--|--|--|--|--|
| 대상보도        | 인터넷 기호일보 2018년 10월 18일자 뉴스면 「강서구 PC방 살인, "진술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해"...거센 후폭풍 조짐이」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수습되지 않은 범행 장소 사진을 공개하여 포악성, 잔인성이 담긴 범죄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116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61호 | 인터넷<br>중도일보 | 10월 18일 | 뉴스   | '강서구 PC방 살인' 커지는 분노... "우울하면 사람 죽여도 되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2호 | 인터넷<br>한라일보 | 10월 18일 | 뉴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공범 안 잡혀...여성 목격자 두려움 호소 "약 먹은 형 뒤로"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3호 | 조세금융신문      | 10월 18일 | LIFE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약 먹은 형 뒤로..." 공범 안 잡히자 두려움 증폭된 목격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4호 | 뉴스핌         | 10월 21일 | 사회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애꿎은 죽음의 전말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5호 | 한경닷컴        | 10월 18일 | 사회   | '강서구 PC방 살인'에 분노...무자비한 난도질 지켜본 동생이 거리 활보?        | 인터넷신문 |

| 제2018-1166호 | 주식회사 스마트마이   |
|-------------|--|
| 대상보도        | 뉴스워커 2018년 10월 18일자 고용·인권·윤리면<br>「[뉴스워커_기자의 썬]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 처벌 또 걸도나」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몸 주변에 핏자국, 흉기를 그려 넣는 등 범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67호 | 주식회사 에이플에이디  |
|-------------|--|
| 대상보도        | 메디컬리포트 2018년 10월 22일자 Health & Life면<br>「[강서구pc방살인사건] 인면수심 '김성수' 눈도 제대로 안 뜨고 할 말 다해... 평온한 모습 '피해자 잘생겨서 살해했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의 몸 주변에 핏자국, 흉기를 그려 넣는 등 범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상세히 보도하였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68호 |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
|-------------|--|
| 대상보도        | 인터넷 팜타임스 2018년 10월 24일자 라이프면<br>「[☞핫키워드]김성수 동창동생문신 등 김성수 신상공개, 강서구PC방 살인 조선족·남궁○ 증언 충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피와 칼을 촬영한 자료사진, 칼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을 담은 자료사진 등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수단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1169호</b> | <b>주식회사 미디어센터</b>   |
| <b>대상보도</b>        |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0월 22일자 라이프면<br>「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 이어 40대 여성 피살 소식까지, 처참한 현장 범행 도구는 ‘칼」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피와 칼을 촬영한 자료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수단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1170호</b> | <b>주식회사 디스패치뉴스그룹</b>  |
| <b>대상보도</b>        | 디스패치뉴스 2018년 10월 4일자 ALL면<br>「딸 괴롭힌 초등생 죽이고 여유롭게 경찰 기다린 남자」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중국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살해 현장 사진을 게재하였다. 해당 사진은 비록 일부 모자이크 하였으나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사진을 |

|  |   |
|--|---|
|  | <p>통해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사건을 필요이상으로 묘사하였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1171호 | 뉴스웍스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뉴스웍스 2018년 9월 21일 국제면 「홍콩 의사, ○○○○○ ○○○로 아내와 딸 살해」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 가스를 채운 ○○○을 사용한 범행 수법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1171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72호 | 연합뉴스         | 9월 20일 | 최신기사 |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형                | 뉴스통신  |
| 제2018-1173호 | 코리아뉴스        | 10월 2일 | 국제   | ○○○ ○○○○○ 살인 교수, 종신형 선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4호 | 세계닷컴         | 9월 20일 | 국제   |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형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5호 | 아시아경제 닷컴     | 9월 20일 | 국제   | 홍콩 의대 교수, ○○○○○ 든 ○○○로 아내·딸 살해해 종신형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6호 | 인터넷 브릿지경제 신문 | 9월 20일 | 국제   | 여제자와 불륜' 홍콩 의대교수, '○○○○○ ○○○'로 아내와 딸 살해...종신형 선고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7호 | 인터넷 스포츠경향    | 9월 20일 | 생활   |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형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8호 | 코리아뉴스타임즈     | 9월 20일 | 사회   | 홍콩의대 교수, ○○○○○로 아내 살해 '종신형'                      | 인터넷신문 |
| 제2018-1179호 | 투스타뉴스        | 9월 20일 | 국제   | '○○○○○ ○○○'로 아내·딸 살해한 홍콩 의대교수 종신형                | 인터넷신문 |

| 제2018-1180호 | 중앙일보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온라인중앙일보 2018년 9월 20일자 사회면<br>「50대 한인, 아내와 자녀 총쏘고 자살...메릴랜드 소도시서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가정이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택의 위치정보와 자살자의 실명, 나이, 유족인 두 딸의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이혼 경력 등에 대해 보도하여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1호 | 주식회사 제이티비씨플러스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일간스포츠 2018년 9월 20일자 사회면<br>「50대 한인, 아내와 자녀 총쏘고 자살...메릴랜드 소도시서 극단 선택」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가정이 가족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택의 위치정보와 자살자의 실명, 나이, 유족인 두 딸의 성,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살자의 이혼 경력 등에 대해 보도하여 자살자와 유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2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대상보도        | 세계닷컴 2018년 10월 14일자 국제면<br>「[영상] 사람 눈에서 15cm 기생충 나와」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기생충이 발견된 눈 사진 및 눈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장면의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3호    | 파이낸셜뉴스신문 주식회사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018년 10월 14일자 국제면<br>「사람의 눈에서 나온 15cm 기생충..“민기 힘들어”」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기생충이 발견된 눈 사진 및 눈에서 기생충을 제거하는 장면의 영상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4호    | 주식회사 아시아경제   |
|----------------|--|
| <b>대상보도</b>    | 아시아경제닷컴 2018년 10월 31일자 사회면<br>「“뼈가 몸에 좋다?”…中정부 허가에 호랑이·코뿔소 수난 시대」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호랑이가 병에 담겨 있는 장면, 코뿔소가 뿔이 잘려 죽어있는 장면 등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5호 | 주식회사 시사데일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시사뉴스 2018년 9월 19일자 뉴스와이드면<br>「총주 종교행사서 ‘산채로 소가죽 벗겼다?’ 소문확산」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종교 행사에 동원된 가족이 벗겨진 소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비록 일부 모자이크 하여 게재하였으나 해당 사진을 잔인하고 비참한 내용 묘사와 함께 공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6호 | 뉴법률방송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법률방송뉴스 2018년 10월 4일자 뉴스면<br>「블랙박스 영상」 윤창호씨 친 음주운전자 박씨 당시 상황 기억 못해 “사과는 커녕 연락도 안 왔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권고사항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보도하면서 교통사고 장면이 포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사고 당시의 잔인하고 비참한 내용 묘사와 함께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187호 | 주식회사 영남일보   |
|-------------|---|
| 대상보도        | 영남일보 2018년 10월 30일자 H8면<br>「척추·관절센터 연계 ‘토털 케어’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187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4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188호 | 인터넷<br>영남일보  | 10월<br>30일 | 보건의료 | ○○○병원, 척추·관절센터 연계 '토털 케어'...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1189호 | 스포츠조선닷컴      | 10월<br>23일 | 라이프  | 육○○ ○○○○병원 대표원장, "치료의 새 패러다임 제시할 터"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0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10월<br>24일 | 일반   | [클릭! 새병원] 대장항문명의 육○○ 박사, ○○○○병원 개원           | 인터넷신문 |
| 제2018-1191호 | 인터넷<br>내일신문  | 9월 13일     | 사회   | ○○한방병원, 청주에서도 한·양방 비수술 척추치료                  | 인터넷신문 |

|                    |   |  |  |  |  |
|--------------------|---|--|--|--|--|
| <b>제2018-1207호</b> | <b>주식회사 금강일보사</b>   |  |  |  |  |
| <b>대상보도</b>        | 인터넷 금강일보 2018년 11월 22일 사회면<br>「이○○, 슈퍼주니어 은혁이 화제에 오른 이유는? “안수기도 받기도”」 제하의 보도  |  |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  |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  |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위 기사는 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대형 교회 목사의 1심 재판결과를 전하면서 과거 해당 목사로부터 안수기도를 받는 유명 가수의 사진을 게재하고, 유명 가수와 그의 가족의 현재 교회 출석 여부 등을 보도하였다.<br>일반적으로 종교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결과 보도는 공적 목적이 있으며, 유명인의 일상도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라 할 수 있으나, 해당 목사의 범죄혐의와 아무런 |  |  |  |  |

|  |  |
|--|--|
|  | <p>관련이 없는 유명 가수와 그의 가족의 종교 활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한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1208호 | 주식회사 문화방송   |
|-------------|---|
| 대상보도        | MBC-TV 2018년 11월 16일 뉴스데스크<br>「[단독] 구두 닦고 자녀 학원 등원까지...‘폭언’ 항의하자 해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방송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방송은 언론사 사주 일가의 운전기사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해고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p> <p>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p> <p>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209호 | 주식회사 미디어오늘   |
|-------------|--|
| 대상보도        | 인터넷 미디어오늘 2018년 11월 21일 TOP면<br>「[단독] 조선일보 사장 손녀, 운전기사 ‘폭언’ 녹취록 공개」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언론사 대표의 운전기사가 대표 자녀의 폭언과 모욕 등을 당한 후 해고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p> <p>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p> |

|  |  |
|--|--|
|  | <p>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1210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트리 2018년 11월 21일<br>「“돈 벌거면 똑바로 벌어” 고용주 초등학생 딸이 운전기사에게 한 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언론사 대표의 운전기사가 대표 자녀의 폭언과 모욕 등을 당한 후 해고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하였다.</p> <p>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211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대상보도        | 인사이트 2018년 11월 22일 정치·사회면<br>「10살 딸 ‘폭언’ 보도에 화난 아빠 “아이 ‘괴물’로 만드는 보도는 법적대응한다」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언론사 대표가 차량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언론사 대표의 미성년 자녀의 녹음된 음성을 제보를 받아 공개한 언론사에 법적대응을 시사했다고 보도하면서 해당 음성을 공개하였다.</p> <p>비록 언론사 대표와 같은 공적 인물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의혹 제기 등은 공적</p> |

|  |   |
|--|---|
|  | <p>관심사에 해당하고, 보도를 통해 어떤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일정부분 필요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불과한 자녀의 음성을 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1212호 | 스타트뉴스  |
|-------------|--|
| 대상보도        | 스타트뉴스 2018년 11월 12일<br>「본사 특종 ‘논산여교사’ 불륜 사건 인터넷서 ‘후끈’」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p>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관련 문서를 게재한 영상의 캡처 사진을 공개하였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문서 내용 대부분은 익명 처리를 하였으나 일부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 한 명의 실명이 공개되었다.</p> <p>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2018-1212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62호 | 인터넷 팸타임즈 | 11월 13일 | 라이프  | [※ 핫키워드]논산 여교사 신상 보니 나이 30대 기혼 기간제 교사·카톡 “임신테스트기” 충격 | 인터넷신문 |
| 제2018-1263호 | 톱스타뉴스    | 11월 11일 | 충격사건 | 충남 논산 기간제 여교사, 제자와의 사랑?...고3 남학생과 불륜 발각              | 인터넷신문 |

| 제2018-1213호 | 뉴법률방송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p>법률방송뉴스 2018년 11월 13일 뉴스면<br/>「논산 여교사 카톡문자·얼굴사진 등 신상 유출, 교육청 불륜·성폭행 조사... 법원 “가정파탄 책임 있어”」 제하의 보도</p> |

|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b>권고사항</b>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산의 가톨릭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기간제 보건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213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8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64호 | 내외뉴스통신    | 11월 13일 | 오늘의 핫뉴스   | 논산 여교사, 외로운 틈 男고생으로 채웠나... 교내 소문 파다했다?                | 뉴스통신  |
| 제2018-1265호 | 내외일보      | 11월 13일 | 뉴스        | 논산 여교사 성추문, 보건실 밀폐부터 카톡 문자 공개까지                       | 인터넷신문 |
| 제2018-1267호 | 뉴스인사이드    | 11월 13일 | -         | 논산 여교사, 보건교사였다...“아이가 힘들어해서 따뜻하게 대해준 것”               | 인터넷신문 |
| 제2018-1269호 | 비즈트리뷴     | 11월 13일 | 사회        | ‘논산 여교사’ 보건실에서 근무, 학생과 성관계 한명이 아니다? 험박한 다른 학생과도 ‘부적절’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0호 | 서울와이어     | 11월 13일 | 방송/연예/스포츠 | 논산 여교사, 외로운 틈 男고생과 밀회로 채웠나? “교내 소문 파다해” 주장도 나와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1호 | 스페셜타임스    | 11월 13일 | 종합뉴스      | 논산 여교사, 당사자간 입장 갈려...사회적 파장 크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3호 | 인터넷 시사매거진 | 11월 13일 | 키워드       | 논산 여교사와 얽힌 男제자, 억울하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4호 | 인터넷 중도일보  | 11월 9일  | 전국        | 논산 A고, 충격! 경악! 기간제 교사와 학생 ‘불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14호 |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
|-------------|--|
| 대상보도        |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1월 26일 라이프면<br>「[ <del>특</del> 핫키워드] 김○○ “남편, 아들 임신 때 크게 기뻐하지 않아” 김○○ 남편 직업·혐의 정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혐의자인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15호 | 주식회사 레이싱 미디어   |
|-------------|--|
| 대상보도        | 말산업저널 2018년 11월 24일 생활시사면<br>「김○○, 나이 열살 연상 남편 무슨짓 했길래 이른 새벽부터 쏟아지는 대중들 시선!」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 및 실명을 공개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21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16호 | 세계닷컴      | 11월 24일 | 연예     | 200억 사기 연루 남편 구속, 김○○ 비공개 전 SNS에 “엄마 울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217호 | 인터넷 데일리한국 | 11월 23일 | 문화·스포츠 | 김○○,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 전환 ‘아들 최신우 계정도 비공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18호 | 화이트페이퍼    | 11월 23일 | 사회/문화  | 김○○, 인스타그램 비공개 전환 ‘아들 신우 계정 또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19호 | 주식회사 비즈니스트리분   |  |  |  |  |
|-------------|--|--|--|--|--|
| 대상보도        | 비즈트리분 2018년 11월 26일 연예면 「김○○, 남편 구속 논란으로 ‘날 보러와요’ ‘차이나는 클라스’ 통편집 …“최근 이슈 고려해 편집했다”」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배우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1219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5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20호 | 인사이트       | 11월 23일 | 엔터테인먼트 | 김○○ 남편 ‘200억원’ 불법 취득한 혐의로 ‘구속’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1호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 11월 28일 | 뉴스     | 김○○ 남편 구속으로 방송출연분 통편집 당해 “짚값 치를 것”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2호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 11월 23일 | 뉴스     | 김○○, 남편 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구속…200억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3호 | 인터넷 천지일보   | 11월 24일 | 연예     | 김○○, 남편 200억대 부당이득 논란 사과… “남편 짚값 치를 것”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24호 | 폴리뉴스 | 11월 24일 | 라이프 | 김○○, 이른 새벽부터 쏟아지는 대중들 시선...나이 열살 연상 남편 무슨짓 했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5호 |   | 부산일보 주식회사 |  |  |  |
|-------------|---|-----------|--|--|--|
| 대상보도        | 부산닷컴 2018년 11월 19일 뉴스면<br>「'사기설' 험싸인 마이크로닷 부모, 마이크로닷과 꼭 닮은 '붕어빵 외모' 눈길」 제하의 보도  |           |  |  |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  |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제3조(범죄사건 보도 등)   |           |  |  |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br>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이유          | 위 기사는 유명인의 부모의 사기 혐의에 관해 보도하면서 일반인인 부모의 초상을 공개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또한 언론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제4항에 근거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2018-1225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26호 | 엑스포츠뉴스    | 11월 21일 | 국내연예 | “뉴질랜드서 대규모 한식당”...마이크로닷 부모, 과거 '도시어부' 출연도 화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7호 | 인터넷 헤럴드경제 | 11월 20일 | 문화   | 마이크로닷 방송서 “부모님, 뉴질랜드 가져마자 엄청난 돈 사기 당해”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8호 | 족구뉴스      | 11월 20일 | 문화이슈 | 마이크로닷,부모님 얼굴공개, “인물이 좋으시다” 최대 수혜자?           | 인터넷신문 |

| 제2018-1229호 | 주식회사 미디어센터   |
|-------------|--|
| 대상보도        | 인터넷 팸타임스 2018년 11월 19일 라이프면<br>「사이코패스 조두순 사건 정리, 상상할 수 없을만큼 ‘끔찍’…출소일, 출소날짜, 형량, 얼굴에 국민 분노」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범죄 묘사)  |
| 권고사항        | 언론은 음란성,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의 수단 및 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거나 선정적으로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의 출소 예정 사실과 함께 해당 범죄사건의 피해 당시의 상황을 보도하면서 포악성, 잔인성 등이 담긴 범죄방법을 필요이상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30호 | 주식회사 연합뉴스   |
|-------------|---|
| 대상보도        | 연합뉴스 2018년 11월 29일<br>「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뉴스통신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보도 윤리)   |
| 권고사항        | 언론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비공개로 북한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정 전 장관이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로 밝혀졌다.<br>비록 정부의 대북정책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북한 관련 보도는 접근제한성 등의 특성상 취재 시 사실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남북 및 국제 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도윤리 준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23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6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31호 | 세계닷컴 | 11월 29일 | 정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김정은 답방 물밑 논의’ 주목 | 인터넷신문 |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32호 | 인터넷<br>경향신문   | 11월 29일 | 정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br>물밀 논의' 가능성 | 인터넷신문 |
| 제2018-1233호 | 매경닷컴          | 11월 29일 | 국제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br>물밀 논의' 주목  | 인터넷신문 |
| 제2018-1234호 | 인터넷<br>문화일보   | 11월 29일 | 정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br>물밀 논의' 주목 | 인터넷신문 |
| 제2018-1235호 | 인터넷<br>스포츠포스트 | 11월 29일 | 문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방북... '김정은 답방<br>물밀 논의' 주목  | 인터넷신문 |
| 제2018-1236호 | 인터넷<br>헤럴드경제  | 11월 29일 | 스포츠 | '한반도 문제 현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br>비공개 방북       | 인터넷신문 |

| 제2018-1237호 | 이데일리 주식회사   |
|-------------|---|
| 대상보도        | 인터넷 이데일리 2018년 11월 19일<br>「실종된 ○○세 韓유학생, 템즈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돼」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사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성, 영어 이름, 나이, 성별, 재학 학교, 학년, 전공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38호 | 주식회사 뉴스핌   |
|-------------|--|
| 대상보도        | 뉴스핌 2018년 11월 19일 글로벌면<br>「'런던 실종' 한인 유학생,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권고사항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사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성, 나이, 재학 학교, 전공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238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39호 | 빅데이터뉴스   | 11월 19일 | 정치사회 | 실종 유학생, 영국에서 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241호 | 인터넷 금강일보 | 11월 19일 | 사회   | 실종 유학생 사망... "밝은 친구" 타살 정황 없다 왜? | 인터넷신문 |
| 제2018-1243호 | 전자신문 인터넷 | 11월 19일 | -    | 실종 유학생 사망, 강 근처서 발견 '타살 흔적 無'    | 인터넷신문 |

| 제2018-1240호    | 주식회사 세계일보  |
|----------------|--|
| <b>대상보도</b>    | 세계닷컴 2018년 11월 19일 국제면<br>「한인 대학생 대상 집단폭행에 사망까지...불안에 떠는 런던 유학생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자살 보도)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사인이 자살로 추정되는 한국인 유학생 시신이 발견되었음을 보도하면서 당사자의 성, 나이, 성별, 재학 학교, 전공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240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2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42호 | 인터넷 내외일보 | 11월 19일 | 세계 | 런던 실종 유학생 사망... 타살 정황 없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44호 | 한국정책신문   | 11월 19일 | 사회 | 실종 유학생 사망, 타살 의혹 왜 제기하지 않나? | 인터넷신문 |

| 제2018-1245호 | 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   |
|-------------|--|
| <b>대상보도</b> | 인사이트 2018년 11월 23일 핫이슈면<br>「'시속 131km'로 택시기사 들이받은 BMW 운전자에 '금고 2년'의 형벌이 떨어졌다」 제하의 보도 |

|                |  |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자에 의한 사고 내용을 보도하면서 사고 장면을 그대로 노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1246호</b> | <b>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b>   |
| <b>대상보도</b>        | 인사이트 2018년 11월 22일 핫이슈면 「“나를 웃겨보라”며 펄펄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 강제로 집어넣은 회장」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b>이유</b>          | 위 기사는 일본에서 기업 회장이 끓는 냄비에 직원 얼굴을 강제로 집어 넣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잔인하고 비참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영상을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불안감,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br>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  |
|--------------------|--|
| <b>제2018-1247호</b> | <b>주식회사 인사이트컴퍼니</b>  |
| <b>대상보도</b>        | 인사이트 2018년 11월 27일 정치·사회면 「‘버스정류장’ 덮쳐 한 가족의 아버지를 죽인 ‘만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제하의 보도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 <b>이유</b> | <p>위 기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보도하면서 사고 장면이 포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 제2018-1248호    |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
|----------------|---|
| <b>대상보도</b>    | <p>나우뉴스 2018년 11월 23일 국제면<br/>「살아있는 소에 불붙이는 축제 논란…불 끄려 벽에 돌진하기도」 제하의 보도</p>   |
| <b>매체구분</b>    | 인터넷신문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충격혐오감)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잔인하고 비참한 장면 등 지나친 충격이나 불안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살아있는 소에 불을 붙이는 축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을 보도하면서 소에 불이 붙은 사진과 불붙은 소가 고통 받는 내용을 게재하여 독자로 하여금 충격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 우려가 있다. 이는 일반 독자의 정서와 감정을 손상케 하여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249호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
|----------------|--|
| <b>대상보도</b>    | <p>전북도민일보 2018년 11월 6일 16면<br/>「소통 중심 환자 맞춤형·차별화 의료서비스 지역민 만족」 제하의 보도</p>  |
| <b>매체구분</b>    | 지역일간지  |
| <b>법익침해 유형</b>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b>권고사항</b>    | <p>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p>   |
| <b>이유</b>      | <p>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p> |

| 제2018-1250호 | 주식회사 전북도민일보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018년 11월 5일 기획특집면<br>「관절척추질환의 건강 지키미 ○○○○병원 관절척추센터」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1호 | 주식회사 충남일보   |
|-------------|---|
| 대상 보도       | 충남일보 2018년 11월 26일 05면<br>「알레르기 특화 대전○○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2호 | 주식회사 충남일보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충남일보 2018년 11월 25일 종합뉴스면<br>「어린이 알레르기 특화 대전○○병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3호 | 주식회사 충청신문사  |
|-------------|---|
| 대상 보도       | 충청신문 2018년 11월 13일 16면<br>「세종○○ ○○○ 한의원, 이색 진료 눈길」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지역일간지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4호 | 주식회사 충청신문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충청신문 2018년 11월 12일 지역소식면<br>「세종○○ ○○○ 한의원, 이색 진료 눈길」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5호 | 주식회사 파이낸스투데이  |
|-------------|---|
| 대상 보도       | 파이낸스 투데이 2018년 11월 12일 Business면<br>「리프팅 중점 진료 ○○○○ ‘개원 5주년’ … “초심 잃지 않는 진료 선보일 것”」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6호 | 경기도민일보 주식회사   |
|-------------|---|
| 대상 보도       | 인터넷 경기도민일보 2018년 11월 7일 이슈면 「○○역 ○○○치과 개원, 서울대병원 프로세스 도입한 치료 선보여」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7호 | 주식회사 베이비타임즈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베이비타임즈 2018년 11월 16일 키즈산업면 「○○○○ 성형외과, 일산 ○○○역 개원 및 피부과 전문의 진료 개시」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8호 | 주식회사 베이비타임즈   |
|-------------|---|
| 대상 보도       | 인터넷 베이비타임즈 2018년 11월 23일 키즈산업면 「체형 관리 전문 비만클리닉 ‘예쁨주의 ○○○○○’, 명동점 개원」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59호 | 헤모필리아 라이프   |
|-------------|---|
| 대상 보도       | 헤모필리아 라이프 2018년 11월 13일 경제일반면 「강남 요로결석, 24시간 ○○○○ 비뇨기과가 책임진다」 제하의 보도  |
| 매체 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 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60호 | 주식회사 테크월드   |
|-------------|---|
| 대상보도        | 씨씨티비뉴스 2018년 11월 2일 생활·문화면<br>「○○동 ○○치과 개원, 임플란트부터 총치치료까지 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
| 권고사항        |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 이유          | 위 기사는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위치 정보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제2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br>또한 위 기사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을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61호 | 주식회사 소셜뉴스   |
|-------------|---|
| 대상보도        | 위키투리 2018년 11월 13일 라이프면<br>「‘학생 2명과 부적절 관계 의혹’ 논란 여교사가 학생과 주고받았다는 문자」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관련 문서를 게재한 영상을 공개하였다. 기사에서 보여지는 문서 내용 대부분은 익명 처리를 하였으나 일부에서 해당 교사와 학생 한 명의 실명이 공개되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제2018-1266호 | 주식회사 뉴스렙  |
|-------------|---|
| 대상보도        | 뉴스렙 2018년 11월 13일 사회면<br>「'고교생들과 불륜행각' 논산 여교사, 어떻게 관계 시작했나?」 제하의 보도   |
| 매체구분        | 인터넷신문   |
| 법익침해 유형     |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사생활 보호 등)   |
| 권고사항        |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유          | 위 기사는 고등학교 교사와 두 명의 학생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학교가 논산의 가톨릭 재단 고등학교로 당사자가 보건 교사인 것을 공개,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br>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근거한 인격권을 침해한 기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 2018-1266호와 권고사항 및 이유가 동일한 안건 (3건)

| 의결번호        | 언론사명   | 보도일     | 지면 | 기사제목                                       | 매체구분  |
|-------------|--------|---------|----|--|-------|
| 제2018-1268호 | 베타뉴스   | 11월 12일 | 종합 | '논산 여교사' 정체는 양호선생님... "너네 엄마 무서워" 발언 있었다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2호 | 이투데이   | 11월 12일 | 뉴스 | "너네 엄마 무서워"...논산 여교사 정체는 '보건교사', SMS 베일 벗어 | 인터넷신문 |
| 제2018-1275호 | 한국정책신문 | 11월 13일 | 사회 | 논산 여교사, 고교생 불륜 행각...어떻게 시작됐나?              | 인터넷신문 |